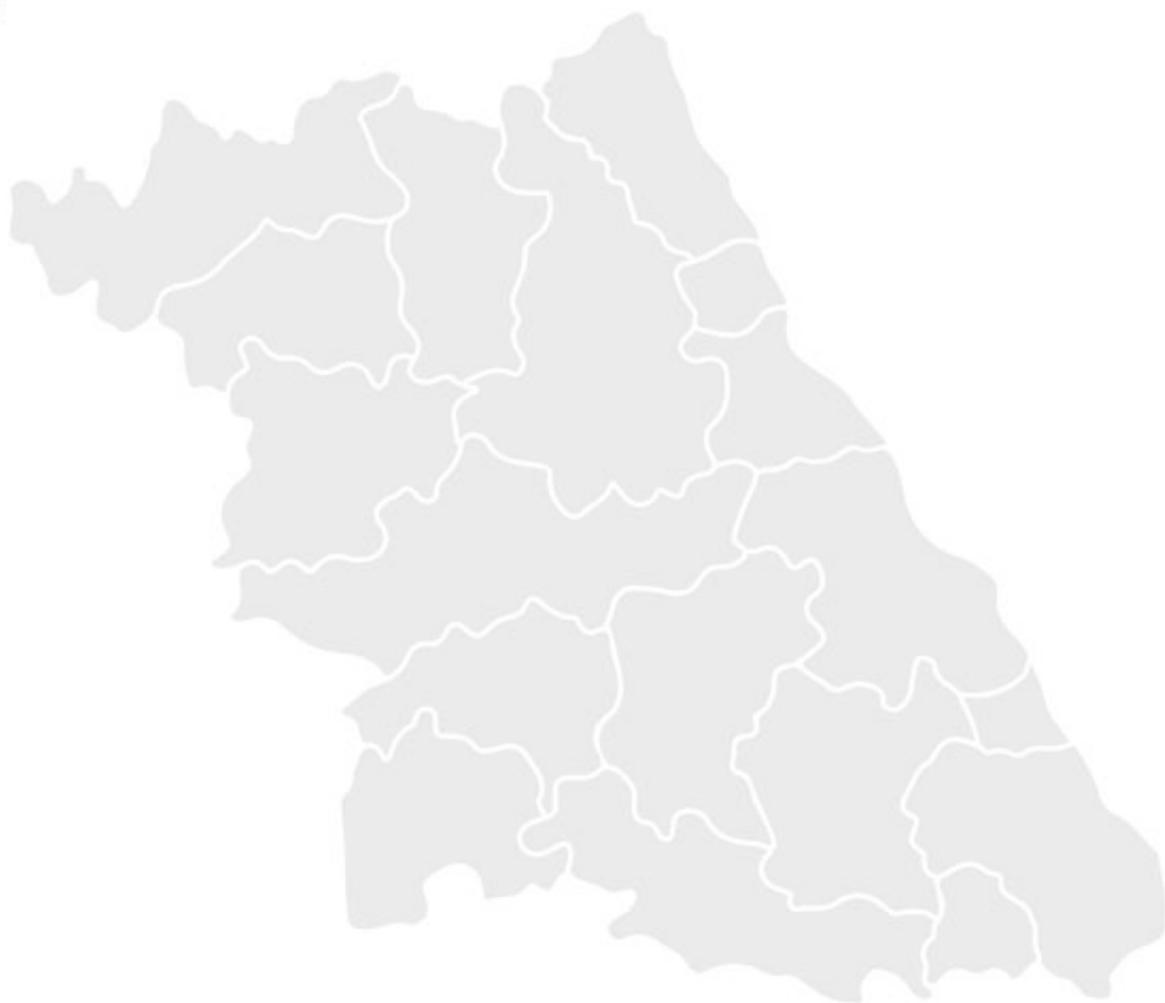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백서



강원특별자치도

CONTENTS

[발간사]

I 특별자치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9

- 1.1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배경 9
 - 1.1.1 지역적 특성 11
 - 1.1.2 정부정책 17
 - 1.1.3 정치권 논의 20
- 1.2 강원특별법 제정 경과 21
 - 1.2.1 강원특별자치도 공약 21
 - 1.2.2 지역 국회의원 법안 발의 25

II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 35

- 2.1 강원특별법 개정 필요성 35
- 2.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조직 37
 - 2.2.1 전담부서 설치 37
 - 2.2.2 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체계 40
 - 2.2.3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42
 - 2.2.4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45
- 2.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51
 - 2.3.1 지원위원회 설치 경과 51
 - 2.3.2 (가칭) 강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56
 - 2.3.3 지원위원회 위원 및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60
 - 2.3.4 국무조정실 도내 현장 방문 63
 - 2.3.5 지원위원회 개최준비(상정 안건 협의 및 사전보고) 65
 - 2.3.6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73

III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향하는 첫걸음	83
3.1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준비	83
3.1.1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시	83
3.1.2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87
3.1.3 특례 발굴 및 입법과제 선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94
3.2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위한 노력	112
3.2.1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발의	112
3.2.2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타 법령 개정	116
3.2.3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과제 통과 공론화	117
3.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26
3.3.1 도-행정안전부 등 정례 협의	126
3.3.2 타 시도 협력 강화 및 정책 공조	128
3.3.3 강원도의회 적극 지원	137
3.4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중앙부처 및 국회 협의	139
3.4.1 중앙부처 협의	139
3.4.2 국회 협의	144
3.5 강원특별법 국회 심사 및 통과	147
3.5.1 국회 심사 과정	147
3.5.2 국회 통과를 위한 도민의 하나된 노력	154

CONTENTS

IV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홍보 및 시스템 정비 159

- 4.1 특별자치도 출범 홍보활동 전개 159
 - 4.1.1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160
 - 4.1.2 도민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163
 - 4.1.3 홍보콘텐츠 제작 및 매체 광고 시행 167
- 4.2 정보시스템(국가, 지방) 데이터 전환 및 정비 196
 - 4.2.1 중앙부처 협의 과정 197
 - 4.2.2 시·군 및 유관기관, 민간분야 추진 과정 199
 - 4.2.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술지원 202
- 4.3 각종 안내표지판 및 공인, 인감 정비 220
- 4.4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 및 캐릭터, 영문표기 227

V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작 233

- 5.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233
- 5.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의의와 성과 240
- 5.3 강원특별법 도민 설명회 242
- 5.4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 272

VI	부 록	275
6.1	강원특별법 개정 현황	275
6.2	강원특별법 제·개정 경과	285
6.3	강원특별자치도 핸드북	320
6.4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명단	327
6.5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명단	328

발 간 시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628년 만에 성공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했지만,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 이제는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떨치고 나왔던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취임 첫날 제1호 결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특별자치도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지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도민이 열망하고 원해서 추진되는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만큼 비전 수립부터 특례, 법안까지 빠짐없이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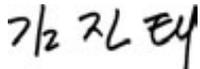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300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국회에서 뿔어낸 도민의 열망은 최단 시간 법안 통과를 기록하며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규제에서 의미 있는 규제가 풀렸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록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백서는 추진 배경부터 조직, 지원위원회, 대국민 홍보 활동과 시스템 정비 등 출범까지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분권'의 가치를 지닌 만큼 지방분권의 핵심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미래 모빌리티 등 이제는 미래산업의 시대입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겠습니다.

모쪼록,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백서가 많은 이들이 찾는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애써주신 300만 도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I.

특별자치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1.1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배경 / 9

1.2 강원특별법 제정 경과 / 21

1.1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배경

강원도는 1945년 분단과 이후 발생한 6·25 전쟁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계 유일의 분단 도로 남아있다.

분단 이후 강원도 북부 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과도한 토지규제로 인해 지역은 낙후되고 도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 남북강원도 현황 비교 ■

구분	강원도	북강원도
행정구역	• 7시 11군 187읍면동	• 2시 15군 15읍 440리동 7노동지구
면적	• 16,874km ² (남한면적의 16.0%)	• 11,092km ² (북한면적의 9.0%)
인구	• 152.2만 명	• 분단 전에는 57만 명이었으나 원산, 문천 등의 편입으로 현재 147.8만 명
농업생산	• 정곡 : 84% • 채소류 : 14% • 특용작물 등 : 2%	• 정곡 : 76% • 채소류 : 14% • 특용작물 등 : 10%
도로	• 총 7,001km(포장률 : 64.6%)	• 총 5,271km
교육시설	• 대학 : 18 • 고등학교 : 113 • 중학교 : 161 • 초등학교 : 585 • 유치원 : 451	• 대학 : 13 • 고등전문학교 : 40 • 고등중학교 : 367 • 인민학교 : 399 • 유치원 : 1,300
보건의료 시설	• 종합병원 : 31 • 의원 : 389(병상수 9,978)	• 군인민·산업병원 : 36 • 리인민병원 : 82(병상수 6,670)

* 출처: 강원도(2017), 내부자료, 인터넷자료 등 취합; 재구성.

전체 DMZ 면적의 67%가 강원도에 위치해 있으며, 군사보호구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은 군사분계선부터 10km, 제한보호구역은 25km로 일괄 지정 운영되고 있어 접경지역 시·군의 면적 대비 48.2%*를 차지하고 있다.

* 철원 93.4%, 화천 41.6%, 양구 49.1%, 인제 21.0%, 고성 62.8%

접경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 건의해 오고 있지만 2008년 이후 반영되고 있지 않다.

* 통제보호구역(건물 신축 및 통행 불가), 제한보호구역(신축 가능하나 군부대 협의 전제)

■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변경 현황 ■

(단위 : km)

구분	1972년	1981년	1993년	1997년	2008년
통제보호구역	27	20	20	15	10
제한보호구역	27	27	25	25	25

또한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와 백두대간의 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토의 허파이자 산림 수도, 수자원의 보고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사회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은 이러한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각종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었다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을 최다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이중 삼중의 토지 활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른바 강원도의 4대 핵심규제인 산림, 환경, 군사, 농지에 대한 규제 면적은 21,890km²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 행정구역 면적 : 강원도(16,829km²), 서울특별시(605km²), 경기도(10,195km²)

- 4대(산림/환경/군사/농업) 규제면적 21,890km²(130%) : 산림(90%) > 환경(20%) > 군사(17%) > 농업(2.6%)

강원도 규제 면적 중에는 산림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5,181km²로 강원도 면적의 90%에 해당한다.

- 규제면적 : 인제(2,405km²) > 홍천(1,860km²) > 평창(1,734km²) > 철원(1,687km²)

분야별 토지규제

- 산림규제 : 백두대간 보호구역, 보전산지, 산지전용 제한지역 등
- 농업규제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등
- 환경규제 :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 군사규제 :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 기 타 : 산업규제(백두대간·국립공원 등), 먹는물 규제(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등)

강원도의 4대 핵심규제인 산림, 환경, 군사, 농지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을 산출한 결과, 산림 관련 자산가치 손실액 8조 5,205억 원, 환경 관련 자산가치 손실액 8조 2,268억 원, 군사 관련 자산가치 손실액 8조 8,879억 원, 농업 관련 자산가치 손실액 1조 4,388억 원 등 총 27조 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비전 및 체계수립 용역/(주)한국정책분석연구원(2022. 7.)

■ 2020 강원도 핵심 규제 지정 총괄 면적 ■

(단위 : km², %)

구분	군사	산림	농업	환경	합계
강원도	2,914.1	15,181.7	440.4	3,354.6	21,890.7
춘천시	22.6	863.0	6.0	101.2	992.9
원주시	113.8	621.5	38.9	457.1	1,231.3
강릉시	161.6	1,132.2	32.8	167.7	1,494.3
동해시	15.8	218.1	0.2	26.5	260.4
태백시	-	323.5	2.3	123.4	449.2
속초시	5.6	119.2	-	151.2	276.0
삼척시	1.0	1,137.9	6.4	80.2	1,225.6
홍천군	34.2	1,615.1	50.5	160.8	1,860.6
횡성군	56.7	772.0	37.4	99.3	965.4
영월군	-	967.5	16.5	509.4	1,493.4
평창군	3.6	1,382.0	18.4	330.0	1,734.1
정선군	-	1,149.5	15.6	338.3	1,503.4
철원군	876.0	544.1	128.2	139.2	1,687.5
화천군	421.6	762.4	9.9	119.7	1,313.6
양구군	349.1	517.4	25.2	60.3	952.0
인제군	346.6	1,757.3	7.6	293.8	2,405.3
고성군	417.2	628.0	28.2	50.9	1,124.3
양양군	88.8	670.9	16.3	145.7	9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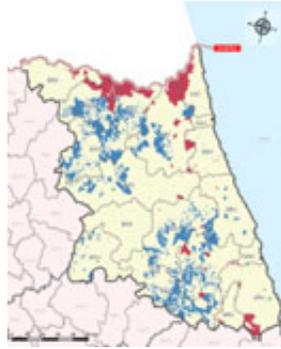
* 자료 :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 2020, 강원도

■ 4대 핵심규제 ■

① 산림규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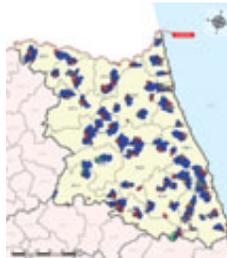


백두대간법

② 환경규제



자연공원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③ 군사 및 농지규제



군사기지법



농지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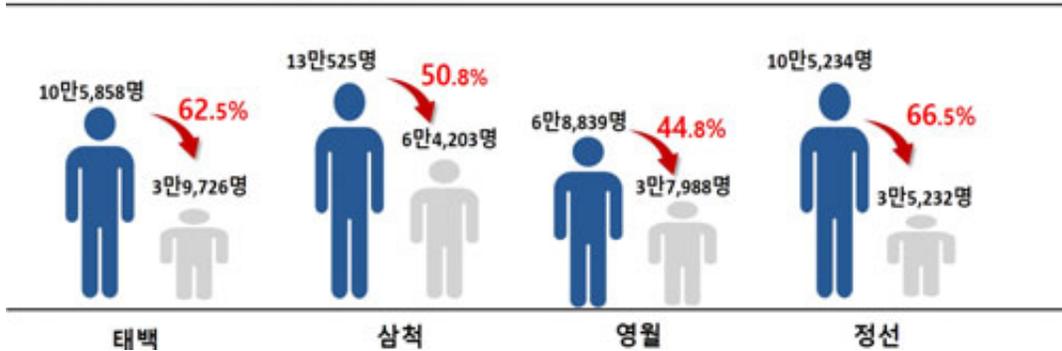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부존 에너지자원인 석탄은 1970~1980년대 경제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강원도 남부지역이 전국 석탄 생산량의 68%를 차지함에 따라, 석탄 산업의 호황과 생산량 증가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지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어 탄광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 ※ 1988년 국내 무연탄 24,295천 톤, 강원도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16,486천 톤 : 67.9%
- ※ 2021년 국내 무연탄 898천 톤, 강원도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823천 톤 : 91.6%

이후 석탄 산업은 석유 등 다른 에너지자원의 활용 증가로 인해 점차 사양화되면서, 정부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석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석탄산업 합리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강원도 남부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1987년도에 12만 명이 거주하던 태백의 경우 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가 3만 명대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폐광지역 인구변화 ■ 1989년 ■ 2022년



* 폐광지역별 인구변화(1989~2022)

또한, 강원도의 대표적인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및 서비스산업도 각종 규제와 이로 인한 정부 및 민간투자 부족 등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으며, 제조업 역시 시멘트·자동차부품 등 강원도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쇠퇴하고 바이오, 의료기기 등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도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강원도 인구는 약 1.7% 증가하였으나, 1995년부터 2013년까지 1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40세에서 100세 인구는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높게 측정되고 있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는 약 111.8% 증가하였으며, 군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 인구총조사 기준 가구 수 및 인구 ■

(단위 : 호, %, 명)

년도	국가				강원도			
	가구 수	가구 수 증가율	총인구	인구 증가율	가구 수	가구 수 증가율	총인구	인구 증가율
1970	5,863,440	16.09	30,882,386	5.58	352,441	0.89	1,837,015	0.32
1980	7,969,201	15.16	37,436,315	7.29	375,134	3.49	1,790,954	-3.94
1990	11,354,540	15.70	43,410,899	6.82	412,918	2.36	1,580,430	-9.14
2000	14,391,374	9.96	46,136,101	3.31	489,226	9.87	1,487,011	1.40
2010	17,574,067	9.02	48,580,293	2.68	560,589	6.84	1,471,513	0.47
2020	21,484,785	11.05	51,829,136	1.47	668,479	8.51	1,521,763	0.24

■ 전국대비 강원도 연도별 총인구 비교 ■

구분		단위	2010년	2020년
총인구	전 국	천명	48,580	51,829
	강원도	천명	1,471	1,521
생산가능인구비 (15~64세)	전 국	%	72.9	72.0
	강원도	%	69.1	68.8
고령 인구비 (65세 이상)	전 국	%	11.0	15.6
	강원도	%	15.3	20.4



강원도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인구감소지역 12개, 관심 지역 4개)를 겪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는 소비위축, 생산감소, 지역경제의 쇠퇴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 강원도 시·군별 소멸위험지역(2001~2021년) ■

(단위 : 개)

구분	읍면동 수	2001	2006	2011	2016	2021
강원	188	11(6%)	57(30%)	91(48%)	111(59%)	142(76%)
춘천	25	1	6	8	9	10
원주	25	1	4	6	7	11
강릉	21	-	3	8	10	15
동해	10	-	-	4	7	7
태백	8	-	-	3	6	7
속초	8	-	-	3	5	6
삼척	12	3	7	7	8	11
홍천	10	3	7	9	9	9
횡성	9	3	7	8	8	9
영월	9	-	8	8	8	9
평창	8	-	1	4	7	8
정선	9	-	5	5	7	9
철원	7	-	1	2	3	7
화천	5	-	2	3	3	4
양구	5	-	-	3	4	4
인제	6	-	1	1	1	5
고성	5	-	2	4	4	5
양양	6	-	3	5	5	6

1.1.2 정부 정책

정부에서는 1970~80년대 경제성장기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역대 정부에서 핵심적인 국가정책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인구분산 정책의 하나로 권역별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였다. 메가시티 정책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 비해 SOC, 경제, 생활, 문화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지는 지방의 광역자치단체 간에 상호 행정적, 기능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행정체계의 구축과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정부의 특례제도 정책 ■

구분	광역단위 특례	기초단위 특례
노무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권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균형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특례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 대도시 특례
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 대도시 특례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정책 : 제주·세종형 자치 분권 모델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 대도시 특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하에 지방 주도로 권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메가시티,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등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리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적, 심리적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않으며, 인근 충청권, 경북권과도 지리적, 문화적으로 연계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강원도는 권역별 광역화에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 부재하고 독립하여 단일 권역을 구성하기에도 규모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기에, 독자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독립 모델로서 ‘특별자치도’ 도입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의 도모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

구분	명칭	주요내용	비고
메가 시티 구성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 중앙사무이양 및 초광역권 발전사업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이양)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 기능(126개 세부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이관사무(18개 분야 61개 사무) ✓ 국가 위임사무(국토부 소관 3개 기능 65개 사무) - (초광역권 발전사업) 70개 사업, 36조원(추정) 지원 	'23. 1.1. 시행
	충청권 (충북·충남·대전·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전략) 4차산업혁명 특별권역 미래산업 메카, 국가기능 특화연계 균형발전 허브 • (기대효과) 2040년 인구 600만명, 전지역 50분 생활권, 국내외 기업유치 2,000개사, 신규일자리 24만개, 온실가스 2억6백만톤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5년간) • (향후계획) 특별자치단체연합 설치 후, 충청권 행정통합 추진(중장기) ※ 특화발전 전략 수립 중 	
	대구·경북권 (대구·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전략)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산업혁신), 미래형 혁신 인재 1만명 플랫폼(인재혁신), 공항·항만 연계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공간혁신) • (기대효과) 2040년 인구 550만명, 실질GRDP 300조원, 벤처·중소기업 5,000개사,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 (향후계획) 특별자치단체연합 설치 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중장기) ※ 광역행정기획단 TF 출범('22.3), 특화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예정('22.하반기) 	'23년 이후 단계적 설치
	광주·전남권 (광주·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전략)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현(광역+광역), 광주~인접 5개 시·군 상생 발전 전략수립(광역+기초), 남해안남부권 연계 신성장축 도약(권역+권역) • (기대효과) 2040년 인구 500만명, 실질GRDP 200조원, 기업유치 2,000개사, 일자리/인력양성 20만명 • (향후계획) 특별자치단체연합 설치 후, 권역·권역간, 광역·기초간 협력 지속 추진 ※ 특화발전 전략 수립 중 	
메가 시티 미구성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 새만금 메가시티,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 	국정 과제 포함
	제주·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도법에 추가 기능 강화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지방주도적인 지역 발전모델 실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재의 낙후되어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상태였다.

특별자치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후보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록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 강원도의회 세미나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2012년 대통령선거(제18대)에서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대통령선거(제19대)에서도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계획수립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4개당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어 정치권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실정이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한 분단 지방자치단체이고 대도시가 부재하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다수의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여건으로 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70년간의 규제와 희생에서 벗어나 강원도민의 행복권을 추구하고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논거 ■

지역특성	정부정책	대선평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 분단지역 • 전쟁피해 막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99만여 명의 7.6% 및 다양한 물적피해 • 과도한 규제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 • 지속적 인구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를 제외한 전역의 인구 감소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 균형발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주도의 연합형, 통합형, 독립형 초광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중앙주도 균형정책 대체 - 연합형 초광역 :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 독립형 초광역 : 강원, 전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 •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 •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개혁 실시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1.2

강원특별법 제정 경과

1.2.1

강원특별자치도 공약

강원특별자치도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출범하면서 강원도의회를 중심으로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출발하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 광역자치단체로 규제가 중첩되어 오랫동안 피해가 가중되어 왔으며, 소외되고 낙후된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강원도에서 실현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치권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6월 2일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제시한 항구적 자치 재원 확보를 통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에서였다.

이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한 뒤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하면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강원도에 도입하여 항구적 자치 재원과 자치권을 확보하는 등 강원도의 백년대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1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9년 12월 10일까지 6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법을 개정하고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

- 1단계('06. 2. 21. 제정) 자치분권 체계 정립(자치경찰제, 자율학교 등)/336조
- 2단계('07. 8. 3. 개정) 핵심 산업 육성 관련 특례 부여(첨단과기단지 등)/363조
- 3단계('09. 3. 25. 개정) 분야, 기능별 일괄 이양(관광, 농지 및 도시개발 권한)/363조
- 4단계('11. 5. 23. 개정) 법률 단위 일괄이양 도입(국제학교 등)/363조
- 5단계('15. 7. 24. 개정) 권한 추가 이양(농수산물 운송비 지원 등)/363조
- 6단계('19. 12. 10. 개정) 권한 추가 이양(보세판매장 수입 기금 전출, 문화진흥 등)/481조

세종특별자치시는 2007년 5월 최초 입법예고(준비 1년 6개월)를 통해 2010년 12월 27일에 법률이 제정(3년 6개월)되기까지 총 5년이 소요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법률이 시행되었다.

주요 추진경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행자부) : '07. 5. * 임기 만료 폐기('08)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률안(정진석 의원) : '07. 9. * 임기 만료 폐기('08)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 '07. 9. * 임기 만료 폐기('08)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 '08. 6.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 '08. 9.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심대평 의원) : '08. 9.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홍재형 의원) : '09. 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 12. 제정

한편 2012년 최문순 도정은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강원도 핵심공약'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설악·금강권,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경제 협력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남북 교류에 대한 도의 재량권 확대 및 정부의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제도 등이 담겨 있었다.

18대 대선 선거 공약(12. 2.) 시, 문재인 후보는 2012년 12월 1일 원주 중앙시장 유세 연설에서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후 지역에서는 관심과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19대 대선 선거 공약(17. 2.) 당시에도, 역시 문재인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2017년 1월 강원도청 방문 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런 노력이 단순히 동계올림픽 성공을 넘어 남북관계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2017년 4월 대선후보 인터뷰 당시 “강원도를 평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 2017년 제19대 공약사업으로 채택은 되었지만 특별자치도는 거론된 이후 논의만 지속되어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대 대선 선거 공약(22. 2.)에는 4당의 후보 모두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공약을 세웠는데 윤석열 후보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개혁 실시’를 공약으로 하며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강원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이재명 후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하며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기반 시설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강원도 특성에 맞는 경제 발전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공존의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를, 안철수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지역균형발전 특위 15대 정책과제/22. 5.)로 선정되었다.

* 대통령 공약사항 :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개혁 실시

■ 20대 대선 후보 공약 ■

대선후보	공약사항
<p>더불어 민주당 【이재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평화관광 메카 조성 ▪ 이중삼중의 희생을 치러온 강원도에 특별한 보상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특별구역지정 기반시설 우선 지원, 왕래와 교역의 절차 간소화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경제 교통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호축 철도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등 • 금강산 관광 재개, 해양·산악·내륙관광 육성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지원 • 정밀의료·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육성 • 풍력·바이오에너지 인프라 확대 • 영월~삼척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 농촌기본소득 : 월 60~7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폐광) 기본소득 월 20만원/농업지원금 1인당 30~40만원
<p>국민의힘 【윤석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추진 강원 미래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첩된 규제 완화 등 자율적 미래 설계, 바이오와 액화수소 집중 육성 • 금강산 관광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과 유엔안보리 재재 등 선행 조건 충족 • 규제 완화 인공지능 결합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원주지역 정밀 의료기지 구축/삼척 대량 액화수소 거점지역 • 동해안지역 동북아 관광 거점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관광 거점도시, 양양 인바운드 공항, 속초 크루즈 등 • 영동·영서·수도권 초 광역철도, 고속도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삼척 고속도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등
<p>정의당 【심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 녹색공존의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강원도를 녹색평화경제특별도로 승격 • '글로벌 녹색치유지구'로 육성 : 녹색치유 관광 • 녹색평화경제의 거점, 유럽형 고속열차의 기점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산림협약, DMZ 평화생태공원, 평화생태영농특구 - 원산~금강산 출입 추진,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중국횡단철도와 연결 • '탄소중립특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설립, 1가구 1태양광, 초고압 송전탑 해결 • '농어민기본소득',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예산 5% 이상,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격 변동폭 줄여 농가소득 보장

강원도는 여러 규제에 의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인구소멸로 인해 경제 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입법 발의가 연이어 추진되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은 2018년 12월 13일 강원도를 남북 평화와 통일의 중심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도내 전역을 점진적 평화 통일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삼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경제 협력 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해 남북간의 안정적 평화와 지역개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정부의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그 관할구역은 종전에 강원도가 관할하여 온 구역과 동일하게 하고(안 제7조)
- 나. 강원평화통일자치도의 발전 및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며(안 제9조)
- 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 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또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을 설치하고(안 제20조 및 제21조)
- 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둬(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 바. 한편,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평화 통일특별지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평화 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9조 및 제31조)
- 사.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특별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 승인함(안 제37조 및 제38조)
- 아. 또한, 국가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4조)
- 자. 국가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통일특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경영정상화 지원 및 남북협력기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 차. 국가는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원재단을 설립함(안 제55조)
- 카. 그리고, 국가는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의 직원 또는 북한주민 등에 대하여 왕래와 교역절차를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특례를 정할 수 있고(안 제58조)
- 타.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특별지구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안 제61조)
- 파.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장려업종 또는 유치장려 대상 비영리단체를 고시할 수 있음(안 제66조)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19년 3월에 상정되었으나 심사되지 못하고, 2020년 5월에 제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 법안 주요 내용은 행·재정적 지원(조직 권한, 발전기금 설치, 보통교부세 기준 보정 등),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였다.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그 관할구역은 종전에 강원도가 관할하여 온 구역과 동일하게 함(안 제7조)
- 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9조)
-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안 제20조)
- 마.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1조)
- 바.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 승인함(안 제38조 및 제42조)
- 사.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 아.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 자.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항만 및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 차.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및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부여함(안 제64조 및 제66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21년 4월 대표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 권한 이양, 보통교부세 기준 보정, 발전기금 설치, 평화특례시 지정 요청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 나. 강원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다. 강원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 마.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함(안 제16조)
- 바.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 사.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특례시 지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이양수 국회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국회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한 공청회를 2022년 2월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월 9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의 타당성을 각각 진술하였다.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법안 ■

기준	이양수 국회의원(안)	허영 국회의원(안)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20.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1. 4. 29.)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칙
지위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사무 등 특례
권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구의 지정 등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특례시 지정 등
실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특례시 수행사업 행·재정적 지원
보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칙

입법공청회(2022년 2월) 이후 5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만들어졌다.

○ 그 주요 내용을 더 살펴보면,

- 가.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 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6조)
- 나.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7조 부터 제14조까지)
-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부터 제21조까지)
- 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2022년 5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강원도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통보해 주기를 요청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상임위 및 본회의 가결)건을 의결하여 통보하였다.

*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 제출이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22년 5월 26일)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2년 5월 29일) 되었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6월 10일 공포되었다. 드디어 대선 공약으로 3차례(제18대~제20대) 제시되고,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발의 노력과 300만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강 원 도



수신 대한민국국회의장

(경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위한 강원도 입장

1. 강원도는 유일한 남북 분단도로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 산림, 환경 등 중첩규제와 SOC투자부진 등의 결과로 저발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원도만의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국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전략의 실현 비전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소멸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 권역별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를 확대 설치·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경우 대폭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초광역권 발전사업 지원(70개 사업, 약 36조 원 추정)을 계획하고 있고, 메가시티 구성이 어려운 전북 제주 등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별도의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역량을 크게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 그러나, 강원도는 지역여건상 메가시티 구성이 어려워 규제혁신을 통한 권역별 특화 신성장산업의 집중육성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되지 않을 경우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지역개발 낙후 격차가 급격히 심화되는 등 이중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차원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양수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부처 협의 결과와 '국가의 책무' 등의 선언적 규정을 반영한 '특별자치도' 지위특례 법안을 우선 제정하고, 향후 단계적 입법 추진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및 획기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 권한특례를 부여 받음으로써 강원도가 지역주도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이를 위해서는, 5월 국회에서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드립니다. 끝.

■ 강원도 명칭 변경표 ■

연 도	명칭	존속기간	비 고
1395년(태조 4)	강원도	271년	강릉·원주
1666년(현종 7)	원양도	9년	원주·양양
1675년(숙종 1)	강원도	8년	강릉·원주
1683년(숙종 9)	강양도	5년	강릉·양양
1688년(숙종 14)	강춘도	5년	강릉·춘천
1693년(숙종 19)	강원도	36년	강릉·원주
1729년(영조 5)	강춘도	9년	강릉·춘천
1738년(영조 14)	강원도	44년	강릉·원주
1782년(정조 6)	원춘도	9년	원주·춘천
1791년(정조 15)	강원도	104년	강릉·원주
1895년(고종 32)	춘천부·강릉부	1년	-
1896년(고종 33)	강원도	127년	강릉·원주
2023년 6월 ~	강원특별자치도	-	-

※ 강릉이나 원주에서 역모, 또는 존속살해(강상죄) 등 국가에서 중대시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도명을 다른 시·군의 앞머리를 따서 변경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다시 강원도로 명칭을 환원시킴

강원
특별자치도

II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

2.1 강원특별법 개정 필요성 / 35

2.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조직 / 37

2.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51

2.1

강원특별법
개정 필요성

2022년 6월 10일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23. 6. 11. 시행)은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조문들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설치 근거(지위 특례)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한 선언적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기 반영되었던 특별자치도 출범을 지원하고 중앙부처와의 권한 부여 특례를 협의 조정·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022년 대선(2022년 3월 9일)과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선거 공약에 급박하게 반영되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당초 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의원 대표 발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중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 부처에서 반대하거나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토론 없이 쟁점이 없는 조문들만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데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초 이양수 의원과 허영 의원 발의 법안에서 있었던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조문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산악관광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인 지역특화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한 특례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정된 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해 초기의 안정적 출범 및 관련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과 행·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이 절실하였다.

■ 강원특별법 제정 시 반영되지 않은 조문 ■

이양수 국회의원 제출안 (2020. 9. 1.)	허영 의원 제출안 (2021. 4. 29.)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제9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제12조(환동해경제자유특구와 배후지역 간의 연계발전 지원)	제12조(조직특례)
제15조(조직특례)	제15조(재정특례)
제16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제1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정특례)	제19조(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등)
제20조(강원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등)	제28조(평화특례시 지정)
제4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구의 지정 등	
제5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의 시행	
제6장 내·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	
제7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8장 벌칙	

2.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조직

2.2.1

전담 부서 설치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 정도만 규정한 23개의 선언적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는 2023년 6월 11일 이전에 구체적인 규제 특례와 관한 특례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행정조직의 설치가 무엇보다 절실했다.

민선 8기 취임한 김진태 도지사는 이러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임기 시작일인 2022년 7월 1일 김진태 도정 제1호 결재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서명하면서 전담부서인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TF팀)이 1단장, 1담당관, 4팀 19명으로 설치되게 되었다.

* 이후 8월 26일에는 업무효율성을 위해 단장인 행정부지사 밑에 신임 발령된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였음

■ 전담부서(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계획」
민선8기 제1호 결재(2022.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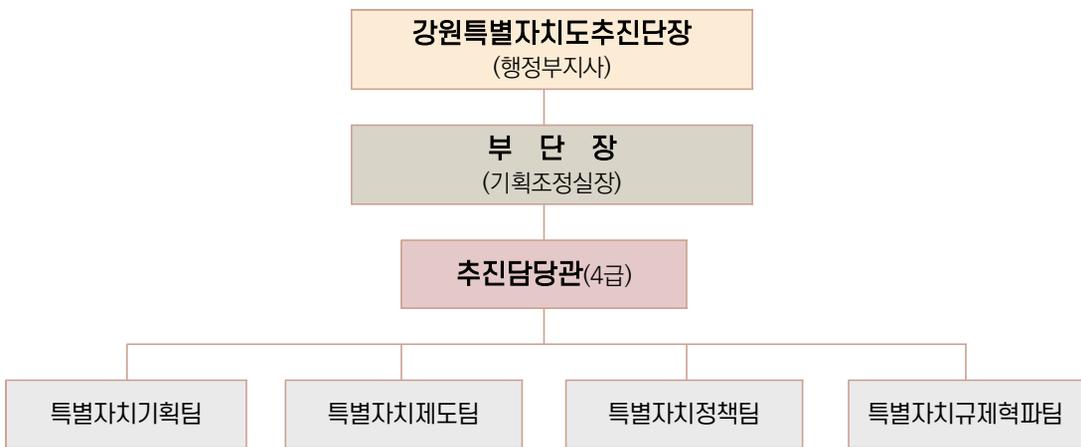


최초(2022. 7. 1.)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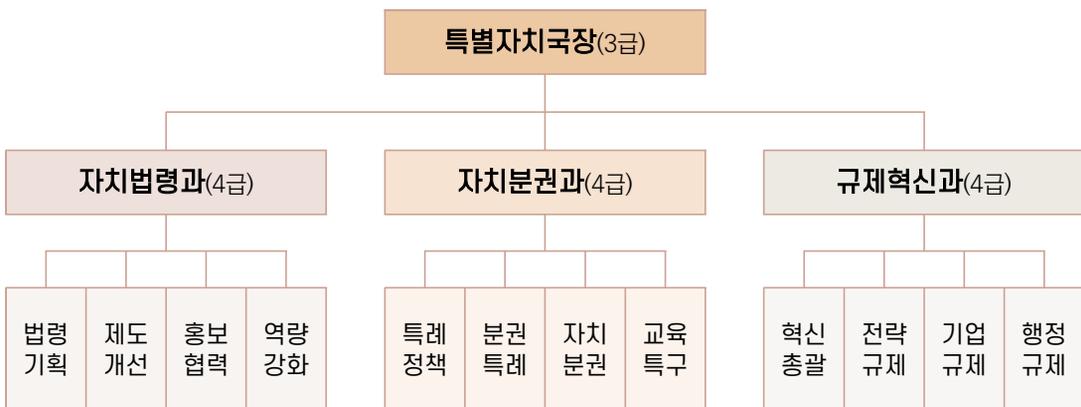
TF팀으로 운영되던 추진단은 강원도의 대대적인 조직개편(2022. 10. 22.)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이 도정 제1현안임을 감안하여 정식 조직인 국(局)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1국 3과 12팀 41명(행정 37, 시설 1, 공업 1, 환경 1, 세무 1)으로 강원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 업무를 위한 최적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추진단은 교육 분야의 효과적인 특례 반영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을 파견받았다.

■ 단계별 강원특별자치도 전담 부서 설치·운영 현황 ■

① 1단계 :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TF)」 / 1단장 1부단장 1담당관 4개 팀



② 2단계 : 「특별자치국」 / 1국 3과 12개 팀



전담 조직 신설·운영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 이익 중심의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강원특별법 개정의 체계적인 조직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특히, 2022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지만 일반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개념과 필요성,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내 공직자들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의지와 노력을 결집시키는 과정은 선행 조건이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전담조직이 생기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은 스스로 학습하고* 도내 공무원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특히 추진단 직원들은 앞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백서와 각종 보고서, 연구자료, 참고자료 등을 섭렵하며 역량을 키워나갔다.

* 추진담당관과 4명 팀장은 가장 먼저 7월 4일 특별자치 업무의 전문가였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금창호 박사를 만나 특별자치에 대한 개념과 구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을 받았다.

2022년 7월 11일에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개념 정립’을 위한 특강(강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을 실시하였고, 7월 27일에는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 실국장 및 시·군 관련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이해와 완성’이라는 주제로 역시 금창호 박사가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강의는 영상으로 녹화되어 도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도내 공직자 및 주민 대상 특별자치도 추진 설명회 ■



2022. 7. 11. / 강원연구원 / 공무원 및 도민 2022. 7. 27. / 강원도청 / 도 및 시·군 간부공무원

특별자치도 추진 초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설명회는 공무원 및 도민들에게 언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해왔던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강원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강원특별자치도로의 대전환에 대한 공동의식을 형성하는 계기와 함께 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2.2.2 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체계

도의 최우선 현안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한 만큼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도 지원체계를 만들어 신속히 대응하였는데, 도의회 6개 상임위별 각 2~3명*의 도의원들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가 2022년 10월 6일 설치되었다.

* 총 13명, 특별자치추진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하고,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안전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의 위원 참여

■ 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2022. 10. 6. 기준) ■

상임위별 계	기획행정 위원회(3)	사회문화 위원회(2)	농림수산 위원회(2)	경제산업 위원회(2)	안전건설 위원회(2)	교 육 위원회(2)
13명	김길수(長) (영월, 국힘) 문관현 (태백, 국힘) 최승순 (강릉, 국힘)	박관희 (춘천, 국힘) 원미희 (비례, 국힘)	박호균 (강릉, 국힘) 윤길로 (영월, 국힘)	박대현 (화천, 국힘) 박윤미 (원주, 민주)	최규만 (횡성, 국힘) 최재민 (원주, 국힘)	김희철 (춘천, 국힘) 이승진(副) (비례, 민주)

※ 정당별 약어 : 국힘 = 국민의힘 / 민주 =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인 김길수 도의원(영월1 선거구, 국민의힘)이 선출되고 부위원장으로는 이승진 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2022년 11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직후인 2023년 6월 15일까지 총 6회(2022년 10. 11. / 11. 16. / 2023년 2. 6. / 3. 16. / 4. 11. / 6. 15.)의 회의를 통해 특별자치국(국장 박용식)으로부터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 및 쟁점 현안 등을 보고받고 여러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별법 개정의 정당성을 갖추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동의와 지원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이 완성되기 전에 도의회에 입법과제를 보고하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2023년의 첫 업무 개시일인 1월 2일에 도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2)에 그간의 추진 상황과 입법과제를 보고하기 시작하여,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각각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도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별 소통 현황 ■

일 시	대 상	일 시	대 상
2023. 1. 2.	의 장 단	2023. 1. 27.	안전건설위원회
2023. 1. 9.	기획행정위원회	2023. 1. 31.	농림수산위원회
2023. 1. 12.	경제산업위원회	2023. 2. 6.	교육위원회
2023. 1. 18.	특별자치도지원 특별위원회	2023. 2. 10.	사회문화위원회

각 상임위 또는 특위별로 이루어진 소통의 자리에서는 각 위원회별 소관·관심 과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입법과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와 보완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도의회사무처와의 실무적 수시 소통을 위하여 특별자치국 내 도의회소통 전담관 1명(자치법령과 법령기획팀장)을 지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의회사무처에서도 전담관 2명(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기획팀장,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의정팀장)을 지정토록 하여 현안 발생 시마다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창구를 구축하였다.

2.2.3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도청 내 행정조직으로는 추진단을 거쳐 국(局)단위 기구가 실무를 총괄하였지만, 전대미문의 상향식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특례법안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절실했다.

이에 2022년 9월 30일 위원장(김순은 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을 위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10개 분야에서 122명(위원장 포함)의 전국단위 전문가를 찾아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 등의 필요에 따라 적시적소에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여기에는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 제·개정 경험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연구진)의 참여도 필수적인 요소였다.

■ 전문가자문단 위원장 위촉 ■



2022. 9. 30. / 강원도청 통상상담실

■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구성 현황 ■



120명이 넘는 자문단은 2022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2년의 임기를 통해 각 분야별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의 워킹그룹에 자문을 하거나 직접 참여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지원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구성 이전 단계에는 자문단 참여 인원 전반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구성이 완료된 이후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룹별 워킹그룹 회의나 개별 분야별 자문을 상시화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수립 방향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9. 27. ~ 29. 주요결과)

- 도 발전 주요 장애요인: ① 개발제한(39.6%), ② 지역산업 부족(24.7%)
- 도 발전 잠재력: ① 청정 자연환경(31.4%), ② 관광중심지(30.4%)
- 특별자치도 지향점: ① 관광·휴양지역(46.5%), ② 첨단산업지역(20.8%)
- 비전 설정 키워드: ① 관광(26.9%)·환경(26.9%), ② 평화(10.8%), ③ 경제(10.3%)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전담기구 설치 형태: ① 중앙정부와 강원도 협력형(76.2%)
- 도 최우선 규제 완화 분야: ① 환경규제(35.6%), ② 군사규제(31.8%)
- 도 최우선 특례 분야: ① 환경관리특례(27%), ② 도시·택지개발특례(17.7%)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단계별로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분야별 입법·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 발굴과제에 대한 실효성, 타당성, 수용성(도입 가능성),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전문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특히, 국회에 제출할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2023년 1월 6일 김순은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 용역기관과 도 워킹그룹 등이 그동안 발굴·연구한 입법과제들을 설명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



2023. 1. 6. / 강원도청 / 자문위원 20명 참석

전문가자문단은 향후에도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살려 강원특별법에 국한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전반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전문가 인력 풀(pool)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4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후속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공감대 확산 등 범국민적 추진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지난 최문순 도정에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56명으로 구성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2년 8월 국회, 언론계, 경제계, 문화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내·외 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약칭 ‘범추협’)'를 구성하였다.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

- 출범 배경
 - 분단 도라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을 남북교류협력의 장으로 탈바꿈하여, 강원도 발전의 기회이자 평화 정착의 기반 마련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공론화 및 도민인지 결집·표명이 중요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민관협력 강화 및 민간 주도 도민인지 지지결집 강화
- 구성개요
 - 명 칭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 발 족 : 2021. 3. 26.
 - 주요기능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및 논리개발, 홍보방안 강구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범도민 의지 결집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 조 직 : 위원장단(공동위원장, 부위원장 6), 위원(44), 자문위원(22), 고문(4)
 - ▶ 공동위원장 : 김천수 (사)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최 윤 민주평통 강원부위원장
 - ▶ 부위원장(6명) : 박형배(강원도새마을회장), 전금순(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윤장훈(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장), 주복용(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회장), 정준화(강원도시군번영회 연합회장), 전영록(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장)
 - 주요활동 : 다양한 범업활동전개, 대정부·대국회 퍼포먼스, 행사 개최 등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확산 활동과 신문 기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당위성을 홍보하여 범국민적인 긍정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뀌는 빈 껍데기뿐인 「강원특별법」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4대 규제개혁(산림, 환경, 군사, 농업), 첨단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통과를 위한 민간 차원의 정부 및 국회 대응 지원 등을 주요 역할로 하였다.

최초 구성 시 참여 인사의 다양성·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행정·언론·학계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도 및 시·군, 도내·외 유관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300여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추천 대상으로는 도내 대학 총장, 도 출신 유명인, 지역구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 경제·직능단체장, 시군 상공회의소회장 등과 출향 인사 중 국회, 언론, 경제, 문화계 등에서 활동하는 명망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부위원장(5명)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분위기를 띄우고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협의 지원, 신문 기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당위성 홍보와 국민적 긍정 여론 조성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22년 12월 7일 마침내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출범식에서는 초대 위원장으로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을 추대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 ■



출범식



결의문 채택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래로부터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비롯해 대규모 관광객이 모이는 행사를 활용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비전, 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는 일상의 변화되는 점을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법 시행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고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 출신 언론인 간담회,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결의문 채택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열망하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국회에 알리기 위해 앞장섰다. 가장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2023년 4월 17일 조속한 국회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총 101,467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성공출범을 위한 범국민적인 의지를 모아 2023년 5월 1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중 국회통과 건의문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법 통과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망을 알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22일까지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고, 이에 범국민추진협의회는 2023년 5월 22일 강원도민회 중앙회,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등 도민 약 1,200여 명이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안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그 결과 강원도민의 뜨거운 염원이 국회에 전달되어 마침내 2023년 5월 25일 단 이틀 만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23년 5월 25일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하며 성대한 축하행사를 개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천막농성 및 축하행사



천막농성



축하행사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활동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지원을 위한 홍보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2022년 12월 21일에는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어디까지 왔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방향과 의미,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중심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출범을 100일 앞둔 2023년 3월 3일에는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비전, 강원특별법, 영문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3년 3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 출신 언론인들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도 출신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원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언론 홍보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출범 D-30일에는 2023년 5월 11일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30일 기념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를 언론사와 함께 주관하여 강원분권 선언문을 채택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한 강원도의 강력한 분권의지를 표명하였다.

■ 강원특별법 주요 쟁점 관련 포럼 토론회 등 행사 개최 현황 ■

일 시	행사명(주제)	장 소	주요내용
2022. 12. 21.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준비와 과제모색 심포지엄 (주제: 강원특별자치도 어디까지 왔나, 방향과 과제)	한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자치도 추진방향 - 강원자치도의 의미 •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중심 보건의료
2023. 3. 3.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 토크콘서트 (주제: 키워드로 풀어보는 강원특별자치도)	한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자치도 의미와 비전 • 강원특별법 • 강원자치도 영문명
2023. 3. 8.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도 출신 언론인 간담회	한국프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분야 특별법 개정 지원 방안 논의 • 전국단위 붐업 및 홍보 지원 방안 논의
2023. 5. 1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30일 기념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	한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분권 선언문 채택 • 18개 시장·군수 발언 등

■ 포럼, 토론회 등 개최 현장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 토크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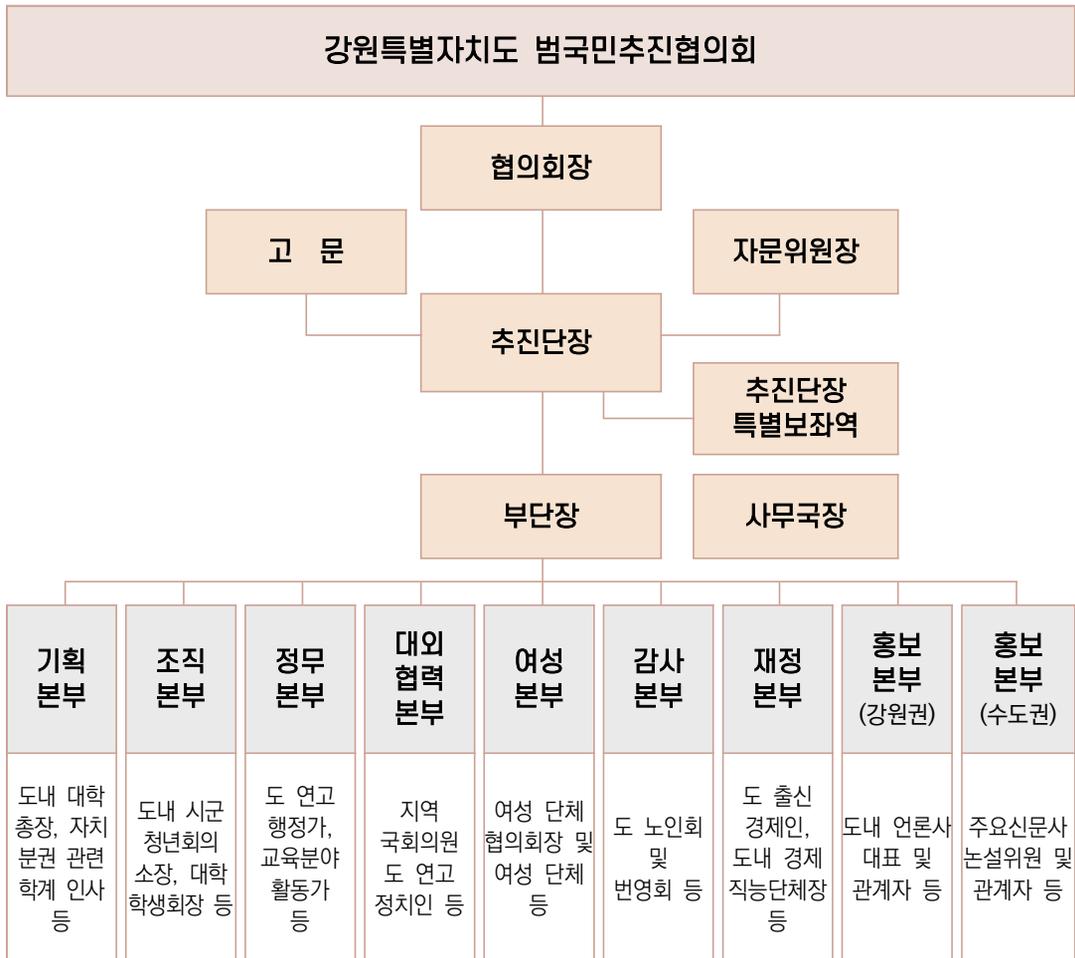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도출신 언론인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30일 기념 강원인 선언대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법 3차 개정 지원 등 범추협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20일 김천수 강원도민회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김천수 추진단장을 비롯하여 부단장, 부회장단(9), 추진단장 특별보좌역(2)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부회장단은 기획, 조직, 정무, 대외협력, 여성, 감사, 재정, 홍보(강원·수도권) 분야별 본부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예정된 특별법 3차 개정 지원에 적극 앞장서기로 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3.1 지원위원회 설치 경과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및 강원특별법의 적기 개정을 위해서는 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별법에 반영할 많은 특례들을 소관하고 있는 여러 정부 부처와 각각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 없이는 무엇 하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위해서는 도와 중앙부처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정부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미 제주와 세종의 사례에서 보듯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 지원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역할에 그 필요성을 입증한 바 있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제주특별법과 관련한 모든 특례 이슈들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도 역시 제정 당시 강원특별법에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으려고 했던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소관 부처에 관한 이견* 등으로 끝내 제정 특별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 여러 정부 부처들의 권한과 입장을 조정할 필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정안에 대하여, 강원특별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산하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견 등이 대립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23일 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도 출신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노용호(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실질적 특례 법안들을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22년 9월 이전에는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도에서는 2022년 9월 전에 국회에서 지원위원회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을 우선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10월부터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포함)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2022년 7월부터는 신속한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 의원실과 전문위원실은 물론,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를 총 25차례 방문하여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였다.

■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국회 방문·건의 ■



2022. 9. 2. 국회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방문·건의



2022. 9. 2.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방문·건의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가 견지하고 있던 위원회 통폐합 및 정비 정책 기조*와 함께 당초 강원특별법 제정 시에도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지원위원회 설치를 ‘신중검토’ 의견으로 고수하면서 공식적인 ‘정부 의견’의 국회 제출이 늦어지면서 법안 상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 윤석열 대통령 정부위원회 정비 지시(22. 6. 2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행정안전부 발표(22. 7. 5.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한다’ 보도자료)

이에 대해, 도에서는 지원위원회 설치의 ① 필요성·당위성 ② 불가피성 ③ 형평성 ④ 효율성의 논리를 들어 끈질기게 부처를 설득하여 결국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공식 정부 의견*을 2022년 9월 6일에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다.

* 설치하되, 향후 법률에 따라 유사위원회 통합 가능 근거 타협점 도출(일부 수용)

이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되어 2022년 9월 14일 지원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9월 22일에는 허영·노용호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위원장 김교흥)에서 병합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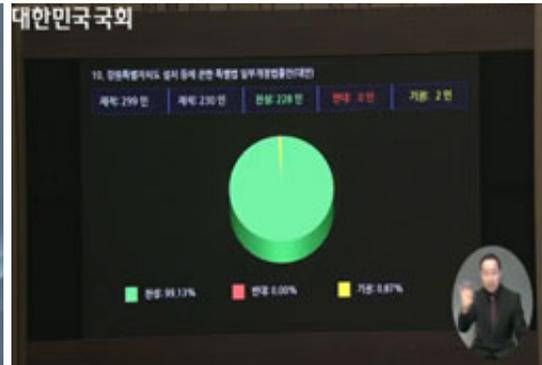
이후 지원위원회가 조속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일을 3개월 후로 하는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 9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9월 23일 회부되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법 개정 과정은 예상치 못한 국회의 9월 의사일정에 가로막히는 듯 보였다. 국회 본회의가 9월 27일 예정되어 있었고 통상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전에 개최되기 때문에 9월 26일로 예정되었다. 그런데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의결을 하려면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등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5일간의 입법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상정해야 하는데 9월 23일 회부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입법 숙려기간인 5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도 관계공무원 등은 강원특별법 개정법안 통과 시 시급성 등을 강조하며 일부 위원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입법 숙려기간의 예외를 인정받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특별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체계 자구 심사 검토 보고 중 '제정 법률이 시행(2023. 6. 11. 예정) 되기 전에 법 개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쟁점이 있었는데 유사 입법 사례를 찾아 제시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당초 부정적 의견에서 긍정적 의견으로 변경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친 끝에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예정일인 9월 26일에 맞춰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는데 성공하였다.

다음날인 2022년 9월 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10번째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559)」이 상정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 제안설명 후 표결에서 총 230명 재석 중 228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되어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1차)을 96일 만에 완료하였다.

공급이 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보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록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022년 10월 7일 정부에 이송되어 10월 11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0월 18일 법률이 공포되어(공포번호 18994) 3개월 후 2023년 1월 19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포함)를 신설·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음부터 이른바 “무쟁점 법안”으로 의제를 설정하여 여야 합의를 도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전문위원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도 지휘부의 지속적인 국회 방문·건의(4회)와 강원도의회 성명서 발표(8. 31.), 수 회에 걸친 토론회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여론결집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의 협력은 물론 국회 내에서의 도 출신·연고 의원과 국회사무총장, 보좌관 등을 비롯한 여러 우호적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였다. 또한, 간혹 국회 여·야의 일부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마다 거부점(veto-point)을 확인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공조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는 등 강원도 원팀(one team)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다.

2.3.2 (가칭) 강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0월 18일 공포되고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9일로 정해지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그에 맞춰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에 돌입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아야 할 특례과제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들의 구성을 검토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산림청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22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안으로 정부 부처 협의를 진행하였다.

- * 구성인원(특별법 제10조의2) : 25명 이상 30명 이하(위원장 국무총리 포함), 부처 장관급 당연직 인원 확정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직 인원 결정
- 정부 부처별 포함 사유 : 기획재정부(지역경제), 교육부(초·중등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 특구, 반도체 클러스터), 외교부(경제외교, K문화콘텐츠 육성), 통일부(접경지역 개발, 평화경제특구), 행정안전부(지방분권, 지방재정), 문화체육관광부(폐광 활성화, 관광),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클러스터, 폐광지역 종합개발, 신재생에너지), 환경부(환경정책), 국토교통부(국토개발), 해양수산부(해양·수산정책), 산림청(산림정책, 산림개발)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당초 강원도 안에서 외교부장관을 제외한 당연직 정부 위원 21명과 함께 지방자치, 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9명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 30명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만들어졌다.

지원위원회 안건에 관한 실무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지원위원회 당연직 부처의 고위공무원 가등급(일반직),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등 21명의 정부 위원과 함께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는 본문 11조 부칙 2조(시행일,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경과조치)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대통령령)을 2022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하였다.

- * 입법예고 법정기간(40일, 행정절차법) 대비 15일 단축 등 사전절차 축소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도는 도내 시·군과 도 교육청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① 당초 우리 도에서 제안했다가 제외된 외교부장관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② 실무위원회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가등급(일반직) 위원을 정부 부처 차관·차장으로 조정(외교부차관 추가) ③ 지원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부처 검토 기간(회의 결과 통보 20일 이내 타당성 검토) 및 통보 기한(검토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 통보) 구체화까지 이상 3개*의 의견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제출하였다.

- * ① 강원자치도의 경제외교, 국제협정 등 국제경제협력외교, K-문화콘텐츠 육성 등 국제관광과 국제학교 인재양성체제 구축 등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필요
- ②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효과적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및 기존 제주·세종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형평성, 지원위원회 위원에 외교부장관 포함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도 외교부차관 추가
- ③ 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해 구체적 기한 명기

특히, 이 중 실무위원회 정부 당연직 위원을 제주와 세종과 달리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를 포함한 전체기관 부처 협의와 통계·개인·자치·부패·성별 영향평가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 정부 부처 위원을 기존 고위공무원 가등급(일반직)에서 정부 부처 차관·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우리 도의 의견과 시행령 명칭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하여 2023년 1월 2~3일 사전심사를 거쳐 1월 3일 법제처에 심사의뢰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같은 날 법안접수와 심사를 완료하였다.

뒤이어 1월 5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원안이 의결되고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1월 17일 대통령령 제33234호로 시행령이 공포되어 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추진현황 ■

세부단계	추진경과 및 상태	비고
[법령안 입안]		
초안작성	도 의견 제출 (2022. 10. 31.), 작성 (~2022. 12. 1.)	
부처협의	전체기관 부처협의 (2022. 12. 2. ~ 2022. 12. 12.)	
영향평가	통계 - 실질평가 면제 (2022. 12. 1. ~ 2022. 12. 5.)	
	개인 - 침해요인 없음 (2022. 12. 1. ~ 2022. 12. 14.)	
	자치 - 원안동의 (2022. 12. 1. ~ 2022. 12. 16.)	
	부패 - 원안동의 (2022. 12. 1. ~ 2022. 12. 14.)	
	성별 - 자체개선안동의 (2022. 12. 9. ~ 2022. 12. 12.)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13호 (2022. 12. 2. ~ 2022. 12. 27.)	
사전심사	사전심사종료 사전심사완료 (2023. 1. 2. ~ 2023. 1. 3.)	
심사의뢰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 2023. 1. 3.)	
[법령안 심사]		
법령안 접수	법제처 법안접수 (2023. 1. 3.)	
법령안 심사	심사완료 (2023. 1. 3.)	
[심의 / 의결]		
차관회의	차관회의원안의결 (2023. 1. 5. / 1회)	
국무회의	국무회의원안 의결 (2023. 1. 10. / 2회)	
공표	대통령령 제33234호 (공포일 2023. 1. 17.)	

이로써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심의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앞으로 본격 추진하게 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길 각종 특례 등의 정부 협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공식화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적기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2.3.3

지원위원회 위원 및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국무조정실에서는 강원특별법 제10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지방자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3명,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우리 도에 요청해 왔고 이에 대해 정책 자문위원, 유관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우리 도의 인재 풀(Pool) 중 지방자치, 기업인 분야의 기준에 맞는 민간 전문가를 12월 6일 추천하였다.

국무조정실과 강원도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임을 고려하여 경륜 있고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등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9명과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확정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

[지원위원회 민간위원(9명)]

분 야	성 명	소 속
자치분권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도시계획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광	김도희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재원	웰컴대학로 총감독
산업·투자유치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
	정성훈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교육	김응권	한라대학교 총장
산림환경	정은주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접경군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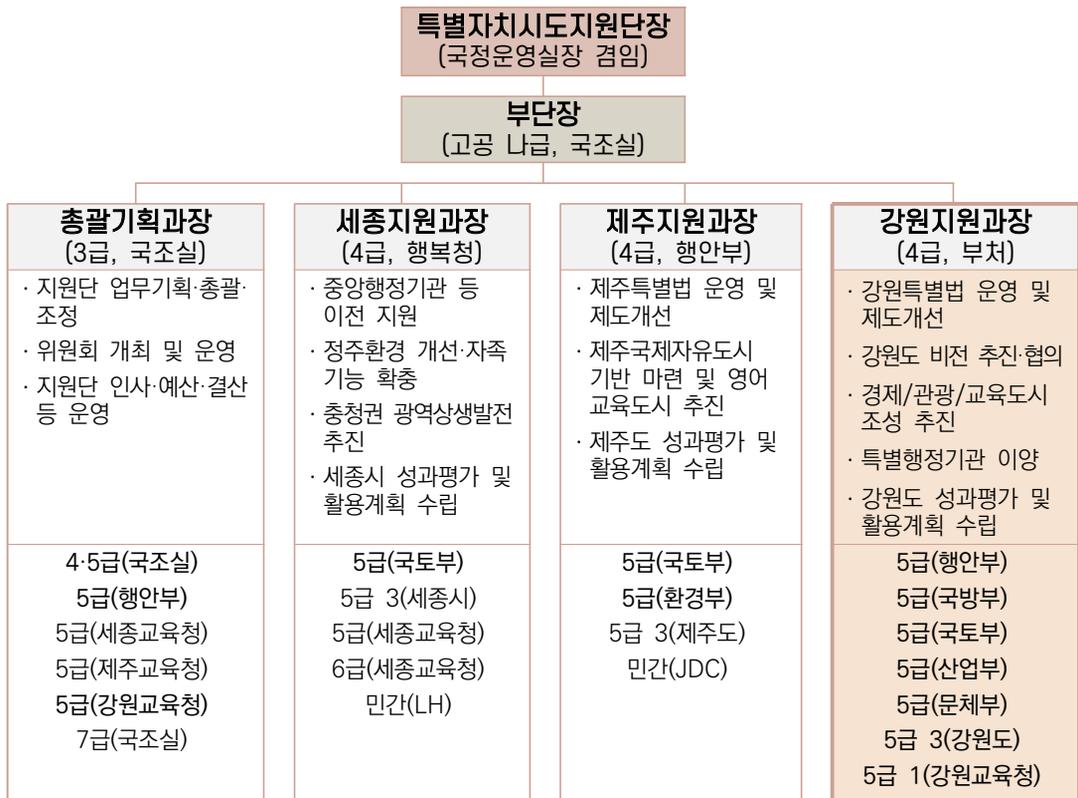
[실무위원회 민간위원(4명)]

분 야	성 명	소 속
도시계획·도시행정	임상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산업·투자유치	이지학	송암시스콤(주) 대표이사
관광정책·관광자원	이민재	(사)북합리조트관광연구소 이사
지역개발	장진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와 함께 지원위원회의 행정적 실무를 전담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 조직인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내 강원지원과를 신설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강원지원과를 신설·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신설될 조직의 인력과 세부 업무 내용 등을 협의하여 11월 행정안전부와 조직 별도 정원 신규 배정 협의를 요청하였다. 우리 도 역시 행정안전부와 강원지원과 별도 정원 인원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중앙부처 파견인력 별도 정원 책정 협조*를 건의하였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별도 정원 인원 수에 대한 협의가 어려웠으나, 출범 초기인 점과 업무량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3명으로 협의하였다.

* 행정부지사,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방문·건의(11. 25.), 행정안전부 조직부서 별도 정원 협조 요청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 조직도(안) ■



※ 강원도(교육청 포함) 파견인력 : 세부사항 국무조정실과 협의 후 확정(조정 가능)

※ 제주사례 : 2004. 11. 15. 행정자치부 제주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 구성(단장, 과장, 6담당 17명)

2023년 1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 별도 정원 확정 등 조직 신설에 합의하여 먼저 강원지원과장(행정안전부 파견, 4급 박광섭)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강원도 3명, 강원도교육청 1명 등 총 4명의 지방공무원과 중앙부처(국토부, 산업부, 국방부) 3명이 국무조정실로 파견됨으로써 1월 19일 실무지원단이 공식 출범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 신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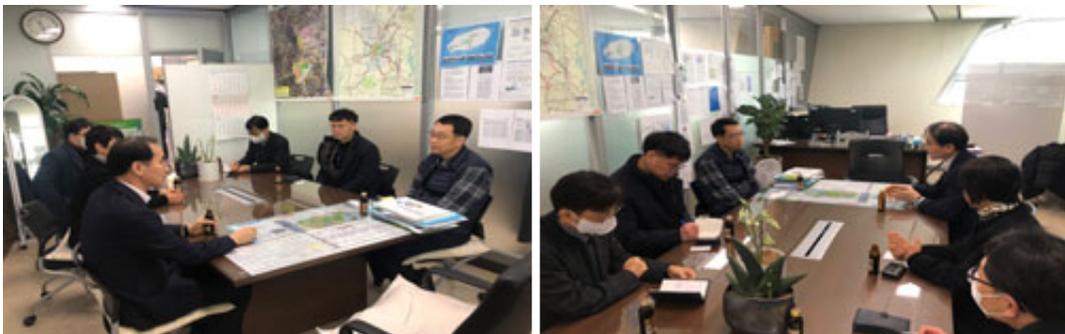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 인사발령자 명단(2023. 1.)

- 강원지원과장(1명) : 박광섭(4급, 행정안전부)
- 강원지원과 직원(8명)
 - 중앙부처(4) : 양승길(5급, 국토부), 백순란(5급, 산업부), 유희방(5급, 국방부), 오순덕(6급, 국무조정실)
 - 강원도·강원도교육청(4) : 이승욱·서민경·최희준(5급, 강원도), 윤성진(5급, 강원도교육청)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 사무분장

- 국정과제 관리 및 지원, 과 자체 성과평가
-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활용, 성과평가 관련 용역
- 제도개선(국토, 산업통상·환경, 국방·복지, 교육·통일·법무·문화관광)
- 과학기술(과기·중기부)·해양, 산림·농림·감사, 재정·세제·지역발전(기재·행안부)
- 의원입법 검토 대응(각 분야별)
- 헬스케어, 데이터, 규제자유특구 사업
- 특별자치도 출범 실무협의회(국조실, 행안부, 강원도)
- 특별자치도 부처 설명, 특례 발굴 사례 관리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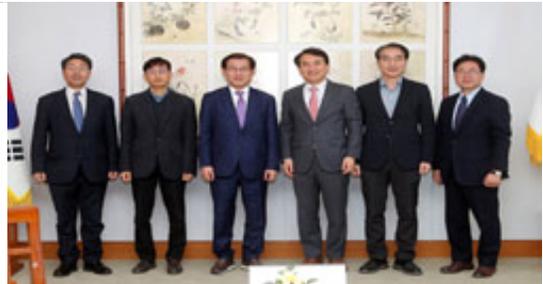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 방문 사진(2023. 2. 6.)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강원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 시도지원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현황 및 현안과 함께 강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지원분야 등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겸임)이 2023년 2월 22일 강원도청을 방문하였다. 이날 도지사 면담과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에 대한 자치법령과장의 보고를 받고 도내 강원대학교, 더존비즈온(이상 춘천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주시)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제1차 지원위원회 회의를 3월 30일에 춘천 강원도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며 지원위원회의 현장 방문지를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강원도 정밀의료규제 자유특구)로 정하게 되었다.

■ 국정운영실장 면담·현장방문 사진 ■



남형기 국정운영실장 도지사 면담



특별자치국 간담회



강원대 강소특구 지원센터 방문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 방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방문

가 상정 안건에 대한 정부 부처 협의

2023년 3월 30일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당일 회의에 상정할 우리 도의 안건이 필요했다. 회의 당일 상정될 안건은 2가지로 그 중 첫 번째는 심의안건으로 「강원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안)」, 두 번째 보고 안건으로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었다.

당초 안건 보고서 작성은 기존 타 지자체의 현안 보고 형식에 맞추어 일반적인 현황, 현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과 의견을 나누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모든 특례과제들이 소관 부처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그런 특례과제들을 문제점으로 부각시키고 향후 추진 방향으로 보고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강했다.

우리 도는 우선 기존에 강원연구원 중심으로 진행중이던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전직 국책연구기관장 등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도의 전략과제들과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보고서의 내용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특별자치도 보고서 검토회의
(2022. 12. 16. / 서울 전략컨설팅 올림 회의실)



지원위원회 보고서 검토회의
(2023. 1. 27. / 용산역 itx 회의실)

하지만, 초안이 작성되어 국무조정실을 통해 각 소관부처로 전달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부처가 보고서 내용에 난색을 표명해왔으며 심지어는 안건 내용 협의를 위한 전화 통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일부 부처는 조금씩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강원지원과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다수의 부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 담당업무 과장급 공무원을 소집하여 우리 도(자치법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18개 부처가 연석(세종청사 소재 부처) 및 영상(타 지역 소재 부처)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정 훈)은 관련 부처에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문하였다.



지원위원회 안건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2023. 2. 20. / 정부세종청사 5동 614호 회의실)

나 위원장(국무총리) 사전 보고

정부 부처와의 협의 난항 등을 겪으면서도 지원위원회 안건(보고서)이 어느 정도 완성 되어가고 국무조정실과도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나, 정부 부처의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에는 정작 우리 도가 당면한 위기의식이나 특별자치도의 전환과 특례 반영의 필요성 등은 담아내지 못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낙후원인 규제 해소) 지난 70여 년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해 낙후된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 전기 마련
 - * 산림환경군사농지 등 규제지역 면적 21,890km(강원도 전체 면적의 1.3배)
- (지역주도 분권 선도모델 제시) 지역의 자율과 주민의 참여 속에 미래변화 선도하는 특별자치도 구현, 현 정부의 지방시대로의 전환 노력에 부응
 - * 국정과제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 강원도의 현황 및 특수성

- (현황) 인구 1,574천 명(전국 3%), 지역소멸위험지수 0.469(전국 5위), 지역내총생산 50.7조 원(전국 2.4%), 사업체 수 193,074개(전국 2.8%)
- (6대 특수성·발전가능성) ① 가장 길고 넓은 DMZ와 남북한 접경지역 ② 가장 광역화되어 있는 폐광지역 ③ 동해안(동북아 지중해)의 중앙지역 ④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 ⑤ 스위스형 강소도시 잠재성 ⑥ 한반도 생태계 발원지

□ 강원특별자치도 기조 및 방향

- (기조) 6대 특수성을 '개방'과 '통합'의 철학으로 정책 과제화하는 데에 중점
- (방향) ▶ 미래 변화 선도 ▶ 자율과 참여 ▶ 18개 시군 다양성 존중

□ 비전 및 8대 추진전략

- (비전 및 설치목적)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 * (미래산업) 과학기술의 혁신, 기후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한 첨단 신산업과 강원도의 청정자연환경이 융합하는 산업 (글로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경학적 특성 강조, 글로벌중심지 지향 (도시)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공동체의 지역 단위
- (3대 목표) ① 미래 신산업 성장 주도 ② 글로벌 교류거점 구축 ③ 행복 공동체 실현

○ 8대 추진전략

㉠ (시장 중심 탈규제)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개혁 통해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

- * 산림·환경·군사·농지의 4대 핵심규제 개혁, 규제프리 혁신거점 구축 등

㉡ (첨단 미래산업 육성) 강원도 미래 대표 산업 중심 신성장 특화발전체계 구축

- * 미래산업 거점도시 조성, 5대 첨단산업벨트 조성, 소도시별 특장점 기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존 산업 고도화 및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등

㉢ (인재육성 기반 구축) 인적자원 지원 기반 확충 첨단기술인력 집중 육성

- * 첨단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 유치, 기업 연계형 신산업 인재 양성 및 글로벌 교육시스템 구축, 고령화시대·학령인구 감소 대응 민간주도 평생교육 강화 등

㉣ (환경·생명·평화 기반 조성) DMZ 등 생태자원 활용 연관산업 특화 자원화

- * 기후변화 대비 강원형 국토환경관리 모델 구축, DMZ 생태자원의 평화적 이용 기반 조성, 강원형 글로벌 생명·건강지대 조성 등

㉤ (육해공 고속인프라 구축) 글로벌 교통 기반 확충으로 저개발 상태 극복

- * 지자체 광역교통망, 환동해권 물류·인적 교통네트워크, 접근성 개선 및 이동성 제고

㉥ (국제관광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경학적 위치 및 자연환경 특화

- * 山·海·文 융합 국제관광휴양벨트 조성, 한반도 신교류 거점 기반 구축, 북방자원 클러스터 구축 및 국제물류 거점도시 육성,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가칭) 조성 등

㉦ (동서 수도권화 및 균형발전) 국토개발정책 소외 극복 및 도내 불균형 해소

- * 수도권과 선(線)형 연결 '한반도 스위스' 강소도시 특화발전벨트 구축, 폐광지역 '신성장 메가밸리' 구축, 접경지역 개발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 (강원형 행복 삶터 구축) 지역인구 소멸 및 삶의 질 하락 대응

- * 청년별 모델 사업 '청년강원희망발' 건설, 농어촌지역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스마트팜·스마트어업' 추진, 강원형 스마트 에코 행복 생활권 모델 구축 등

이런 문제점은 결국 보고서 최종 제출을 앞두고 도 지휘부 보고와 논의 과정에서 크게 변경되었다. 앞으로 출범일까지 세 달여 남은 상황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한 중요한 특례들의 쟁점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고, 소관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 형식적인 회의에 대한 강한 질타였다.

결국, 회의를 10여 일 남긴 상황에서 우리 도는 입장을 선회하여 정공법을 택하였다. 지원위원회라는 어렵게 얻은 중요한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다소 파격적이더라도 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필요한 말들은 보고서에 담아야 했다.

보고서는 당초 작성되었던 일반현황 및 중장기적 발전 전략에 관한 내용은 부록으로 신는 대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최대 현안인 4대 규제 혁파에 대한 구체적 특례를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회의 안건의 갑작스런 변화에 국무조정실도 처음에는 당혹감을 나타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고서 수정을 수용하였다.

결국 단시간 내에 보고서가 바뀌어 완성되었고, 회의 개최일 3월 30일을 3일 앞두고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회의 안건의 사전 보고를 하였다. 사전 보고는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루어졌고 국정운영실장이 제1안건인 「강원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안)」을 보고하고 도 특별자치국장이 제2안건인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국무총리 요약 보고서에는 4대 규제에 대한 구체적 특례 요구 내용을 반영하였다.

요약 보고

2023. 3. 27.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제 출 자	강원도
제출일자	2023년 3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실태

- (지역소멸 위기 직면) 지난 70여 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저개발상태 지속
 - *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규제지역 면적 21,890km²(강원도 전체 면적의 1.3배)
- (제정(22.6.10) 강원특별법 한계) 실질적 권한이양 없는 23개 선언적 조문
 - * 제주특별법은 제정('06. 2. 21.) 당시, 권한특례를 담은 363개 조문으로 구성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 (개정법안 발의) 특별법 전부개정안* 의원(허영) 입법 발의('23. 2. 6.)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2개 조문 신설
- (주요내용) 비전, 자치조직권 강화, 국방·농업·환경·산림 4대 핵심 규제혁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등을 위한 실질 특례 반영
- (비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Global City for Industries of the Future)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방향(8대 추진전략) ▶

- ① 시장 중심 탈규제 ② 첨단 미래산업 육성 ③ 인재육성 기반 구축
- ④ 환경·생명·평화 기반 조성 ⑤ 육·해·공 고속인프라 구축 ⑥ 국제관광 및 국제교류 활성화
- ⑦ 동서 수도권화 및 균형발전 ⑧ 강원형 행복 삶터 구축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핵심 요지

1. 군사분야

- 민간인통계선(10km→5km) 및 제한보호구역(25km→15km) 지정범위 복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특례
-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
- 軍 급식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특례

2. 농업분야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이양(농식품부장관 → 도지사)
- 농지전용허가 협의 권한이양(농식품부장관 → 도지사)

3. 환경분야

-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환경부장관 → 도지사)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3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 사업 시행 가능
- 국토부장관이 도지사 협의 후 조성하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개발사업 시, 환경규제 특례 부여

4. 산림분야

- 산지관리 권한이양(산림청장 → 도지사)
- 「(가칭)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관계부처 협의 후 도지사 지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해제 권한이양(산림청장 → 도지사)

□ 부처협의 진행현황 및 협조요청 사항

- 지난 2. 6.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 진행 중이나 4대 핵심규제 등 권한이양에 대해 대부분 부처 소극적 입장
 - ※ 강원특별법 개정안 102개 특례 조항 중 29개 조항만 부처 수용 검토, 군사·산림 분야 관련 부처 일부 긍정적 검토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6. 11.) 이전, 특별법 개정 위해 강원특별법 규제특례 법안에 대한 소관 부처별 적극적·전향적 협조 요청
 - (중앙행정기관) 4월 국회 행안위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필요 특례에 대한 부처 의견 조정

■ 국회 법안심사 일정 : ▶(4월)행안위 소위·전체위 ▶(5월)법사위 및 본회의

이 날 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권에 대한 진지한 공감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받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부처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권한을 이양받은 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여 권한의 지속 이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었다.

2.3.6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23년 3월 30일(목)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 정부 부처 장관들과 정부 부처 당연직 장관을 대신한 차관·차관보·실장 등과 당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9명이 참석하였다.

* 직무 정지(2023. 2. 8. ~ 7. 25.)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대행(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참석자 명단 ■

[민간위원(9명)]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김도희	한림대 교수	이재원	웰컴대학로 총감독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	정성훈	한국산업클러스터학회 회장
김응권	한라대 총장	정은주	강원대 교수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최봉석	동국대 교수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당연직 정부위원(20명)] * 대리참석 포함

당 연 직 위 원			회의 (대리)참석
소 속	직 위	성 명	
강원도	도지사	김진태	-
기획재정부	부총리	추경호	이형일 차관보
교육부	부총리	이주호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통일부	장관	권영세	김기웅 차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신용해 교정본부장
국방부	장관	이종섭	신법철 차관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한창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조용만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박일준 2차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김현주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장관	한화진	유제철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영	조주현 차관
국무조정실	실장	방문규	-
법제처	처장	이완규	-
산림청	청장	남성현	-

이날 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하여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말씀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환영 인사, 국무조정실의 강원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안)에 대한 안건 보고·심의,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및 토의, 한덕수 국무총리 마무리 말씀으로 이어졌다.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요 ■

- (일시) 2023. 3. 30.(목) 10:40 ~ 15:00
- (장소) 강원도청 대회의실(신관 2층), ㈜더존비즈온
- (참석)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 30명 : 위원장(1, 국무총리) , 정부위원(20, 강원도지사), 민간위원(9)
- (안건) ※ 심의 안건 1건·보고 안건 1건
 - 제①호, 심의 강원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안)(국조실)
 - 제②호, 보고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강원도)
- 세부계획

강원도지원위원회	* 장소 : 강원도청 대회의실(신관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원 위촉식(신관 소회의실) ▫ 모두말씀, 환영인사 ▫ 안건 보고 및 토의 ▫ 마무리 말씀 	
오찬간담	* 장소 : 온유정(한정식)(삼천동)
현장시찰	* 장소 : ㈜더존비즈온(남산면 수동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난 2월 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협의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481개 조항에 달하는 제주특별법과 달리, 강원도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여 137개 조항이며 이것도 통과시켜 주지 않아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사님이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다”, “각 부처 장관들과 개별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 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이 논의하겠다”,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협조 요청에 화답하였다.

처음 위촉된 9명의 민간 위원들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원하면서 정부 부처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협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하였다.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

지금부터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30명의 위원 전원이 이곳 오늘 강원도청에 모였습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먼 길까지 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아홉 분의 민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는 관동팔경을 비롯하여 금강산과 비견되는 명산인 설악산, 넓은 동해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관광 수도이며 국민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자 한반도의 허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강원도 광업은 80년대 말 GRDP의 11%, 전국 석탄 생산량의 73%를 차지할 만큼 석탄 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민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과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은 개발을 제약하는 단점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지역 산업의 중추였던 광업의 쇠퇴는 강원도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최근에 강원도는 GRDP 전국 하위권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150만 강원도민이 힘을 합쳐 강원도의 새로운 모델로서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395년 강원도 정도 이후 628년 만에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변화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 마음가짐부터 크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강원도는 지금까지 개발의 제한 요인이었던 강원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개발 계획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그동안 각종 제도나 규범에 대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호 노력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언 ■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무총리께서 강원도청을 이렇게 직접 방문하셨고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직접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들 우리 총리님을 비롯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또 조승환 해수부 장관님, 방문규 국조실장님,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남성현 산림청장님 특히 감사드리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꼭 기억할 거라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시면서 이 환영 현수막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영 인파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기다려왔던 강원도민들의 숙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에 대한 1호 공약이 바로 이 강원특별자치도로 탄생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해 놨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부처 협의가 그렇게 많이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일까지는 오늘로 7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이 골든타임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원위원회인데요. 저는 상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지원위원님들만 도와주시면 국회에 발의된 전부개정안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이런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별 발언 ■

연번	발언 내용	비고
1	지사님·총리님 말씀처럼 강원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정부 위원님들의 형평성 고민 문제는 강원도의 입장에서의 형평성도 볼 필요가 있고, 6월까지 형식적 형평성·무늬만 특별자치도에서 실질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입법 완료와 시범 실시하는 방법 등 민간위원 한 사람으로 부탁드림	김응권 (한라대 총장)
2	오늘 막중한 임무를 주셔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으며 부담이 되나 산림이 강원도 발전의 큰 장애물이 아닌 발전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위원 협력하에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 출범에 많은 노력을 하겠음	정은주 (강원대 교수)
3	관광자원의 자원성, 교통의 접근성, 관광상품 및 여행코스 상품성 등 3가지 모두 지역관광산업이 발전에 필요하며 현재 강원도는 충분히 자원성이 좋은 여건에도 군사·환경·산림·농업 규제 등 많은 제약으로 관광개발 등이 제한적인 상황.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양한 규제 완화 해제를 기대하고 있어 철도·도로 교통환경 획기적 개선과 스위스형 강소 도시 잠재성, 최첨단 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청정한 자연환경 활용 웰니스 관광 등으로 누구나 방문하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강원도 발전될 것임	김도희 (한림대 교수)

연번	발언 내용	비고
4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만들어질 때 같이 했던 경험에 남다른 소회와 제주특별자치도법 만들 때도 제주에서 두세 달 합숙을 하면서 조문 하나씩을 전부 점검했던 기억이 있음. 강원도가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돈보다도 권한이다'이며 현 정부 출범하여 대한민국 국정지표로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 지방소멸 특별기금 등 국가적 과제를 강원도에 적용하여 모두 함께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임	최봉석 (동국대 교수)
5	미국식 고도 자치분권을 예를 들며 우리도 미국을 롤모델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총리님·위원님들 강원인으로 간절한 부탁을 드림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
6	원주 강원도 사람으로 서울 대학에 다녔던 30년이 지난 경험에서 늘 변방으로 머물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 않음에 안타까움과 강원도의 많은 부분 양보와 출범 전에 각 부처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면 제대로 된 강원형 자치분권 밑받침 기반을 해 주셨으면 하며 메가시티 못지않은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하는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음	이순자 (국도研 선임 연구위원)
7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도 원주 이전으로 강원도 유관 기관이지만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정책 연구 수행으로 형평성 유지 특수성 있으나, 강원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개정 특례 전문가 회의 검토 참여, 강원도민에게 특별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되는 특례 발굴에 계속 고민하여 중앙부처의 가교 역할을 민간위원들이 해야 할 것으로 추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음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8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태생으로 궁중문화축전 예술총감독, 원주 댄싱카니발 개발 등 세계 관광 인프라 확대 방법 고민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강원도 K 콘텐츠 특별방법 등을 만들고 기여·노력하겠음	이재원 (웰컴대학로 총감독)
9	강원 규제 특례 사항 진입을 열어 시범사업 유형, 평가 계획 등이 필요하며 국방부·접경지역 문제, 산업부·중기부·과학기술부 협력 등 군인들 취·창업에 국방부 아이템을 같이 협력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음	정성훈 (한국산업클러스터 학회 회장)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진 ■



도청에서 회의를 마친 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춘천 남산면 수동리 (주)더존비즈온*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강원도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현황과 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청취했다.

*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는 정밀 의료 규제자유특구 특례 데이터 활용 공간인 데이터 안심존이 구축되어 지난 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희소가치가 높고 유용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도구와 높은 사양의 분석시스템을 이용 누구나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안전한 분석 공간)으로 지정되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의지를 실현시킬 최적지가 바로 강원도일 것”,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한 강원도가 바이오헬스 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국적인 해제가 어려운 영역에 대해 강원특별법을 활용해서 강원도에서 규제개혁을 시범적 실시하여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규제 샌드박스’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ICT 등 디지털 기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살펴보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산림, 환경 등 중첩규제로 인한 저개발상태를 벗어나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주길 당부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현장방문 사진 ■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언론보도 ■

<p>2023. 11. 06. 목요일</p> <p>본회의(신속대응회의)</p> <p>1시(전-1시)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오전에 열렸다.</p> <p>‘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오후에 개최됐다.</p> <p>이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현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했다.</p> <p>이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농업 환경인성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난 2월 6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정부개입안의 부처 협의에 정부의 현행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p> <p>김 지사는 “골세일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법은 지금 4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은 통과시켜주지 않더라도 정말 특별한 경우만 인정해주고 안을 작성인가”라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촉구했다.</p> <p>현덕수 국무총리는 “지사가 말하는 것은 권한이 아니냐”고 자유타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체계가 달라야 한다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장기 부가 있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했다”고 말했다.</p> <p>특히 “각 부처 장관들과 핵심관료에게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들이 숙의해야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체계와 비교 분석을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꼭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현희용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유재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들은 “특별법에 없던 것만 쓰여야 안 된다”, “현행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며 강원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에 한 목소리로 공감대를 형성했다.</p> <p>이날 회의에 앞서 김 지사는 27일 기자회견담화를 통해 강원도의 비전을 발표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성을 짚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신호재 대내외대변인총괄 MTH 기자</p>	<p>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총리 주재로 도정부 개최 현총리 “규제 폐기·다급 번째-지방정부 얻을 수 없다는 사고 벗어나라” 적극 지원 약속에 부처 반대 강원특별법 그랜드미팅 기대</p>  <p>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현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1시, 춘천 강원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p> <p>현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을 약속했다. 현 총리는 직접 부처 장관들을 만나 강원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p> <p>이날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는 현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현 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현희용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해양수산부 장관, 병윤국 국무조정실장, 남성현 산림청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현덕수 강원도지사 등 30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면</p>
--	---

공급이 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 선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록

3.1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준비

3.1.1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은 그야말로 유례없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 새로운 도전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첫 획*이나 다름없었다.

* 특수한 목적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와는 달리 강원 특별자치도는 지역이 상향식·자발적으로 추진한 첫 사례

이런 이유로 제정 강원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더하여 개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자들을 포함한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외부 연구기관에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 용역에는 강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방향성 제시, 논리 개발, 입법 활동 지원 등 종합적 과업이 담겼으며, 1년도 남지 않은 강원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법 개정이 신속하게 완료되기 위하여 부득이 연구 용역과 법 개정 실무작업을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때문에 연구와 실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국회 입법 활동 추진 시기에 들어서면서 용역 수행 기간이 법 개정 실무작업(정부 부처 및 국회 대응 등)과 맞물려 연장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 연구 용역 기간 : (당초) 2022. 8. 12. ~ 2023. 3. 11. → (준공기한 변경)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2022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 사업이었기에 긴급한 상황으로 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강원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조직학회, 강원 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이 용역 시행자로 선정(계약 금액 570백만 원)되어 2022년 8월 12일부터 연구를 착수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주요 내용**

- 강원도 현황 및 여건 분석, 선행 특별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 분석
- 정부 및 타 시도 현황 분석,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구상(비전 등)
-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전략 사업 특례, 교육특구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 특별행정기관, 도·시·군 기능 이양 방안, 규제 혁파 방안, 자치입법권 등
- 법률명 개정, 부문별 개정안 마련, 법 개정 필요성 검토 등
- 각 과제에 대해 필요한 설문·포럼·공청회·워크숍 등 의견수렴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일정 ■

구 분	2022년					202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연구설계	■										
비전 구상 및 수립		■	■	■	■						
특례 발굴		■	■	■	■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	■	■	■	■	■	■		
법제화 작업				■	■	■	■	■	■		
중간보고									■		
보고서 작성			■	■	■	■	■	■	■	■	■
최종보고											■

2022년 8월 17일 김진태 도지사 와 도 실국장, 시·군 관계부서, 교육청 등 유관 기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9월부터 분야별 연구원 및 도·시·군 특례담당자,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14개 분야 4개 분과 (산업, 지역개발, 규제, 행·재정)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실국 및 18개 시·군에서 제안한 444개의 특례를 검토·보완하고, 46개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97개의 특례 및 181개 조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이를 2023년 2월 6일 우리도 출신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연구 용역은 강원 특별법의 국회 입법 활동 지원을 병행하다가 2023년 4월 28일 중간보고를 거쳐, 2023년 6월 7일 최종보고회를 갖고 완료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경과

- 연구 용역 추진 방침 결정 : 2022. 7. 11.
- 사전절차(정책연구 용역 심의·타당성 검토·일상감사) 이행 : 2022. 7. 20.
-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 2022. 7. 25. ~ 8. 5.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2. 8. 8.
- 우선협상 대상자 계약 협상(2022. 8. 9.) 및 계약 체결 : 2022. 8. 11.
 - 계약기간 : 2022. 8. 12. ~ 2023. 3. 9.
- 연구 용역 착수 : 2022. 8. 12.
- 착수보고회 : 2022. 8. 17.
- 변경 계약 체결 : 2023. 3. 6.
 - 계약기간 : 2022. 8. 12. ~ 2023. 6. 9.
- 중간보고회 : 2023. 4. 28.
- 최종보고회 : 2023. 6. 7.
- 연구 용역 완료 :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비전 및 방향 설정, 특례 발굴·규제 혁파 추진 전략 등을 발굴 하여 강원특별법 개정법안의 논리와 기초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전문 기관의 연구 용역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초기 단계의 연구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용역수행의 시급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용역연구 - 실무 대응 두갈래(투-트랙) 동시 수행의 특별한 경험은 오히려 향후 추가 법 개정 시, 도 공무원의 실무 노하우와 도내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만으로도 별도의 연구 용역 없이 입법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고도의 행정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



2022. 9. 14. / 강원연구원 / 강원도지사, 공무원, 강원연구원, 한국조직학회, 강원테크노파크 등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



2023. 4. 28. / 강원연구원 / 공무원, 강원연구원, 한국조직학회, 강원테크노파크 등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



2023. 6. 7. / 강원연구원 / 공무원, 강원연구원, 한국조직학회, 강원테크노파크 등

3.1.2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지향하는 목표(설치 목적)를 확실히 정립하고 이에 따른 법률의 개정 방향을 이행해 가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이자 비전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자 미래 발전상이 되는데 앞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설치 목적으로 하여 국제학교 설립, 내국인 면세점 등의 사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부 부처의 이전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가 가지고 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내는 일은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지역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대한 과정이었기에 최대한 많은 지식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 국내 최고 연구자들과의 브레인스토밍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법제화 등에 참여했던 학자와 전문가들로부터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검토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습득하고 실제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조어(造語)를 만들어야 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시작된 직후 용역수행 주관 기관인 강원연구원 연구진과 도 관계 공무원 등이 국책연구원의 최고책임자를 지냈던 원로 석학들을 만나, 지금까지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비전의 필요성, 개념, 만들어지는 과정과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비전 정립에 대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연구용역 기관인 강원연구원의 연구진들과 여러 전문가들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비전 정립 작업에 돌입하였다.

서울과 도내를 오가며 대학 교수, 중앙부처 전직 고위 공무원, 홍보전략가, 작가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조정해 갔다.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비전수립 토론회 ■



2022. 9. 14. / 강원연구원 /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비전수립 토론회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현황 ■



2022. 9. 7. / 강원연구원 / 관계 전문가 등



2022. 10. 26. / 강원연구원 / 각계 전문가



2022. 11. 4. / 서울 / 각계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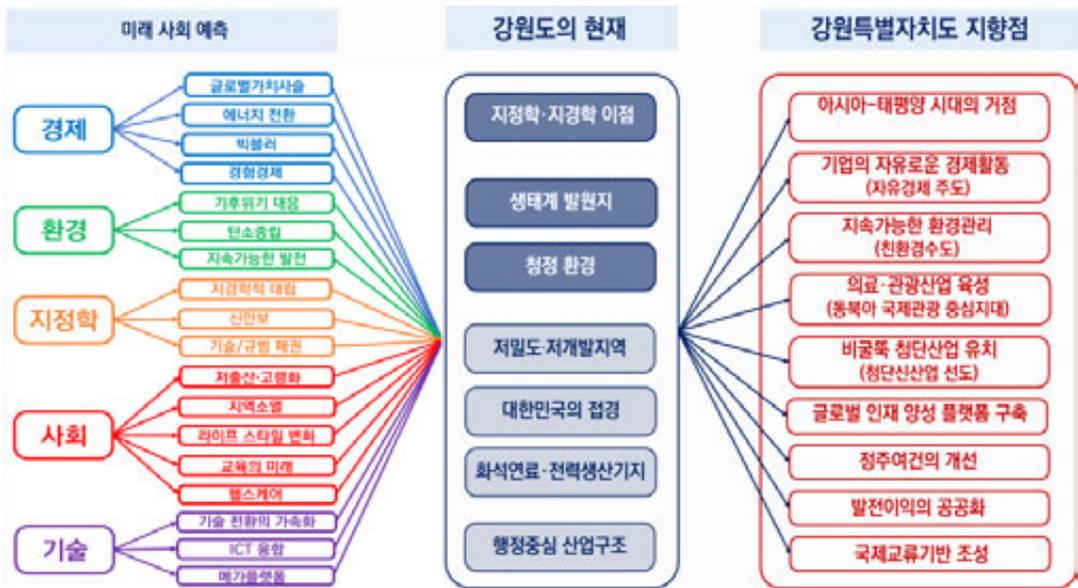


2023. 1. 20. / 강원연구원 / 각계 전문가

비전을 만들어 가는 기법은 우선 우리 도의 역사와 환경, 근대화 이후 산업 발전과 쇠락 현황, 지경학적 요인 등을 분석하고,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 등에 대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하려 하는 전략산업이나 미래의 강점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향점을 모색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수많은 정의와 키워드들의 상호 연결성과 접점들을 찾아가고 그 안에 내포할 수 있는 여러 이미지와 의미 등을 압축시키고 조합해 가며 누구나 들으면 수긍할 수 있는 차별적인 개념을 창조해 나갔다.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수립 도식화 작업도 ■



언뜻 생각하면 10음절 내외의 조어(造語)에 불과하여 반짝하는 아이디어로도 금방 만들 수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해 가는 과정 중에서 대략 6개월여에 걸쳐 반복되고 수정·보완되었을 만큼 가장 지난하고 힘겨운 작업 중 하나였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수도 없이 많은 개념과 용어들이 만들어 졌다가 수정 또는 폐기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나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전문가 의견 수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성을 살린 비전 설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내의 각계각층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백년지계의 근본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수립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2022년 9월 중 도내 4개 권역별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수립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비전 수립에 대한 권역별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토 개발 및 지방 행정 연구의 최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군별 토론자로 참석하는 지역 인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각 지역별 역점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의 방향성과의 연계를 함께 모색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수립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현황

일 시	대상 지역	장 소	토론자	참여인원
2022. 9. 20.	내륙권역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홍천 문화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 김기석 강원대학교 교수 • (원주) 조주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홍천) 김주원 상지대학교 교수 • (횡성)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 (평창) 김보규 도시계획기술사 	200여 명
2022. 9. 23.	폐광권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정선 문화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 함역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삼척) 임관혁 삼척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 (영월)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 • (정선) 배왕섭 정선군의회 부의장 • 지승섭 도 자원개발과장 	150여 명
2022. 9. 27.	접경권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구 문화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 김광성 철원군의회 의원 • (화천) 조용희 화천군의회 의원 • (양구) 홍성철 양구군번영회장 • (인제) 이주민 기획예산담당관 •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 김남준 도 총괄기획과장 	150여 명
2022. 9. 29.	동해안권역 (강릉, 동해, 속초, 양양)	양양 쓸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이원근 미래성장준비단장 • (동해) 신영선 기획예산과장 • (속초)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 (양양) 이종석 양양군의회 의원 • 박현봉 도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150여 명

* (좌장) 한표환 前지방행정연구원장, (발제) 박양호 前국토연구원장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수립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현장 사진



내륙권역(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2022. 9. 20. / 홍천문화예술회관 / 200여 명



폐광권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2022. 9. 23. / 정선문화예술회관 / 150여 명



접경권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2022. 9. 27. / 양구문화복지센터 / 150여 명



동해안권역(강릉, 동해, 속초, 양양)
2022. 9. 29. / 쏘비치리조트 / 150여 명

그 후,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그간의 여러 논의와 연구 및 전문가의 제언 등을 통해 우선 선정된 ‘신경제 국제중심도시’의 비전(안)에 대하여 12월 중 다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목적·비전(안) 권역별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역시 4개 권역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비전 발굴에 참여한 강원연구원 연구진의 비전(안) 설명과 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과 숙의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일각에서는 비전의 방향성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특히, ‘신경제’가 지니는 의미의 불분명함과 다소의 진부함이 강하게 지적되기도 하였다.

■ 설치목적·비전(안) 권역별 도민 공청회 개최 현황 ■

일 시	대상 지역	장 소	토론자	참여인원
2022. 12. 12. (10:00)	제1권역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인제군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좌장) 김범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중 한라대학교 교수 - 김주원 상지대학교 교수 - 유기준 상지대학교 교수 -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100여 명
2022. 12. 12. (15:00)	제2권역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횡성 문화예술회관	1권역과 동일	150여 명
2022. 12. 15. (10:00)	제3권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태백시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좌장)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주영 강원대학교 교수 - 황인욱 사북공공도서관장(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 유원근 강원대학교 교수 - 박대근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사무처장 	100여 명
2022. 12. 15. (15:00)	제4권역 (강릉, 동해, 속초, 양양)	동해 망상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좌장)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주영 강원대학교 교수 - 강달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유원근 강원대학교 교수 - 전억찬 동해시 경제인연합회장 	150여 명

■ 설치목적·비전(안) 권역별 도민 공청회 개최 현장 사진 ■



제1권역(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2022. 12. 12. / 인제군청 / 100여 명



제2권역(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2022. 12. 12. / 횡성 문화예술회관 / 150여 명



제3권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2022. 12. 15. / 태백시청 / 100여 명



제4권역(강릉, 동해, 속초, 양양)
2022. 12. 15. / 동해 망상컨벤션센터 / 150여 명

이에, 공청회와 입법과제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자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심사숙고 끝에 결국,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최종 변경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당초 ‘국제’도시 용어가 ‘글로벌’로 변경되었는데 ‘글로벌’ 영문명은 법률용어로도 가능하고 적합한 용어라 판단되어 최종 변경되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되어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첨단 신산업과 강원도의 청정환경이 융합하는 미래산업을 주도하며, 지경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글로벌 중심지로 지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18개 시·군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출범하는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함께 상생 발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 (비전) 미래산업글로벌도시(Global City for Industries of the future)
- (미래산업) 과학기술의 혁신, 기후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 회로의 전환에 대응한 첨단 신산업과 강원도의 청정환경이 융합하는 산업
 - 생명산업·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기술혁신(ICT 융합) 및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이 진화하는 기존 산업(농업 등)도 포괄하는 개념
- (글로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경학적 특성 강조, 글로벌 중심지 지향
 -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과 연결
- (도시) 물리적 공간인 도시(City)의 개념이 아닌,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공동체의 지역 단위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전략

비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목표	미래 신산업 성장 주도	글로벌 교류거점 구축	행복공동체 실현
8대전략	시장 중심 탈규제	환경·생명·평화 기반 조성	통서 수도권화/균형발전
	첨단 미래산업 육성	육·해·공 고속인프라 구축	강원형 행복 살터 구축
	인재 육성 기반 구축	국제관광/국제교류 활성화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 핵심 규제 개혁 규제프리 혁신 거점 구축 5대 첨단벨트 조성 및 활성화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5대 미래산업 거점도시 조성 기존 산업 고도화 지역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국립 강원고등과학기술원 신산업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교육특구 조성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형 국토환경관리 융복합모델 강원형 생명·건강산업지대화 DMZ 자원활용 평화 산업화 기반 일자형 광역 육상교통망 완성 환동해권 육해공 교통네트워크 도시 교통체계 관리 강화 국제관광벨트/산·해·문융합벨트 레포테인먼트 거점/녹색관광벨트 한반도 신(新)교류거점기반 구축 복방지원 클러스터/국제물류거점 '강원관광발전기금(기정)'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 선(線)형의 강소도시 특화발전 폐광지역 신성장 메가벨리 추진 접경지역 뉴프런티어 사업 추진 청년빌 프로젝트 '청년강원희망빌' 농촌특화형 청년업무지구 조성 스마트 예코형복생활권 모델 구축 스마트 생활권 구축 미래형 건강 의료시스템 구축 생활기반시설/재난안전/건강의료 등 지역 맞춤형 복지 강화
가치와 철학	개 방(Openness)		통합(Integration)

3.1.3 특례 발굴 및 입법과제 선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강원특별자치도의 존립과 발전은 강원특별법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특례 조항을 담느냐가 관건이다. 전설하였다시피 강원특별법 제정 시에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 등 선언적 성격의 23개 조항만 있었다. 때문에 제정법이 공포되고 1년이 지나는 2023년 6월 11일 시행되기 전에 실질적인 특례 조문을 강원특별법에 최대한 많이 보완하여 빈껍데기가 아닌 내용을 채운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분야에서 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및 법제화

강원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고도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특례 반영이 필수적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인격을 갖춘 자치 시·군이 존재하는 최초의 특별자치도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또 다른 사례였다.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도·시·군·교육청 등 각 기관(부서)에 특례안건 발굴을 요청하였다. 특히, 제주특별법 특례조문의 주요 내용, 입법 배경, 자체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유하였으며, 특례를 처음 접하는 도·시·군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례 유형도 분류하였다.

■ 특례 유형 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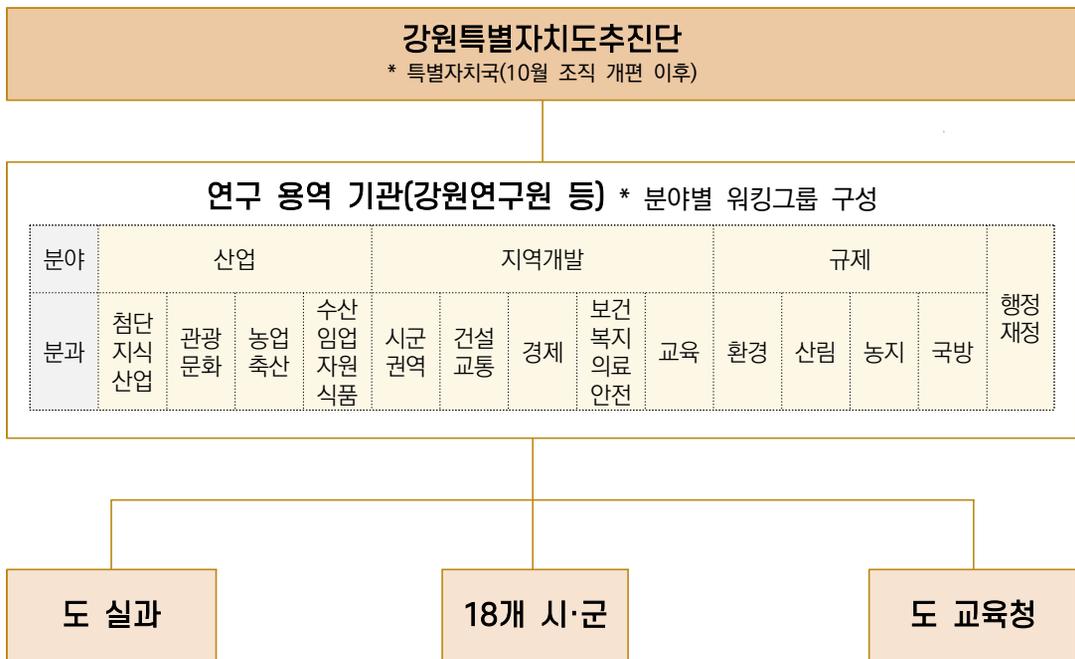
- 권한 이양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방법
- 도 조례 위임 : 도 조례로 위임하는 방법(사무이양)
- 규제 특례 : 개별법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여 특례 부여하는 방법
- 법적 특례 : 새로운 권한 창설, 개별법이나 조항을 적용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방법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일까지 주어진 특례 발굴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정 과제, 도·시·군 핵심 전략산업, 각종 공약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2022년 8월 29일까지 각 기관(부서)로부터 444건의 특례 안건을 발굴하였고, 9월 이후 추가발굴 된 46건을 추가하여 총 490건을 발굴하였다. 발굴한 특례는 「강원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1차입법과제로 분류하였다.

분류와 동시에 4개 분야·14개 분과로 나누는 한편, 특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단 역할을 수행한 워킹그룹을 담당 연구진과 추진단, 특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 강원특별법 연구 용역 분과 구성 ■



워킹그룹은 14개 분과별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각 강원연구원, 강원 테크노파크 등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발굴된 특례 안건에 대한 제안목적·배경 등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도를 높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상향식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타 시도와 형평성, 파급효과, 국가기여도 등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핵심을 두고 컨설팅하였다.

■ 워킹그룹 분과회의 사진 ■



관광문화 1차 분과회의
2022. 9. 13. / 강원연구원 / 30명



첨단지식산업 1차 분과회의
2022. 9. 14. / 강원테크노파크 / 30명

■ 논리 개발 핵심사항 ■

- 형 평 성 : 타 시도가 아닌 강원도가 해당 특례를 받아야 하는 특수성
- 파급효과 : 강원도가 특례를 받음으로 인해, 타 시도에 끼치는 발대효과의 최소화
- 국가기여 : 강원도가 특례를 받음으로 인해,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
- 제주사례 : 제주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받음으로써 유효했던 사례 유무
- 국정과제 : 현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차 분과회의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이 회의는 첨단 지식산업, 관광·문화, 농업·축산, 산림 등 8개 분과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세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 분과에서는 제출된 특례 안건이 동일·유사한 경우 병합하여 단일 특례로 만들었다.

분과회의 이후에는 강원특별법에 반영할 핵심 특례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우선 1차 회의는 10월 13일에 개최하였다.

연구 용역 연구진, 추진단, 18개 시·군 등 40여 명이 특례의 법제화 과정을 공유하고 한편,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 관련하여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도·부처 협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특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앞서 진행된 분과 1·2차 회의에서 선정되거나 중장기·제외 안건으로 분류된 사항도 재검토하였다.

이어서 2차 회의는 10월 20일에 개최하였다. 시·군에서 요청한 핵심 특례를 재검토하였고, 핵심 특례의 논리 개발 및 구체화를 위하여 기존 구성원에 외부 전문가를 추가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 발굴 전략회의를 10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도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하여 발굴된 특례의 주요 쟁점 사항과 부처 대응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우리 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핵심 특례 발굴을 독려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워킹그룹 분과회의 및 도·시·군 전략회의 ■

일 시	회의명	장 소	참석자	참여인원
2022. 9. 13. ~ 9. 20.	1차 분과회의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용역 연구진 추진단 특례 담당자 	분과별 30여 명
2022. 10. 12. ~ 10. 14.	2차 분과회의	강원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용역 연구진 추진단 특례 담당자 	분과별 10여 명
2022. 10. 13. ~ 10. 20.	시·군 핵심특례 선정회의	강원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용역 연구진 추진단 18개 시·군 담당자 	40여 명
2022. 10. 21.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 발굴 전략회의	도청 신관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 행정부지사 도 실국장 및 담당 팀장 추진단 	40여 명

한편 10월 22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TF)에서 특별자치국으로 직제가 변경되어 3개 과 12개 팀으로 인력이 보충되었다. 앞서 진행되었던 5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검토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자치국의 각 팀이 분과를 나누어 각각 담당 하였고, 전문가자문단과 외부 전문가를 추가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특례안전 논리 고도화를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되었다. 즉 과별로 분절된 업무가 아닌 국(局)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 모든 팀이 특례를 맡고 책임지는 구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 특별자치국 워킹그룹 구성 ■

핵심 특례안전		워킹그룹 구성·운영			소관부처
분 야	분 과	도 (특별자치국)		강원연구원	
		과	팀		
지역개발	시·군권역	자치 법령과	제도개선	관련분야 연구원	국토부
지역개발	건설교통		홍보협력		국토부
지역개발	보건복지의료안전		역량강화		복지부/행안부
산업 + 규제	임업광물 + 산림	자치 분권과	특례정책	관련분야 연구원	산림청 해수부 농림부
행정재정 + 산업	행정재정 + 첨단지식산업		분권특례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규제	수산 + 식품		자치분권		환경부
지역개발	교육 + 경제		교육특구		교육부/기재부
산업	관광문화	규제 혁신과	혁신총괄	관련분야 연구원	문체부
규제	국방 + 환경		전략규제		국방부
산업	농업축산		기업규제		농림부
규제	농지		행정규제		농림부

워킹그룹은 1차적으로 11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부처 및 타 시도 대응 논리 고도화를 중점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안전별 법 조문 검토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병행하였다.

대외특례명 : 협정지역 인종상 특성 조항				
논의점	형성성	유연성	국가	성명
형성부담성	고정	고정	고정	고정
특례대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상 특성 및 계층보조구역 지정범위의 특수성을 통한 도시 협정지역 기초 지체대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활동의 기반조성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상 특성과 협정지역 발전의 상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상 특성을 특성하여 협정지역 거주자들에게 생활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면 거주지단위의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가능 여부 ○ 생활 가능한 부지 증가 껴 개발촉진, 지역개발 촉진,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인종상 특성을 부여한 인종상 특성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상 특성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 제도 적호 가능, 인종상 특성 조항의 보조구역 특성과 같은 의미 ○ 인종상 특성의 목적과 100 여대세대 분할권 조항 및 특별 정선지역 감축하는 '안정적 또는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조항과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은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과 동일하다 ● 보조구역 특별 전의제 변경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은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과 동일하다 ○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은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특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대외특례명 : 협정지역 인종상 특성 조항				
논의점	형성성	유연성	국가	성명
형성부담성	고정	고정	고정	고정
특례대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특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국방 분과

대외특례명 : 협정지역 인종상 특성 조항				
논의점	형성성	유연성	국가	성명
형성부담성	고정	고정	고정	고정
특례대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상 특성을 특성하여 협정지역 거주자들에게 생활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면 거주지단위의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가능 여부 ● 생활 가능한 부지 증가 껴 개발촉진, 지역개발 촉진,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상 특성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 제도 적호 가능, 인종상 특성 조항의 보조구역 특성과 같은 의미 ● 인종상 특성의 목적과 100 여대세대 분할권 조항 및 특별 정선지역 감축하는 '안정적 또는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조항과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은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과 동일하다 			
특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대외특례명 : 협정지역 인종상 특성 조항				
논의점	형성성	유연성	국가	성명
형성부담성	고정	고정	고정	고정
특례대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특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 도시지역 '인종상 특성의 특성을 특성하는 조항'을 부여한 협정지역 내부에서 인종차별 없이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농지 분과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강행규범법 법률 조문 조항	관련 법률	제우특별법	세종특별법
<p>제408조(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호를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광역자치도가 발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협의 절차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묻거나 참조하여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관공무원 협의에 의해 지정 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항 제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 도시자의 권한으로 한다.</p>	<p>「환경영향평가법」</p> <p>제408조(환경영향평가협의 특례) ① 중앙정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수행하여야 할 조건의 모든 세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중앙정부는 협의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를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제도에 대하여 요청을 하기 전에 중앙정부를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협의 및 협의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43조제4항 및 제43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제43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중앙정부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대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에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p> <p>제408조(환경영향평가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 관련 계획 2.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3. 제1차 개발 관련 계획 4. 방어진 개발 관련 계획 5. 도로의 개발 관련 계획 6. 수리시설 개발 관련 계획 7. 철도노선 개발 관련 계획 8. 도로의 개발 관련 계획 9. 공항 시설 및 공항에 관한 계획 10.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1.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2.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3.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4.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5.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6.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7.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8.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19.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20. 여객선 시설 및 여객선에 관한 계획 <p>② 중앙정부는 협의 대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항 제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 도시자의 권한으로 한다.</p>	<p>제4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호를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광역자치도가 발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협의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묻거나 참조하여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관공무원 협의에 의해 지정 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항 제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 도시자의 권한으로 한다.</p>	<p>제4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호를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광역자치도가 발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협의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묻거나 참조하여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관공무원 협의에 의해 지정 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항 제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 도시자의 권한으로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2항 제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 도시자의 권한으로 한다.</p>

[환경 분야]

2.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산지관리법」 등 규제 제외 특례

강행규범법 법률 조문 조항	관련 법률	제우특별법	세종특별법
<p>제409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시장은 산지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안전취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지 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계획이 마땅치어서 그 연계를 지할 목적, 타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지자질과 경관적 산지이용진흥지구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도적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공적개발 있을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5. 전산제, 도시 무용 지목의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후치규정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p>② 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408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연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408조를 적용한다.</p> <p>⑤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진흥지구는 도시장이 관리한다.</p> <p>⑦ 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을 따라 사업시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⑧ 도시장은 공적 영향평가권, 정부유연기관 또는 정부유연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p>	<p>「산지관리법」</p> <p>제409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시장은 산지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안전취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지 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계획이 마땅치어서 그 연계를 지할 목적, 타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지자질과 경관적 산지이용진흥지구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도적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공적개발 있을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5. 전산제, 도시 무용 지목의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후치규정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p>② 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408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연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408조를 적용한다.</p> <p>⑤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진흥지구는 도시장이 관리한다.</p> <p>⑦ 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을 따라 사업시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⑧ 도시장은 공적 영향평가권, 정부유연기관 또는 정부유연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p>	<p>제409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시장은 산지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안전취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지 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계획이 마땅치어서 그 연계를 지할 목적, 타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지자질과 경관적 산지이용진흥지구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도적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공적개발 있을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5. 전산제, 도시 무용 지목의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후치규정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p>② 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408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연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408조를 적용한다.</p> <p>⑤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진흥지구는 도시장이 관리한다.</p> <p>⑦ 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을 따라 사업시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⑧ 도시장은 공적 영향평가권, 정부유연기관 또는 정부유연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p>	<p>제409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시장은 산지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안전취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지 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계획이 마땅치아서 그 연계를 지할 목적, 타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지자질과 경관적 산지이용진흥지구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도적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공적개발 있을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5. 전산제, 도시 무용 지목의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후치규정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p>② 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408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연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408조를 적용한다.</p> <p>⑤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진흥지구는 도시장이 관리한다.</p> <p>⑦ 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을 따라 사업시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⑧ 도시장은 공적 영향평가권, 정부유연기관 또는 정부유연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p>

[산림 분야]

공공임업은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선도

특목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각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록

2. 절경지역 민통선 조정에 관한 사례

강령특별법 법률 조문 초안	관련 법률	제주특별법	서울특별법
<p>제605(군군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군사시설과 공민정 등을 식별하여 통합하고 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을 집중하여 군·군민가족·지역주민이 집중할 수 있는 단차(이하 '군군복합단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는 등 「군군복합단지 조성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군군복합단지 조성·운영에 관하여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② 국가는 군군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5조(군군복합단지 조성) 1. 국가는 군사시설과 공민정 등을 식별하여 통합하고 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을 집중하여 군·군민가족·지역주민이 집중할 수 있는 등 「군군복합단지 조성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군군복합단지 조성·운영에 관하여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2. 국가는 군군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605(민간민통선 및 재한보유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군군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p> <p>1. 민간민통선은 군군복합단지의 시설 15종중 10종 이하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p> <p>2. 재한보유구역은 군사목적시설의 시설 15종중 10종 이하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p>	<p>「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5조(민간민통선 및 재한보유구역 지정) 1.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군군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p> <p>2. 민간민통선은 군군복합단지의 시설 15종중 10종 이하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p> <p>3. 재한보유구역은 군사목적시설의 시설 15종중 10종 이하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60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시계획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군군복합단지 지정·변경 및 재개발·건설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재한보유 구역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하여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p> <p>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① 도시계획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군군복합단지 지정·변경 및 재개발·건설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재한보유 구역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하여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국방 분야]

2. 농지의 전용여가협의 통 및 농지전용여가 협의의 제한에 관한 사례

강령특별법 특례	관련 법률	제주특별법	서울특별법
<p>제605(농지의 전용여가 협의 통)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여가협의 통 절차를 포함한다. 이의 이 조에서 같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여가 협의 통 절차에 관한 농지전용여가협의 통 절차에 관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③ 「농지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동시행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6조(농지의 전용여가 협의 통) ① 「농지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여가협의 통 절차를 포함한다. 이의 이 조에서 같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여가 협의 통 절차에 관한 농지전용여가협의 통 절차에 관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③ 「농지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동시행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제175(농지의 전용여가 협의 통)에 관한 특례</p> <p>① 「농지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여가협의 통 절차를 포함한다. 이의 이 조에서 같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동시행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제605(농지전용여가 협의 통)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농지법」</p> <p>제14조(농지전용여가 협의 통) ① 「농지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여가협의 통 절차를 포함한다. 이의 이 조에서 같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여가 협의 통 절차에 관한 농지전용여가협의 통 절차에 관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p>제175(농지전용여가 협의 통)에 관한 특례</p> <p>「농지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p>	

[농지 분야]

■ 법제화 중점사항 ■

- 규제개혁 :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규제개선 사항
- 권한이양 : 예산(국비) 확보가 아닌 실질적 규제 해제 권한 이양 사항
 - 이양된 권한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주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핵심규제의 행위 제한, 허가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제화
- 정책타당성 : 특별자치도 목적·비전, 도정 방침 정합성(整合性) 고려
- 유사안건통합 : 내용상 유사·중복되는 안건은 하나의 입법과제로 병합

이렇게 9월부터 11월까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하여 작성된 특례 검토보고서 및 법조문은 최종적으로 4대 핵심 규제(환경, 산림, 군사, 농업)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지역개발, 행·재정, 교육 등 기능별·주제별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4대 규제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산림이용진흥지구, 미활용 군용지 활용,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규제효과가 핵심이었다. 전략산업·지역개발 분야는 반도체·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 지역특화산업들에 대한 특례를 반영하였고, 행·재정 분야는 자치조직권, 세율조정, 교육분야는 국제학교 설치 특례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 워킹그룹 운영결과 분야별 주요과제 ■

분 야	주요과제
4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 특례 • 댐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특례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권한 이양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 특례 •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수의계약 • 접경지역 경제특구 지정 •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 이양 • 농지전용허가 권한 이양
전략산업·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례 •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 내국인 면세점 설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특례 •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특례 • 카지노 영업 제한 권한 이양 • 폐광지역 경석의 광물지위 부여
행·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조직권 • 지방교부세 특례 •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특례 • 현안사업 추진 시·군 세입감소분 보전 특례 • 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의회 자치조직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육특구 지정 운영 특례 •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설립 • 유아·초·중등교육 및 강원유학,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및 연구 개발특구

위와 같이 선정된 법률안은 2023년 1월 17일 도민설명회를 기점으로 도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중점분야인 4대 규제는 전 국민과 국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2022년 12월 28일 환경 분야 포럼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6일 농지 분야 포럼까지 4차례 포럼을 추진하였다.

나 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특례 발굴 추진계획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또 지역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강원 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2022년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지역 주민과 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설명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특례 발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강원특별법 특례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지역별·권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가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현황

일 시	대 상 지 역	장 소	참여인원
2022. 8. 11.	제1권역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강릉시청 대강당	200여 명
2022. 8. 18.	제2권역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시청 대회의실	150여 명
2022. 8. 19.	제3권역 (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원주시청 다목적홀	150여 명

■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현장사진 ■



1권역(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2022. 8. 11. / 강릉시청 / 150여 명



2권역(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2022. 8. 18. / 춘천시청 / 200여 명



3권역(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2022. 8. 19. / 원주시청 / 150여 명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당시까지 낯선 용어였던 특례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특례적용 사례(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50만 명 이상 또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등 특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목표를 공유하게 되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례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었다.

다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권역별 도민 공청회 개최

2022년 8월부터 발굴한 특례 과제들을 대상으로 4대 핵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분과별 워킹그룹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연계하여 조문별 전문 법제관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97개 입법과제, 181개 조문을 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입법과제들에 대하여 2023년 1월에는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 특례와 첨단지식, 관광·문화, 농·축·해양수산 등 전략산업 육성 특례, 행·재정 및 교육 특례 등 강원특별법 분야별 입법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권역별 도민 공청회 개최 현황 ■

일 시	대 상 지 역	장 소	토론자	참여인원
2023. 1. 11. (10:00)	폐광권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영월군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 태백부시장 김정윤 • (삼척) 삼척부시장 최중훈 • (영월) 영월부군수 성기환 • (정선) 정선부군수 원홍식 	150여 명
2023. 1. 11. (15:00)	내륙권역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평창 문화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원주)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 (홍천) 기획감사실장 정윤선 • (횡성)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 (평창) 기획실장 주현관 	150여 명
2023. 1. 13. (10:00)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고성군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 철원부군수 박경우 • (화천) 강원특별자치도TF팀장 김성복 • (양구) 기획예산실장 김재식 • (인제)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 • (고성)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100여 명
2023. 1. 13. (15:00)	동해안권역 (강릉, 동해, 속초, 양양)	속초시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 (동해)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속초) 속초부시장 김성림 • (양양) 양양부군수 최태섭 	150여 명

※ 공통 토론자 : (도)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현재호 자치분권과장 / (강원연구원) 김경남 선임연구위원

■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권역별 도민 공청회 현장 사진 ■



폐광권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2023. 1. 11. / 영월군청 / 150명



내륙권역(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2023. 1. 11. / 평창문화예술회관 / 150명



접경권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2023. 1. 13. / 고성군청 / 100여 명



동해안권역(강릉, 동해, 속초, 양양)
2023. 1. 13. / 속초시청 / 150명

라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 설명회

앞서 개최되었던 권역별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초안이 마련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를 전 도민에게 알리고 최종안을 확정하고자 2023년 1월 17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입법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종 확정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들이 모아졌다.

설명회는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대담 등이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대담에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의 진행으로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 위원장, 최양희 범국민추진협의회장 등이 참여하여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의미와 비전과의 연계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 설명회 현장 사진 ■



실질적인 강원특별법 개정안 확정 직전 단계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입법과제들의 특례 완성도를 높이고 추진 논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넓은 면적과 18개 시·군별 각기 다른 특성, 접경 및 폐광 지역 등 권역별 특수한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강원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들에 대한 도민의 동의를 확보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데 탄력을 가져왔다.

3.2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위한 노력

3.2.1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발의

2022년 하반기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통해 발굴한 특례들은 여러 전문가들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들로 다듬어졌다. 이를 법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조문으로 다듬어서 국회 의안(법안)으로 제출해야 했다.

입법과제들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6일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단(위원장: 김순은) 중 18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안) 소개, 특례 반영 입법과제 설명,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 순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입법과제와 특례에 대한 자문단의 격려도 있었지만, 미발굴·누락된 특례와 특례의 실효성에 대한 제언과 쓴소리도 거침없이 논의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2023. 1. 6.) ■



이후, 1월 10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도 출신 및 연고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입법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입법 방법과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입법경험이 풍부한 보좌진들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방법, 다른 시도 국회의원과 의 공조 필요, 선택과 집중, 개별 특례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주어 입법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 입법과제들은 강원특별법 기존 25개 조문을 포함하여 모두 181개 조문의 법안으로 초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조문 하나하나 모두가 소관 부처들과의 힘겨운 논쟁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법안이 상정되고 심사된다면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로 인해 부처 협의가 어렵고 지난하게 진행될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일인 2023년 6월 이전에 법안 전체를 협의하고 통과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효율적인 입법절차 진행을 위해 6월 이전 법 개정을 위해 부처협의 수용성, 국회 심사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안의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하고, 최종 지휘부 논의를 거쳐 1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확정 하였다. 다만, 전부개정안에 담지 못한 입법과제들은 차후 개정 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137개 조문 전부개정안이 확정된 후 법안 발의 방식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이라는 일치된 목표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따로 없었으며 강원도민은 물론 전국적인 동의를 통해 거대한 당위성을 추진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도지사가 현직 여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법안 발의는 제정 당시부터 강원특별법을 개정해 앞장서 오던 도내 야당 국회의원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물론 지원위원회 심의와 정부입법(행정안전부) 방식도 검토를 했지만, 출범일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시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원입법 방식이 중론이었다.

의원입법 발의는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 하지만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정당의 법안으로 인식되면 국회의원들의 관심도나 심사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급적 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허영 의원실은 2월 2일부터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발의안에 대하여 공동발의를 제안했으나 제안일 당일까지는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았다. 이에 도에서는 당초 광범위한 의원들의 공동발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은 물론, 향후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출신 의원실까지 방문하여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발의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주말·휴일인 2월 4일과 5일을 지나 월요일인 2월 6일에는 여·야 총 8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등 86인, 의안번호 2119855)」을 발의하였다. 특히 허영 의원실과는 발의 전까지 환경 분야에 대한 조문을 수시로 수정하고 수용성 높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였다.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현황 ■

〈공동발의 의원 현황(2. 6. 14:00 기준)〉

◎ **파란색: 행안위 소속**

공동발의 (86)	국힘 (36)	강대식, 권성동, 김기현, 김용판 , 노용호, 박대수, 박대출, 박정하, 서일준, 신원식, 안철수, 양광희, 유상범, 윤두현, 윤상현, 이양수, 이 용,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전주혜, 정경희, 정우택 , 정운천, 조수진, 조은희 , 지성호, 하영제, 한기호, 황보승희, 이만희 , 백종현, 최승재, 조경태, 이종배, 조명희
	민주 (50)	허 영(대표발의), 강훈식, 고민정, 김두관, 김병주,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 김희재, 남인순, 박광온, 박상혁, 백혜련,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오영환 , 우원식, 이개호, 이용빈, 이원욱, 인재근, 임호선 , 장철민, 정성호, 주철현, 최강욱,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홍익표, 노웅래, 송기현, 임종성, 권인숙, 이소영, 이상호, 홍정민, 이형석 , 김한정, 최기상 , 김남국, 김교흥 , 윤호중, 김영진, 소병철, 송재호
행안위 (11/22)	국힘 (4/9)	김용판, 정우택, 조은희, 이만희
	민주 (7/12)	김철민, 오영환, 임호선, 이형석, 최기상, 김교흥, 송재호
	불참 (11)	장제원(국), 문진석(민), 이성만(민), 이해식(민), 조응천(민), 천준호(민), 김 웅(국), 박성민(국), 이채익(국), 전봉민(국), 용혜인(기본)
행안위 법안1소위 (5/9)	국힘 (3/4)	김용판, 정우택, 조은희
	민주 (2/5)	김교흥, 송재호
	불참 (4)	박성민(국), 이해식(민), 조응천(민), 천준호(민)

이와는 별개로 1월 26일 도 출신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노용호 국회의원이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19645)」을, 5월 4일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이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121814)」을 각각 발의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특별자치도’는 관할 내 시·군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정하고 있으나, 관할 내 시·군을 유지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타법 개정이 필요하였다. 즉 현행 법령 상 특별자치도(또는 도지사)는 시·군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또는 도지사)를 말하는데, 시·군이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또는 도지사)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특별자치도(또는 도지사)와 시·군(시장·군수)의 권한 또는 책임이 같이 있는(병렬로 규정한) 법령의 경우 법령 해석과 적용상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도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현재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시행예정 포함) 대상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796개 2,495조문), 시행령(796개 1,929조문), 총리령·부령(516개 1,421조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2023년 1월 ‘강원도, 강원도지사’ 자구가 포함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13개 법률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지사’ 자구가 포함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292개 법률을 조문별로 대조하여 타법 개정 필요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령 충돌 사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1월 19일 도와 행정안전부는 제5차 정례협의를 개최하여 타법 일괄 개정에 대하여 수 많은 법령 하나하나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강원특별법에 「법령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전부 개정 시 반영*되었다.

* 강원특별법 제10조제8항·제9항 참고

■ 그 외 강원특별법 개정 의원입법 개요 ■

- '23. 2. 2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189)
- 일부개정, 행안위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 특별자치도(도지사) - 시·군(시장·군수)의 권한 사무 충돌 해소 특례 조항 반영(제10조8항), 부칙
 - ①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군 또는 시장·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령적용 특례
 - ② 부칙 개정(단순 강원도 명칭 변경)

3.2.3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과제 통과 공론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권한과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023년 6월 출범 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함에 따라 특별법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또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여론 확보를 위해 학술단체와 연계하여 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전문 학술 단체와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발전 방향,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의 핵심인 산림·환경·군사·농업 4대 규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개최되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분야별 이슈와 정책, 규제의 불합리성,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의 당위성 등에 대한 발제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부처의 경우 포럼에 참석하여 강원도의 어려운 상황과 특례 반영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 강원특별법 개정지원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



환경분야 국회포럼 (2022. 12. 28.)



산림분야 국회포럼 (2023. 1. 16.)



군사분야 국회포럼 (2023. 3. 2.)



농지분야 국회포럼 (2023. 3. 13.)

또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입법 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 10일에는 「강원 특별법 개정지원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강원도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회의원 등 여야 지도부에서 참석하여 6월 출범 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속한 협의와 통과를 일제히 약속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지원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2023. 4. 10.)



끊임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도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 강원특별자치도 주제 포럼, 심포지엄 등 개최 현황 ■

- 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
 - 일시/장소 : 2022. 7. 29.(금) 14:00 / 제주 오리엔탈 호텔
 - 주 최 :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
 - ※ 후 원 : 강원도, 강원도의회
 - 참석 인사 : 강원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강원도민일보
 - 강원(35명) : 도의회 의장단, 강원연구원, 특별자치도추진단
 - 제주(10여 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제주연구원

- ② 강원도의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행사
 - 일 시 : 2022. 11. 10.(목), 14:00 ~ 16:30
 - 장 소 : 강원연구원 대회의실 1층
 - 주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 최 : 강원도의회, 강원도,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세제의 발전 방안

- ③ 한국공법학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동학술대회
 - 일 시 : 2022. 11. 11.(금), 14:00 ~ 18: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관 : 강원도, 한국공법학회, 국회의원실
 - 참 석 : 학회 소속 교수 및 연구진, 국회의원 등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

- ④ 한국지역개발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 일 시 : 2022. 11. 18.(금), 13:20 ~ 18:00
 - 장 소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주 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참 석 : 학회소속 교수 및 연구진, 국회의원 등
 - 주 제 : 대전환기의 지방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지방화시대와 분권 특례지방자치단체 추진 -

- ⑤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 강화 모색 심포지엄
 - 일 시 : 2022. 11. 22.(화), 14:00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도민일보, 강원연구원, 강원국회의원협의회
 - 참 석 :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18개 시·군 및 시군 의회 등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연대 발전 방안 모색

⑥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22. 11. 25.(금), 14:00 ~ 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연구원, 권성동·노용호·박정하·송기현·유상범·이양수·이철규·한기호·허영 국회의원실
- 주 제 : 지방시대, 강원도 분권 어디로 가야하나

⑦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

- 일 시 : 2022. 12. 21.(수), 14:00 ~ 16:10
- 장 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 주 최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 어디까지 왔나 - 방향과 과제 -

⑧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발전방안 모색 포럼

- 일 시 : 2022. 12. 27.(화), 14:00 ~ 16:30
- 장 소 : 원주문화원
- 주 최 : 원주시, 원주시의회, 강원일보
- 후 원 : 강원도, 원주시
- 참 석 : 80명 내외(학계전문가, 공무원, 의원, 시민 등)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⑨ 강원특별자치도와 환경 심포지엄

- 일 시 : 2022. 12. 28.(수), 10:30 ~
- 장 소 : 원주문화원
- 주 최 : 강원도, 강원국회의원협의회
- 주 관 : 강원도민일보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 이슈와 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분야 현안과 과제

⑩ 강원특별자치도와 산림 심포지엄

- 일 시 : 2023. 1. 16.(월), 10:00 ~ 11: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일보
- 참 석 : 관련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 개발과 보전의 균형

⑪ 2023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 일 시 : 2023. 2. 16.(목) ~ 17.(금) / 2일간
- 장 소 :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잭슨나인스 호텔(춘천시)
- 주 최 : 한국정치학회
- 주 제 : 합의와 포용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⑫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심포지엄

- 일 시 : 2023. 3. 2.(목), 14:00 ~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강원도,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강원국회의원협의회
- 주 관 : 강원도민일보
- 주 제 : 접경지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강원특별법 군사규제 특례

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 토크콘서트

- 일 시 : 2023. 3. 3.(금), 14:00 ~
- 장 소 : 한림대학교 캠퍼스라이프센터 비전홀
- 주 최 :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 참 석 : 학생, 일반시민,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등 150여 명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가치, 강원특별법 내용, 특별자치도 시대의 일상 등

⑭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지원을 위한 도 출신 언론인 간담회

- 일 시 : 2023. 3. 8.(수), 18:00 ~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주 관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 참 석
 - 언론사(10명) : 도내외 주요 언론사 간부급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5명) : 협의회장 등
 - 강원도(5명) : 도지사, 특별자치국장 등
- 주 제 :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현황 및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붐업 추진 현황 등

⑮ 강원특별자치도와 농지 심포지엄

- 일 시 : 2023. 3. 13.(월), 15:00 ~ 17: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양수,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강원도
- 주 관 : 강원일보
- 주 제 : 농지제도의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 강원특별법 농지 규제 특례

- ⑩ 강원특별법 개정지원 국회포럼
- 일 시 : 2023. 4. 10.(월), 15:30 ~ 17:30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 최 : 강원도 ·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 주 관 : 강원일보
 - 참 석 : 여야 국회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18개 시·군 공무원, 일반시민 등
- ⑪ 강원특별자치도 설악권 발전포럼
- 일 시 : 2023. 4. 17(월), 10:00 ~ 11:40
 - 장 소 :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강당
 - 주 최 : 강원도 · 이양수 국회의원
 - 주 관 : 설악신문
 - 참 석 : 강원도지사, 이양수 국회의원,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공무원, 주민 등 100여 명
 - 주 제 : 설악권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모색
- ⑫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30 기념 특별행사(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
- 일 시 : 2023. 5. 11.(목), 10:00
 - 장 소 :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강원도민일보
 - 참 석 :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의원, 18개 기초단체장, 범국민추진협의회, 도 단위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
 - 주 제 : 분권선언문 채택,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국회통과 촉구 퍼포먼스 등
- ⑬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대학 포럼
- 일 시 : 2023. 5. 11.(목), 14:00 ~ 17:00
 - 장 소 :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컨퍼런스홀
 -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행정포럼, 강원도대학포럼
 - 참 석 : 행정부지사, 김현영 강원대학교 총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자치분권, 강원특별자치도 고등교육거버넌스와 지역대학
- ⑭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 일 시 : 2023. 6. 23.(금), 13:30 ~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 주최/주관 : 대한지리학회
 - 참 석 : 관련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
 - 주 제 :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리학적 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산업, 과학기술, 창업 발전전략 모색

②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

- 일 시 : 2023. 7. 7.(금), 10:00 ~ 17:00
- 장 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109호, 224호
- 주 최 :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후 원 : 전국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강원도, 전북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건국대학교
- 주 제 :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특별자치도 도약방안

또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강원도(특별자치국, 특례 실국 담당부서)와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과장, 특례 담당 사무관 등 8명)는 함께 2023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2일간) 도청 제2청사(현 제2별관) 6층(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위의 특례 워크숍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박광섭 강원지원과장과 특례별 담당 사무관 등 8명, 도·도 교육청 특례 소관 실과 담당 팀장(담당자) 및 특별자치국 담당팀 50명이 참석하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하여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 등 분야별 특례(42개) 중심으로 ① 도의 지역 특성, ② 제주특별자치도 적용사례, ③ 도 또는 시·군 혜택 대상, ④ 적용유형(조례, 특별법 규정, 도지사 등) 현황 및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설명·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특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의 원활한 정부 부처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강원특별법 특례 워크숍 개최 현황 ■

구 분	분야별 특례	비 고(특례수)
1일차 (3. 9.(목))	• 4대 핵심 규제(환경, 산림, 군사, 농업)	20개
	• 전략산업·지역개발(첨단, 관광, 균형 발전 등)	11개
2일차 (3. 10.(금))	• 행·재정, 교육(인사, 조직, 지방재정, 교육자치 등)	11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워크숍(2023. 3. 9. ~ 10.)



4대 규제(환경 분야)



4대 규제(산림 분야)



4대 규제(군사 분야)



4대 규제(농업·농지 분야)



첨단·관광·균형발전·광물·복지·해양수산 분야



인사·조직·지방재정·감사 분야



의회 분야



교육 분야

꿈이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보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3.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3.3.1 도-행정안전부 등 정례 협의

2022년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 개시 이후 특별자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원체계가 필요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을 총괄하는 정부 중추 역할로써 「강원도-행정안전부」 정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제1차 회의는 2022년 7월 20일(수)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와 사무실에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3명과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TF) 추진담당관 등 3명이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협의와 매월 도-행정안전부 정례협의를 개최하기로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는 2022년 8월 30일(화)에 행정안전부 제2회의실 539호에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김상진) 등 4명과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TF) 추진담당관 등 4명, 연구 용역기관(강원연구원 김경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강원테크노파크 지호철) 등이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계획 설명 및 협의,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례 협의하였다.

제3차 회의는 2022년 10월 12일(수)에 행정안전부 제1회의실 804호에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4명,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 사무관,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TF) 추진담당관 등 4명이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상황 점검, 지원위원회 설치 시행령 제정안,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례협의하였다.

제4차 회의는 2022년 12월 2일(금)에 행정안전부 별관 539호 대회의실에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4명, 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 등 4명이 참석하여 행정체제 특수성,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상황, 지원 위원회 설치 시행령 제정안 추진 상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례협의하였다.

제5차 회의는 2023년 1월 19일(목)에 행정안전부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3명, 특별자치국 자치법령과장 등 4명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법제처에서 참석하여 타법 일괄 개정 방안, 공부(公簿) 등 행정시스템 정비 방안, 특별법 개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례 협의하였다.

위와 같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5회 강원특별자치도 제도 형성, 현안 점검 지원을 위한 정례협의를 하였다.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 필요성과 비전 수립, 특례 발굴, 시행령 제정 등 강원특별자치도 현안 협의 및 쟁점 공유를 통해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당면 현안인 특별법 적기 개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도·행정안전부 정례협의 현황 ■

구 분	정례협의 개요	주요내용
도-행정안전부 정례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연구 용역 수행기관 등 • (운영) '22년 7월 ~ '23년 1월(총5회) • (주요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상황, 출범 준비 등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위 설치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협조 등 ('22. 7. 20.) • 연구 용역, 기타 건의사항 등('22. 8. 30.) • 연구 용역 추진경과 등('22. 10. 12.) • 연구 용역 추진상황, 시행령 제정안 추진 상황 논의 등('22. 12. 2.) • 타법 일괄개정 방안, 공부(公簿) 등 시스템 정비방안, 특별법 개정방안 논의 ('23. 1. 19.)



3.3.2 타 시도 협력 강화 및 정책 공조

가 4대 지방협의체 공동건의문 채택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17개 모든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권한 외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칫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논리를 다른 시도도 함께 공감하고 동조할 수 있어야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논의되면서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해 우리 도는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4대 지방협의체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했다. 법안 심사의 일정과 시기가 저울질 되던 4월 초부터 각 협의체 사무국에 공동결의문 채택을 요청한 결과, 각 협의체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이에 4~5월 중 예정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4. 18.),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4. 25.), 시도지사협의회(5. 3.), 시도의회회의장협의회(5. 8.)에서 채택하게 될 공동결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각 협의회에 송부하고 수정없이 그대로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강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국적인 지지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4대 지방협의체 공동결의문 채택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결의
(2023. 4. 18.)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결의
(2023. 4. 25.)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결의
(2023. 5. 3.)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결의
(2023. 5. 8.)

공임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혁신도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 이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절벽의 현실은 나날이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인 출산을 저하는 그렇다쳐도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지방은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교육환경과 생활편의도 축소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방이 스스로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많은 규제들은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과감한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던 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실질적 분권을 통해 회생시킬 수 있는 모범적 시도를 담은 정책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간 수도권 상수원과 허파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에 가혹할 정도의 규제에 묶여져 눈부신 대한민국 발전사에서도 항상 뒤쳐져 왔다.

이에 더해, 분단의 최전선에서 한반도의 가장 넓고 긴 접경지역을 걸치고 있고 정부 에너지정책의 급변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한 폐광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역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도태와 쇠락이 오히려 가중되어졌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강원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올 6월 11일 지역이 주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초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제정법에는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없이 특별자치도의 지위 등 23개의 선언적 조문만이 담겼을 뿐이다.

때문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 부처의 강력한 수권(守權) 의지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법」입법과정의 난항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17개 시도 모두에 대한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야말로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그 선례가 곧 모든 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여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18명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함께 정책을 공조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하며 정부 부처와 국회에 대한 다음의 촉구 건의문을 결의한다.

1. 각 정부 부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 및 규제개혁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히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6월 11일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25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나 특별자치시도 정책 공조협력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협력과 향후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시도’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게 될 4개 특별자치시도(강원·제주·세종·전북)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였다.

2023년 초 우리 도가 제주자치도에 이에 관한 의사를 타진한 이후 제주자치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를 자임하며 세종자치시까지를 포함하여 3개 시도간 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점으로 2023년 2월 21일 제주에서 3개 시도가 모이는 첫 회의를 계획했다.

당초 전라북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일인 2024. 1. 18.까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자치도로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던 마당에 굳이 몇 달의 시간 차이 때문에 협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 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전북을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 간의 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우리 도 역시 2023년 6월 11일까지는 특별자치도가 아니긴 하지만 상생협력 협약식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 이후인 2023년 7월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협약식 당시에는 강원·제주·세종 모두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도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협약 추진 방향 및 공통추진 과제 등 세부 사항의 협의를 위해, 각 시도별 특별자치업무 담당 팀장(사무관)급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21일 제주자치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3년 4월 25일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팀장급)를 개최하였다.

이후 2023년 6월 24일에는 이미 정식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자치도 춘천에서 ‘2023 글로벌 자치분권 포럼’에 맞춰 각 특별자치시도의 담당업무 국장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참석 대상을 격상한 제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7월 3일 국회에서 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실무협의회 개최 ■



2023. 2. 21. / 제주특별자치도청 / 시도별 팀장급



2023. 4. 25. / 전북도의회 / 시도별 팀장급



2023. 6. 24. / 춘천 스카이컨벤션 / 시도별 국장급

이와는 별도로 타 특별자치시도(전북 포함)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공통된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도지사 또는 도 출신 국회의원의 영상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행사 초청 등에 응해 도 지휘부가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 타 시도 행사 및 업무 협조 사례 ■



전북자치도 비전선포식 및 국민지원위 출범식
(2023. 5. 3.) 도지사 영상축하 메시지 송부



전북 특별자치도추진단 내방 업무협의
(2023. 8. 17. / 제2별관 대회의실)

■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분권 개헌’ 세미나 ■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분권 개헌’ 세미나 (2023. 5. 15. / 국회 세미나실)

이에 따라 앞서 특별자치 4개 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협력 의제를 바탕으로 2023년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4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및 각 시·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식에서 4개 시·도지사(세종 행정부지사 대리참석)가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의 발판이 될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2023. 7. 3.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확보, 국정 과제의 추진, 각 시·도 특별법 개정, 지방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특별자치 역량 강화 등으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협약 이후에도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칭)」 구성을 통해 ‘특별자치’의 가치를 확대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하였다.

■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서(2023. 7. 3.) ■

강원특별자치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상생협력 협약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서로가 함께 발전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이라 한다), 전라북도(이하 “전북”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이라 한다)가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강원, 전북, 제주, 세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1.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2.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3.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협력
4. 국세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5. 주민, 공무원 등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6.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7.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 체결 기관 사이에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네 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획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8조(경과조치) 전북의 권리, 의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7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김진태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민호

3.3.3 강원도의회 의 적극 지원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당초 발굴한 500여 건의 특례를 137건으로 축소한 법안에 대하여 정부 부처와 국회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 수용 난색을 표하자 강원도의회는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나고 49명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김길수, 영월1, 국민의힘)은 “특례없는 특별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는 특례 인정이 권한 축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문 발표(2023. 4. 11.)

2023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에서는 바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의원이 합심하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와 국회 정문에서 도의원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진행한 결의대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의장(권혁열, 강릉4,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대표 낭독하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300만 강원도민의 굳은 의지와 염원을 담아 도민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결의대회(5월)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및 결의문 발표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회기 일정(제319회 임시회, 2023. 5. 16. ~ 5. 24.)에도 불구하고 5월 23일 8시 30분부터 강원도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도민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도의원이 연속(릴레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첫 주자로 나선 강원도의회 의장은 “5월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300만 강원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라면서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3.4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중앙부처 및 국회 협의

3.4.1 중앙부처 협의

국회에서 법안을 조문별로 심사할 때 국회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를 돌아보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문 수가 30개였고,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문수가 69개였다. 법 제정 당시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최종 통과된 법조문이 23개 조문에 불과했던 것은, 관련 부처의 반대의견을 국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각 입법과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내 국회의원을 대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각 부처의 첫 의견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관련 부처의 권한이양 사항이 없어 특별한 쟁점이 되지 않는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법과제에 대해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법과제에 대한 주요 반대 논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었다. 왜 강원도에만 해주어야 하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부처를 설득하는 일이 시급했다. 강원도가 왜 특별자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이토록 절박하게 특례를 요구하는지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은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당장 부처와의 협상테이블을 여는 것도 쉽지 않았다. 2023년 6월 11일 출범일에 타이머를 맞추고 있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일본일초가 아쉬운 상황이었다. 도 특별자치국에서는 가용한 모든 연결망을 동원해 끊임없이 관련 부처의 문을 두드렸다.

고맙게도 가장 먼저 협상테이블로 나온 곳은 산림청이었다. 2023년 2월 9일 강원도와 산림청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산림 분야 협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에 일명 ‘규제프리존법’ 개정을 논의하던 중 산악관광과 관련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했던 점도 있었고, 처음부터 각 기관의 입장을 잘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로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계속해서 강원도와 산림청은 서로의 의견과 대안을 주고받으며 법안을 다듬어 나갔다.

국방부와의 협의는 국회가 큰 역할을 해주었다. 가장 어려운 특례라고 생각했던 국방분야 입법과제들이 국방위원장(한기호)의 중재로 큰 틀에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와 접경지역 농·수·축산물 군급식 수의계약 특례를 국방부가 수용한 것은 놀라운 성과였다. 다만 수의계약 의무 조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환경부와의 협의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2023년 2월 28일 강원도는 입법과제 설명을 위해 환경부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이날 환경부에서는 의사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의 공무원이 나오지 않았고 실무 담당사무관들이 나왔다. 강원도는 입법과제를 한번 설명하고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 외 일부 부처는 협상을 위해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바쁘다는 곳부터 강원도와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 곳도 있었다.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은 곳도 있었다.

견고한 중앙부처의 벽에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은 2023년 3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직후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부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은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국무조정실-강원-부처’ 3자 간 협의로 지켜졌다.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주관하는 부처협의를 4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시작으로 4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동해 자유무역지역 특례를 수용한 것 이외에는 한걸음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처 협의의 분수령은 2023년 4월 18일이었다. 강원특별법의 핵심 4대 규제 해소의 두 가지 큰 축인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양은 그간 해당 부처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부처와 강원도는 서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대안들만 쏟아내고 있었다. 이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남형기)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국정운영실장이 주재하는 협의에서 드디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견고했던 빗장을 열었다.

한편 도 국회의원실도 끊임없이 지원사격을 해주었다. 각 국회의원실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일부 국회의원실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직접 부처 방문에 동행해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특구 특례 수용, 국토교통부의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 수용 등이 이어지며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었다.

부처 협의안 최종 확인은 특별자치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국회 논의를 위해서는 협의한 사항에 대해 강원도와 부처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5월 17일 17개 소관 부처(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체·농림·산업·환경·국토·해수·통일부, 보건처, 경찰·소방·산림청) 소관별 담당자가 참석하여 그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합의되었던 내용들이 일부 반복되는 일이 발생해 강원도와 일부 부처 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모든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부처협의를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등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일 외에도 수시로 이메일로 수정안과 대안을 주고 받았다. 특히, 농지, 환경, 국방 관련 특례는 주말도 없이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조항과 자구(字句)가 하나 수정될 때마다 유불리를 따져가며 검토보고서가 생산되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공무원들의 투지 때문이었다.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중앙부처 협의 사진 ■



산림청 설명회(2. 9. 서울산림조합중앙회)



국무조정실 주관 농림부 협의(4. 7. 세종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주관 환경부 협의(4. 7.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협의(4. 10. 세종정부청사)



산림청 협의(4. 10. 대전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주관 환경부 협의(4. 10.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주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부처 회의(5. 17. 세종정부청사)



법 개정 등 입법 기능은 오롯이 국회의 권능이니만큼 그 안에 원활한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실시간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더구나 특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국회 내부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이나 동향 등의 정보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도 출신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런 협력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강원특별법 개정 법안의 초안적인 입법과제 선정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도 출신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의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3년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 발의 전략과 의원실별 역할 등에 대하여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 설명회 이후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의 굳건한 공조 체계가 갖춰지고 특별법 개정이 난항에 부딪힌 위기의 순간마다 보좌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빛을 발했다.

■ (국회)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설명회 현장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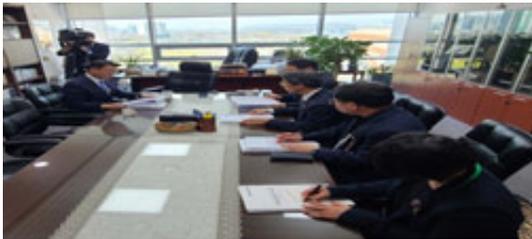


(일시) 2023. 1. 1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참석) 도 출신 국회의원실(지역구 7 + 비례 1) 보좌진 및 도 공무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조속한 국회 심사를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 25일까지 27회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장제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김교홍), 여야 간사(국민의힘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교홍)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과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하여 특별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특별법이 5월 국회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및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개최와 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 의결 등을 건의하였다. 그때마다 각 의원실 보좌관,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에게 보완 및 참고자료를 적기에 제공함과 동시에 입법과정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입법조사관 신홍철)은 대안 기초 자료 작성 검토와 법안심사까지 자문을 해주었고, 제정 때부터 1차 개정까지 담당이었던 김홍준 입법조사관도 어려울 때마다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이정미, 입법조사관 백상준)도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 아울러 강원도 서울본부(본부장 이명순)도 발 빠른 동향 제공과 국회 및 부처협의 동행은 큰 힘이 되었다.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협의 사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간사위원실 방문(3. 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면담(3. 2.)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실 방문(3. 24.)

■ 국회 협의 내역 ■

구분	일시	협의 내용
1	1. 3.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입법조사관 면담
2	1. 10.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설명회
3	1. 16.	허영 의원실 업무협의
4	1. 18.	강원특별법 관련 국회 업무협의
5	2. 14.	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의 국회 방문
6	2. 15.	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의 국회 방문
7	2. 24.	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의 국회 방문
8	3. 2.	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의 국회 방문
9	3. 13.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0	3. 15.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1	3. 17.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2	3. 21.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3	3. 22.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4	3. 24.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5	4. 3.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심사 대응 국회 방문
16	4. 6.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7	4. 14.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8	4. 17.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19	4. 24.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20	4. 26.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21	4. 28.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22	5. 1.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23	5. 3.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대안법안 작업
24	5. 4.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25	5. 9.	강원특별법 개정 업무협의 및 전문가 회의
26	5. 10.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공청회 및 업무협의
27	5. 16.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28	5. 18.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29	5. 19.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30	5. 22.	강원특별법 입법동향 파악 및 업무협의
31	5. 23.	강원특별법 입법동향 파악 및 업무협의
32	5. 24.	강원특별법 입법동향 파악 및 업무협의
33	5. 25.	강원특별법 입법동향 파악 및 업무협의

강원특별법 국회 심사 및 통과

3.5.1 국회 심사 과정

2023년 2월 6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다음날인 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법률의 전부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 당초 예상했던 4월 국회에 실시되지 않으면서 6월 이전 강원특별법 개정의 일정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공청회를 거친 후 진행되어야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첩첩산중이기에 하루속히 공청회를 넘어서는 것이 절실했다.

*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4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지원 국회포럼에서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 등 다수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한목소리로 국회 입법공청회 조속 개최를 촉구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치권의 동참은 결국 다음 달인 5월 10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입법공청회 개요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 5. 10.(수) 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445호)
- * 진술인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범수(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언론(연합뉴스) 보도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단계인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과 마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해 개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10일 강원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왼쪽)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진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5월 10일 오전 10:31에 개최된 입법공청회에서는 참석 위원들(8명 위원 참석)은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있고, 개발이 안 돼 인구감소 지역이 많고 지역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의 주문이 나왔다.

- 비전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의문이고, 특례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우려스러우며, 지역 특성에 맞게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를 풀어야 함
- 환경 보존과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있음
- 부처 협의가 안 되면 법안심사가 어려우므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하도록 부처협의 잘 진행해야 함

늦게나마 5월에 들어서 입법공청회를 거치면서 남은 20여 일 동안 나머지 입법심사 과정을 모두 거치고 5월 국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 의결이 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 11.)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목표는 달성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모든 걸 다 통과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이 역시도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5월 중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에 대한 의사를 진행하던 중 여야간 설전이 격양되어 그 이후로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도 중단되어 버린 것이다.

도내 정치권, 민간 단체 등은 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중단된 법안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도 서울본부 등과 합동으로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사일정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온 1,200여 명의 도민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국회 심사 및 통과를 염원했던 한 맺힌 외침도 큰 역할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5월 24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재개되면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①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②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대표 발의·한기호의원 대표 발의·조은희의원 대표 발의) ③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입법 등에 관한 청원(송기헌 의원 소개)을 병합심사하여 위의 법률안을 대안 반영 폐기하고, 당일인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상정·의결되었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특별법 전부개정안(대안)이 상정·의결되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으로 의결되었으며 같은 날 제 406회 임시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11번째로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특별법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석 국회 재석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되었다.

특히 본회의 투표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일부 의원들 간 고함의 오갔으며, 이에 따라 다시 시작된 투표에서는 당초(반대토론 前)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기권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2023. 5. 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공동명의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2일 안에, 법안에 대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이루어진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파격적인 결과이며, 보이지 않던 희망의 끈이었지만 불가능의 상황에서 결국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낸 것은, 뒤에서 다시 다뤄지겠지만 300만 내외 강원도민의 총력을 결집해서 만들어 낸 위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에서 요구한 주요 특례들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반대 등의 이유로 최종 반영되지 못하고 삭제되었는데, 다음 법안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 자치도의 입법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 미반영(삭제)된 주요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사업 반영 ② 글로벌교육도시 및 국제학교 설립 ③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④ 자치조직권(도, 도의회, 도교육청) ⑤ 외국인 무사증 확대 ⑥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 ⑦ 폐광지역 카지노 매출총량제 해제 및 영업 관련 권한이양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농지 특례는 특례 존속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법안심사 자료작성 시 강원도에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아닌 ‘재검토행 일몰제’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강원도가 요구하였던 국제교육특구 지정과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끝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 심사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있던 교육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유사한 쟁점이 있어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국제학교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소관 부처의 반대가 있는 등 쟁점화되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는 ‘국제학교 허가권을 강원도에 갖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특별법에서 교육특구가 빠지면서 선언적 조항조차 넣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쉬움과 유감을 나타냈다. 한덕수 총리는 “기업 한 두 개, 기관 한 두 개 지방으로 보내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근거에 교육이 있다는 건 국민적 컨센션스”라고 분다며 교육 규제에 대한 강한 유감을 보였다. 그리고 “방향성 있는 교육으로 가되 전체적인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그러려고 보니 너무나도 규제가 많으니 교육특구 같은 걸 만들어 지자체가 자유롭게 중앙정부와 협력해가며 하게 하자는 구상인데 왜 안된다는 것이냐”며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반대하는 분들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걸 하시지 않는 한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한편 강원특별법에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일반법령 개정을 이끌어 낸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당초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특례가 그것이었다. 강원도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서 당초 특례에는 현행 5개월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하였다. 다행히 정부(법무부)는 강원특별법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에 대하여 강원특별법에 반영하는 대신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는 2023년 6월 12일 현행 계절근로(E-8비자)자격의 5개월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최장 8개월*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고, 해당 개정안이 개정되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 전국 지방정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초 협의 시에는 최장 10개월 연장하는 안이었으나 의견수렴을 거쳐 8개월로 확정됨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 사진(2023. 5. 25.)



끊임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휴먼 및 시스템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록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약 2개월 전인 2023년 4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고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발목잡고 있던 4대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 전개, 국회 공청회 개최 촉구 성명서 발표, 건의문 전달은 물론 국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먼저,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023년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강원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는 범국민적 열망을 결집하였다.

또한, 2023년 4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공청회조차 개최되지 않는 등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2023년 4월 17일 국회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범국민 서명운동 및 성명 발표 ■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범국민 서명운동



강원특별법 공청회 촉구 성명 발표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 5월까지도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지연되자 2023년 5월 18일 범국민추진협의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들은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에게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과 범국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다시 한번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건의문 및 서명부 전달 ■



건의문 및 서명부 전달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자, 2023년 5월 22일에 강원도민회 중앙회,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강원도의회 등의 단체에서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진행 하였으며, 1,200여 명이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였다.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결의대회



범국민 결의대회



천막농성

그 결과 국회 앞 천막농성 4일 만인 2023년 5월 25일 마침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단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으며, 이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도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2023년 5월 25일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범국민 축하 행사를 하고 강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진정한 자치 분권, 지방자치 시대를 연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행사(2023. 5. 25.)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행사

강원
특별자치도

4.1

특별자치도
출범 홍보활동
전개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23년 6월 11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민 10명 중 7명이 “특별자치도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언론 보도 ■



장간 77주년 강원일보 여론조사 기사 (2022. 10. 23.)

또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2022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활동이 필요했다.

강원특별법이 선언적 성격이 강한 23개 조항에 불과하여 자칫 이름뿐인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6월 출범 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함에 따라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당위성 홍보와 긍정 여론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4.1.1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범국민적 아이디어 공유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주제로 2022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참여 자격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1등(비전상) 1명은 50만 원, 그 외 특별상 4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강원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받은 결과 총 59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비전 구상(안)의 분야·전략·주요 과제와의 연결성, 강원도만의 특수성 반영, 창의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부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1차로 선발된 9건의 아이디어를, 광화문 1번가(現 온국민소통 : 국민과 정부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2차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없어 1등 (비전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참여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여 최종 9건 모두 특별상으로 선정하는 등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과 긍정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아이디어 공모전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만들어주세요!

10. 18.(화) - 10. 31.(월) 2주간

▶ 참여대상 전 국민 누구나

▶ 공모접수 개인당 1건 제한만 인정

국민신청포털 www.gangwon.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유의사항 제안내용의 표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및 문의전화(033-249-4790) 이용

▶ 심사 및 시상

- ▶ 심사기준** 비전구상(안)에서 제시된 분야, 전략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개념 제시, 강원도만의 특수성 반영, 창의성
* 비전구상(안) 총제이지, 국민신청포털 확인
- ▶ 심사방법** 1차 심무 및 전문가 심사 2차 온라인 투표 심사
- ▶ 결과발표** 11월 중(도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통보)
- ▶ 시상내역** 비전상 1명/50만원 상당 강원상품권
특별상 4명/각 10만원 상당 강원상품권

* 비전상(의 경우 최종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으로 확정시 수여, 해당분야 시 특별상 5명만 수상, 혁신영향력대 시상금 조정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웹배너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대국민 아이디어 수상작

[특별상 수상 비전 아이디어]

- 첨단경제 환경과 국제관광 도시 조성
- 국제첨단경제도시
- 규제프리 첨단도시, 친환경 휴양도시, 지금부터 강원시대!
- 사람중심 경제핵심 관광중심 환경안심, 강원
- 자유경제 주도로 빛내는, 특별자치 강원미래 100년
- 세계를 잇는 자연 속 첨단도시
- 지속발전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
- 상생도, 미래성장도, 세계 중심 강원특별자치도
- 평화의 중심, 문화의 중심, 경제의 중심도시 강원!

도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를 더하고자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유관 기관의 소관 연결망을 협업을 통해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였다.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쇼핑과 관련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와의 협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도내 7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2023년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13개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는 2023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여 강원 농특산물 등 각종 상품 특별 할인행사와 점별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또한 기간 중 매장 내·외부에 출범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점 전단지·자체 애플리케이션 앱(app)을 활용해 홍보에 동참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농협 하나로마트 및 대형마트 행사 사진 ■



출범 기념 특별 할인행사 현수막



출범 축하 및 특별법 개정 응원 현수막



출범 기념 특별 할인행사 안내지



출범 축하 현수막

금융 생활과 관련하여 도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과 공동 기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우대금리 적금상품”을 2023년 5월 출시하였다. 또한 각 지점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현금 인출기 화면 내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문구 송출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우대금리 적금상품 ■

- NH강원특별자치도 특판적금(판매기간 5. 11. ~ 12. 29.)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가입기간,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전국민 대상 1인1계좌(개인 및 개인사업자) 개설 가능하며, 최고 연 4.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기본금리 3.0%(6개월~12개월 미만) ~ 3.1%(12개월)에 2개의 조건* 충족으로 1.0% 우대이자율을 제공한다.)
 - * 1) 출범일(6. 11.)까지 만기가 6개월인 적금을 가입한 고객에 한정(0.5%)
 - 2) 강원특별자치도 성공기원(0.5%)

- 신한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적금(판매기간 5. 2. ~ 12. 31.)
 - 6개월 가입기간, 1천원 이상 3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강원도민 대상 1인1계좌(개인 및 개인사업자) 개설 가능하며, 최고 연 4%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기본이자율 연 2.0%에 2개의 조건* 충족으로 2.0% 우대이자율을 제공한다.)
 - * 1) 이 예금 가입 직전 3개월 이내 신한은행 적금 미보유 고객(1.0%)
 - 2) 이 예금 가입 당시 강원도 거주 고객(1.0%)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업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2023년 5월 도내 고속도로(영동, 서울양양, 중앙, 동해)의 전광판 20개소에 홍보 문구를 송출하고, 나들목(IC) 현수막 게시대 33개소, 휴게소 18개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전부개정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였다.

■ 도내 고속도로 전광판 송출, 나들목 및 휴게소 현수막 게시 사진 ■



고속도로 전광판(VMS) 송출



나들목 게시대 현수막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청과의 협업으로 전국으로 배송되는 우체국 택배 포장용 테이프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 문구를 기재하여 도내 우체국에 비치하여 택배 발송자 및 수신자는 물론 물류센터 이동을 통한 노출로 전국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강원도 특별관을 운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상징물(캐릭터)인 “강원이-특별이”를 활용한 기념우표도 발행하였다.

■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청 홍보 협업 사진 ■



우체국 택배 포장용 테이프



우체국 택배 포장용 테이프 사용 예시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우표

민간기업에서도 강원도의 홍보 협조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라벨을 부착한 출범 기념 소주와 맥주를 각 300만 병 이상 출시하였고, '강원더몰  강원더비행' 입주업체들도 제품에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삼성디지털프라자와 LG 베스트샵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할인과 더불어 매장 내·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에 동참하였다. 또한 BGF리테일 CU 편의점과 GS 슈퍼 계산대 모니터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였다.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도내 택시 7,500여 대 내부에 강원특별자치도 안내 홍보물을 설치하였다.

▣ 도내 민간기업 홍보 협업 사진 ▣



출범 기념 소주·맥주 라벨



가전기업 출범 기념 할인 행사 이미지



택시 내부 특별자치도 안내 홍보물



CU편의점 계산대 모니터 송출 이미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4건), 카드 뉴스(16건), 리플릿(3개), 웹툰(1건), 핸드북(1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홍보영상은 총 4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필요성, 출범 응원 메시지, 출범에 따른 도민 기대, 강원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각 3분 내외로 제작되었다. 카드 뉴스는 총 16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특별법에 대해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리플렛은 총 4건이 제작되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전부개정 필요성, 특별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담아 제작하였다. 웹툰과 핸드북은 2024년 6월 법 시행 전 강원특별법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

홍보 콘텐츠 제작 사진



홍보 영상 제작

카드 뉴스 제작



리플렛 제작

공감있지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보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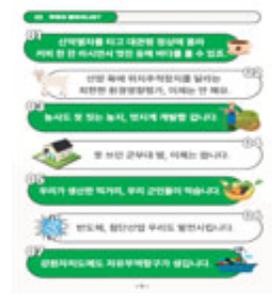
부록



웹툰 제작



핸드북 제작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카드뉴스 제작 내역 ■

내 용	게 재 일
①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2022. 8. 16.
② 왜 특별자치도 여야만 할까요?	2022. 9. 1.
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022. 9. 30.
④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2. 10. 24.
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2022. 12. 23.
⑥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범추협 활동 계획	2023. 1. 13.
⑦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범추협 홍보 협조	2023. 1. 17.
⑧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2023. 2. 6.
⑨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지 요청	2023. 2. 24.
⑩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4대 규제	2023. 3. 17.
⑪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산림 분야	2023. 3. 24.
⑫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군사 분야	2023. 3. 31.
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농업 분야	2023. 4. 10.
⑭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환경 분야	2023. 4. 20.
⑮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지지 요청	2023. 5. 2.
⑯ 강원특별법 과제 제안 온라인 창구개설	2023. 5. 25.

①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2022. 8. 16.)

<p>1</p> <p>‘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p>	<p>2</p> <p>말 그대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거죠</p>
<p>3</p> <p>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미 16년 전에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살펴볼까요?</p>	<p>4</p> <p>인구가 증가되었어요</p> <p>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제주도내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기 때문이죠!</p>

5

기업이 찾아오니 다양한 일자리도 늘었겠죠?



6

지역내 총생산도 이렇게나 증가되었어요!



7

관광분야 3개 법률의 권한이 제주도에 넘어오고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며 관광객도 증가되었죠!



8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할 수 있어요!



9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더 이상
떠나지 않게끔 말이죠**

10

**단,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편은 강원특별법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② 왜 특별자치도 여야만 할까요?(2022. 9. 1.)

1	2
<p>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p> 	<p>왜 특별자치도 여야만 할까요??</p> 

3	4
<p>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담은 법 제1조</p> <p>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고도의 자치권?? 실질적인 지방분권???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p> 

<p>5</p> <p>각종 산업 발달이나 지역 인프라 개선에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법적·행정적 규제</p> 	<p>6</p> <p>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강원도의 2중 3중 규제들 ※ 4대 핵심 토지구제(산림, 환경, 군사, 농업) 21,890km² 경기도 면적의 2.2배</p> 
---	---

<p>7</p> <p>이렇게 규제의 매듭에 공공 묵인 강원도는 발전할 기회를 잃어 버렸죠....</p> 	<p>8</p> <p>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강원도의 운명을 더 이상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바로 특별자치도!!</p> 
--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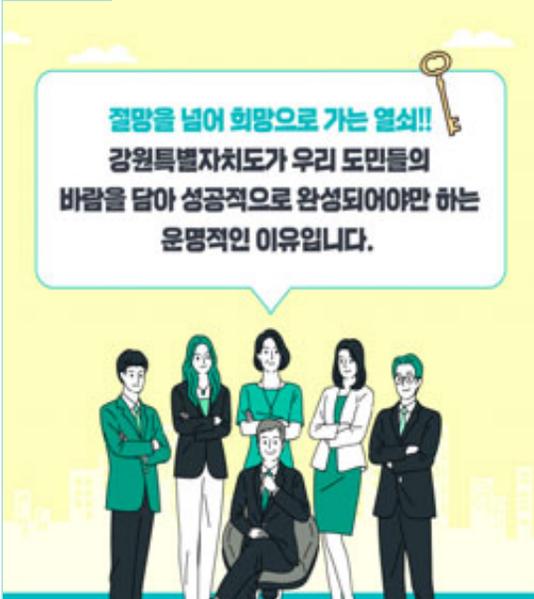
역사적으로 소외받을 수 밖에 없었던
지역의 특수성을
이제는 많은 특례를 법에 담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10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들이
금방 잘 살게 되는 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11



결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는 열쇠!!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 도민들의
바람을 담아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야만 하는
운명적인 이유입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2022. 9. 30.)



5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소관 중앙부처의 동이가
필요한데...



6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 및 시군 공무원들이
하나의 법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된 정부부처들을 각각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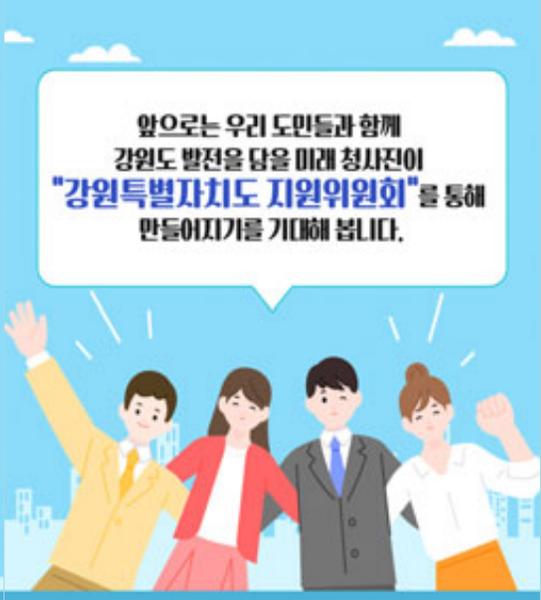
이때,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만들면
강원도와 중앙정부와의
단일화된 창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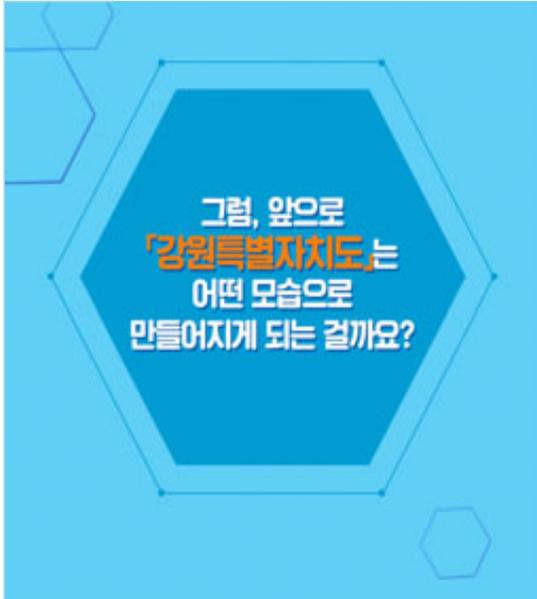
지원위원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일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심의, 지원 처리하게 되니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증가하겠죠?





④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 10. 24.)

1	2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나가게 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p> <p style="text-align: center;">약칭 '강원특별법'</p>	 <p style="text-align: center;">지난번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①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② 왜 특별자치도 여야만 할까요? 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p>

3	4
 <p style="text-align: center;">그럼,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 강원도의 특징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p>

5

이러한 개념들을 함축하여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은 특별법에 뚜렷하게 규정되어야만 하죠!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6

'비전'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각종 특례들을 법 내용에 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이기도 하답니다!



7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의 모습이 될 비전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8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상상과 바람을 듣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10.18.(화) ~ 10.31.(월) 2주간

공모주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만들어주세요!

참가대상 자격제한 없음

참여방법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지원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 도청소재지 > 공공(2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제안 > 공모제안



우리 손으로 그려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미래!!
도민 여러분들의 강원도만의 특징을 담은
참신한 **'비전'**을 기다립니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2022. 12. 23.)



5

“ 내년 출범 전까지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켜야 하고,
 출범 이후에도 2차, 3차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



6

“ 이를 위해
 왜 강원도특별자치도가 필요한지,
 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절실한지,
 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국가적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



7

“ 강원특별자치도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지난 **12월 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합니다. ”



8

“ 정치, 경제, 행정, 언론, 학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정당, 지역, 성별, 나이 상관없이
 오직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⑥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범추협 활동 계획(2023. 1. 13.)

1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해
토끼처럼 힘차게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활동계획

- 협의회 사무국 운영**
 - 홍보 콘텐츠 공유
 - 회의, 간담회의 개최 지원
- 홍보행사 주최 및 후원**
 - 세미나 포럼 등 개최
 - 행사 후원 및 참여 홍보
- 분야별 소모임 개최**
 - 위원간 네트워킹 강화
-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 지원**
 - 개정동향 상시 모니터링
- 도·유관기관·협의회 소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간 공동행사 개최
 - 협의회 위원 소속 단체 별 홍보추진

3

협조사항

**「강원특별법, 개정(안) 도민설명회에
많은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3개 조항뿐인 현재의 강원특별법이
도민들이 열망하는 다양한 특례들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행사명**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 설명회
- 일시** 1.17.(화) 14:00 ~ 16:00
- 장소**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 주요내용** 「강원특별법, 개정 특례 입법과제 설명 및 의견수렴

4

협조사항

범추협 첫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범추협이 처음으로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밖으로 나섭니다.
겨울축제 명소인 홍천에서 열리는 **“제11회 홍천강 꿀꿀축제”**에
협의회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1. 13.(금) ~ 1. 24.(토)

장소
개막식장 내강원특별자치도 홍보부스

활동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홍보활동

참석대상
협의회장 등 범추협 위원

⑦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범추협 홍보 협조(2023. 1. 17.)

<p>1</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10px;"> <h2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130여일이 남았습니다.</h2> <p style="text-align: center;">지난 1.17. 열린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통해 181개의 특례안을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도민에게 설명하였습니다.</p> </div>	<p>2</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2월중에는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우리 범국민추진협의회가 뛰어야 할 때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p> </div>
<p>3</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10px;"> <h3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가는 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background-color: #e0f0e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2022년 6월 「강원특별법」 23개 조항 통과 <li style="background-color: #e0f0e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2023년 1월 중 특례법안에 대한 도민공청회, 국회의원 협의 추진 <li style="background-color: #e0f0e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2023년 2월 중 개정안 발의 <li style="background-color: #e0f0e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2023년 4월 국회 통과 목표 </div>	<p>4</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10px;"> <h3 style="text-align: center;">협조요청사항</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신문, 방송 등 언론 인터뷰, 기고를 통한 특별자치도 이슈화 02. 카드뉴스, 동영상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 공유를 통한 확산 03. 소속 단체 구성원 대상 특별자치도 홍보 04. 소속 단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 자체 홍보 수단 활용 특별자치도 홍보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 요청드립니다!</p> </div>

⑧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2023. 2. 6.)

1	2
<p>풍부한 자연환경이 최고의 자산이자 경쟁력인 강원도</p> <p>하지만 중첩규제에 묶여 대한민국을 위해 목목히 희생해 왔습니다.</p> <p>4대 핵심 토지규제 21,890m²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0%</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도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농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산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환경</div> </div> <p>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p> <p>↓</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도민 삶의 질 저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지역성장 둔화</div> </div>	<p>2023년 6월, 강원도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p> <p>각종 규제로 개발에 소외됐던 변방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혁신과 발전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p>

3	4
<p><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p> <p>2022년 23개 조항으로 시작한 강원특별법이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특례를 담아 2023년 2월 6일 발의되었습니다.</p> <hr/> <p>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p> <p>우리 스스로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과 권한을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p> 	<p>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p> <p>도민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드립니다.</p> <p>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자유와 번영의 땅으로 거듭나겠습니다.</p>

⑨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지 요청(2023. 2. 24.)

<p>1</p> <h2>미래산업 글로벌도시</h2> <p>지난 2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p>  <p>*여야의원 86명 공동발의</p>	<p>2</p> <h2>강원도민이 희망하는 특례 102개를 반영하였습니다.</h2>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육성 등
<p>3</p> <p>강원특별법 개정안을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함에 따라 강원특별법의 4월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p> <p>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지를 요청드립니다!</p> 	<p>4</p> <h2>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h2>  <p>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필수요소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⑩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4대 규제(2023. 3. 17.)

1

지난 2월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정부에 보낸 지 41년만입니다. 그동안 8번의 삭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의 끈질긴 투쟁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2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분야 **4대 핵심 규제** 중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역의 현안사업 때마다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2월 발의 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을 통해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맞춤형사업 추진이 가능해 집니다.

3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합의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강원특별법의 4월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4



강원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출범 전 통과시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⑪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산림 분야(2023. 3. 24.)

<p>1</p> <h2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상정</h2>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법 개정안이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4월 국회 통과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p>	<p>2</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의 해소입니다. 특히 산림분야의 과도한 규제 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21%</p> <p>(한국 산림면적) 강원도 산림은 전국 산림면적의 21% 도 전체면적의 81% 차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81%</p> <p>(도 전체면적)</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도 전체면적의 90%가 산림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따른 자산가치 손실액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강원연구원 -</p>
<p>3</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산지관리 권한이양을 통해 여가, 레저, 산림복지 등 녹색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대관령 산악열차를 타고, 전망대에서 풍경을 관람하고, 글램핑장에서 바비큐를 즐기는 등 대관령 산악관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p>	<p>4</p> <p style="text-align: center;">“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p>

⑫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군사 분야(2023. 3. 31.)

1	2
---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3월 30일 강원도청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강원도의 정부부처 협조 요청에 대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

라고 답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의 해소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군사규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가 컸습니다

가장 길고 넓은 비무장지대에 접하는
세계유일의 분단 광역자치단체

* DMZ 전체길이의 58.5%, 전체 면적의 58.3%가 강원도에 접함

군사 규제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해소하여
접경지역 발전의 성장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3	4
---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 농·축·수산물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및 수익계약 특례

가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받은 사유권 침해를
회복하고 각종 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 PASS ★

출범 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강원도 경제를 괴롭혔던 각종 규제의 역파를 통해
기업이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p>1</p> <p>“ 전향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 ”</p> <p>[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p> <p>3.30</p> <p>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정부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p>	<p>2</p> <p>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조기 통과에 달려 있습니다.</p> <p>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의 해소입니다.</p> <p>[도내 농업 관련 규제 면적 약 440.4㎢ 손실 추정액은 약 1조 5천 억원]</p> <p>농촌환경 정비 등 공간구조 변화의 필요성</p> <p>농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복합적인 토지이용 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농지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구역 지정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p>
<p>3</p> <p>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으로</p> <p>✓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권한 이양</p> <p>✓ 농지전용허가 협의 권한 이양</p> <p>농지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농산업 구조 변화 수용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정을 이루겠습니다.</p>	<p>4</p> <p>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조기에 통과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농업 정책과 개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p>

⑭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환경 분야(2023. 4. 20.)

1

자유(=권한이양)를 달라! 아니면, 소멸이다!

- 300만 강원도민 -

강원특별법 개정지원 전문가 포럼이 **4.10(월)**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지도부가 참석하여 지난 2월 발의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일제히 약속했습니다.

2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규제의 해소입니다.

강원도 4대 핵심규제 면적은 총 21,890.7㎢ 강원도 총면적(16,825㎢)의 1.34배에 달함
이중 규제 이상의 중복규제 면적도 총 8,226.7㎢로 강원도 전체면적의 48.9%

특히 환경분야의 환경영향평가는
도내 모든 지역의 현안 사업때마다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3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Check Point

- ✓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3만㎡이하) 권한 이양

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은 보전 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법사위, 본회의 등 많은 산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행안위 공청회가 조기 개최 되어야만
강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가능해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민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⑮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지지 요청(2023. 5. 2.)

1

5월 중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법 제정

22.6.10. 공포 / 23.6.11. 시행 / 23개 조문

1차 개정

22.10.18. 공포 / 지원위원회 2개 조문 신설

2차 개정안 발의

23.2.6. 발의 / 4대 규제혁신 등 137개 조문

2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빈 껍데기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5월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 강원특별법 통과까지 가는 길 -

행안위

법안 1소위 공청회

1단계

행안위

법안 1소위 법안심사

2단계

행안위

행안위 전체회의

3단계

법사위 / 본회의 의결

법사위, 본회의 통과

4단계

4

단 한번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각 단계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강원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관부처와 사전에 세부 특례법에 대한 합의 조정안 마련
- 도 출신 국회의원과외의 유기적 입법 공조체계 구축
- 도 내외 유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홍보 촉구
법국민 서명운동

포털사이트 검색 : 강원특별자치도 온라인 서명

⑩ 강원특별법 과제 제안 온라인 창구개설(2023. 5. 25.)

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과제 제안
온라인 창구 개설**

도민의 제안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듭니다!

2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과는 달리 우리도민이 스스로 기획한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출범 이후에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누구나 쉽게 강원특별법 과제를 제안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3

나의 아이디어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방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강원특특" 검색

1. 제안등록	항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이 통과되면 게재됩니다
2. 제안토론	제안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도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3. 부서답변	공감에 50개 이상일 때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답변합니다
4. 정책반영	채택된 제안으로 정책 진행 시 추진계획과 성과를 공개합니다.

4

우리 강원도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1인당
100% 혜택입니다!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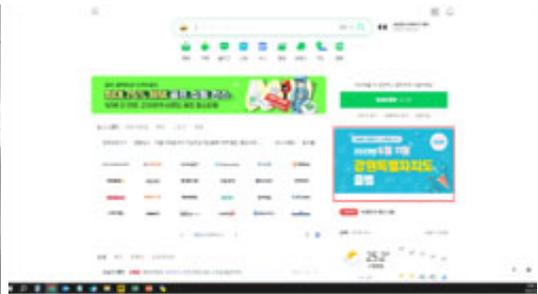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파급력 있는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였다.

KTX, ITX 등 열차 객실 모니터, 포털사이트 배너(막대광고), 옥외 전광판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알리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 인터뷰, 광고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유하여 긍정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였다.

■ 각종 매체 활용 광고 사진 ■



열차 객실모니터 광고



포털사이트(네이버) 배너(막대광고)

4.2

정보시스템 (국가, 지방) 데이터 전환 및 정비

2023년 6월 11일부터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 및 지방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전환하여야만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일에 맞추어 적기에 성공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여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강원도 간 공동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통합모델을 마련하며, 관련 분야 시스템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전환·정비로 차질 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사업개요]

(변경내용)

① 명칭(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및 ② 행정표준코드* 변경

* 주소(법정동, 행정동) 코드, 기관 코드, 도로명주소 코드 신규 부여적용

(정비대상)

국가보급 280종(공부 72종 포함), 도·시·군 자체구축 513종

구분	국가보급시스템		자체구축시스템
	공통표준형*	중앙집중형**	
현황	34종 (행안부 28, 국토부 6)	246종 (62개 기관)	513종 (도 56, 시·군 457)
관리주체	강원도 (전국공통)	소관부처	강원도 (시·군)
사업범위	자료변환 P/G개발 데이터변환 및 검증 모의훈련, 운영장비 점검 등	데이터 변환	홈페이지 수정 데이터 변환
특징	지방사무/전국 상호연계운영	국가사무/개별운영	기관별 운영

* 국가가 보급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 국가가 구축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국가보급 공통 표준시스템은 시스템 간 연계 구조가 복잡하고 통합 DB로 관리하여 단계별 작업을 위해 총괄 추진체계가 필요했다. 따라서 개별 변환 작업이 어려워 업무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동시 변환을 추진하여야 했다. 연계시스템의 오류를 방지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작업하기 위해 전문 기관의 기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4.2.1 중앙부처 협의 과정

행정안전부에 주소(법정동·행정동) 코드, 기관 대표 코드, 코드 범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법정동 코드 번호를 요청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정비 시 반영할 계획이었다.

2023년 2월에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주민과), 관계기관 담당자, 강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개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정보화사업 관계기관 회의

- 일시·장소 : 2023. 2. 14.(화) 15:0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참석대상 :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담당자, 강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회의내용 : 관계기관 보유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및 필요사항 등 논의

이를 통하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정비 사항(정비시스템 항목, 표준시스템별 자료 변환 건수, 운영 현황, 소요 기간 등) 및 개편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국가보급 중앙시스템 자료 변환 안내 및 협조문서를 62개 관계 기관에 발송하였다.

국가보급시스템 중 국토교통부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중단없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국토교통부 운영 시스템 협의

- 일시·장소 : 2023. 2. 21.(화) 14:00 ~ 16:00, 국토교통부
- 방문부서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관련시스템 : 국토부 운영 국가보급 표준교통시스템(6종)*
*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가공간 정보통합플랫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또한,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관할 관서 기준으로 등록 출범에 따라 신규 관서로 자료 변환·이관 작업이 필요하기에 법원행정처 정보시스템운영과를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비, 자료 연계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관련 대법원 협의

- 일시·장소 : 2023. 2. 28.(화) 13:30 ~,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 참석대상 : 가족관계등록부 관계자, 시스템 운영 사업단, 강원도
- 협의내용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비 시 역할, 자료 연계 여부, 문제점 등



아울러, 타 부처 관계기관과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비 방법 및 추진 일정 자료 연계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시스템 정비 협의

- 일시·장소 : 2023. 3. 16.(목) 14:00 ~ 15:00,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참석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직자 부패관리시스템 담당자
- 협의 내용 : 타 부처 시스템과 자료 연계 여부, 정비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4.2.2 시·군 및 유관기관, 민간분야 추진 과정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종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을 2023년 1월에 수립하였으며, 국가보급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에서 구축한 자체시스템(홈페이지, 업무용시스템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해서 「각종 공부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비 추진계획」을 도 실과 및 시·군에 알렸으며, 정비개요 소개 및 정비요령 등을 주제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하였다.

정보시스템 정비 추진 도·시·군 실무협의회

- 일시·장소 : 2023. 3. 15.(화) 14:00 ~, 농업기술원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시·군 특별자치도 담당자, 정보시스템 담당자
- 회의내용 : 정보시스템 정비 개요 소개, 정비요령 및 유의사항 등



개회 / 추진상황



정비대상 및 방법 안내



자체 시스템 운영현황 공유

또한, 주요 민원 행정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비 시·군(읍면동) 담당자 역할에 대한 교육 추진으로 도민 혼란을 없애고, 중단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 시·군 담당자 교육을 두 개 권역(내륙권, 동해안권)으로 실시하였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비 관련 시·군 담당자 교육

- 일시·장소 : 2023. 3. 22.(수) ~ 3. 23.(목) / 춘천, 강릉
- 참석대상 : 시·군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자(춘천권 107명, 강릉권 116명)
- 회의내용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비 추진 일정, 변환작업 매뉴얼 안내 등



개회 / 추진상황



정비방법 안내



협조사항

특히,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외에 놓칠 수 있는 도내 유관기관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주요 정비사항을 논의하고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꼼꼼하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해 나갔다.

기관 명칭 변경 관련 유관기관 회의

- 일시·장소 : 2023. 3. 20.(월) 15:00 ~ 16:00 , 강원도 농업기술원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의회,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기타 산하기관
- 회의내용 :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필요 사항 논의 등



개회



정비대상 및 방법 안내



협조사항

아울러, 민간 주요 분야(10개)* IT 서비스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하여 행정 데이터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범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변경 사항 등을 민간기업에 안내 및 홍보하였다.

* 방송사, 금융권, 마트, 쇼핑몰, 택배, 배달, 숙박, 포털, 내비게이션·지도, 모빌리티 등

최종 정보시스템 변환 작업 전에 시·군 담당 팀장 '23. 6. 2. 회의를 통해 데이터 전환 시 서비스 일시 중단 사전 홍보 및 분야별 시스템 전환 작업 처리사항 이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각종 공부와 정보시스템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정비가 되어 대민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을 없애야 하고, 단기간에 모든 정보시스템의 변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지원 기관인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강원도 포함 18개 시·군의 각종 정보시스템 정비 및 자료 변환 업무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제 정보 시스템 데이터 전환에 소요 된 비용은 12억 6천9백만 원이었다.

정보시스템 정비 업무협약 체결

- 일시·장소 : 2023. 3. 6.(월) 11:0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참석대상 : 국가보급 공통 표준시스템 28종*
 - * 주민등록,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보조금, 시도·시군행정, 인사정보 등
- 사업내용 : 행정표준코드 데이터 전환 및 분야별 기술 지원
- 사업규모 : 120,000여 개 테이블, 최소 200억 개 데이터 전환

강원도-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협약식(2023. 3. 6.)



(정비방법)

업무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변환 동시 작업

※ 자료 변환 실행 : 2023. 6. 9.(금) 18:00 ~ 6. 11.(일) 24:00



(추진체계)



국가보급 정보시스템(공통 표준형) 정비를 위한 도·시·군 시스템별 업무 담당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 일정 및 처리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국가보급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도·시·군 업무 담당자 및 사업단 회의

- 일시·장소 : 2023. 4. 27.(목) ~ 4. 28.(금), 도 전산교육장
- 참석대상 : 도·시·군 9개* 시스템별 업무담당자
 - * 주민등록, 주소정보관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보조금, 지방인사, 지방행정 공통(시도행정, 새울, 온나라)
- 주요내용 : 정비 방법, 추진 일정 및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협의 등



지방행정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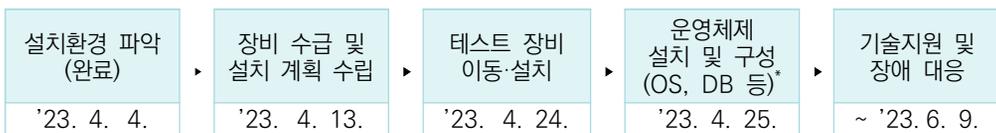
지방재정



인사행정

또한, 국가보급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자료 전환 및 최적화 작업을 위해 춘천시 및 원주시에 모의 전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모의 전환을 추진하여 공통 기반 유사 환경 구축, 업무별 전환 소요 시간 및 부하량 측정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시험환경 구축·지원 일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모의훈련 진행 전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진행 사항 공유, 모의훈련 일정 및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도·시·군 부단체장 대상으로 추진 현황 보고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정보시스템 전환 준비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모의훈련 방안회의



부단체장 보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강원도는 실무회의(2023. 5. 26. / 서울)를 통해 1차 모의 훈련(2023. 5. 19. ~ 5. 25.) 결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2차 모의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1차 모의훈련



1차 모의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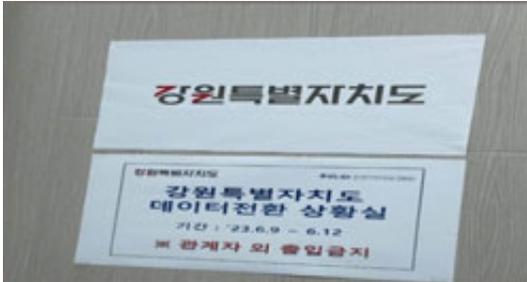
국가보급(공통표준형) 정보시스템 자료 전환에 따라 전환 소요 시간 파악 및 발생 가능한 오류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종 전환 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2차 모의훈련 실시

- 일시·장소 : 2023. 6. 1.(목) ~ 6. 2.(금)
- 참석대상 : 강원도 및 18개 시·군(정보화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단
- 훈련내용 : 9개 시스템
 - (공통기반) 시도새울, 지방세, 세외수입, 주소정보
 - (중앙) 주민등록, 지방인사, 지방재정(보조금 포함), 건축행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모의훈련 1, 2차 결과를 반영하여 전환 시나리오를 최종 확정하였다. 정보시스템 자료 변환 작업에 따른 민원서비스 중단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자료 변환 작업을 2023년 6월 9일 금요일 18시부터 6월 11일 일요일 24시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행하였는데, 다수의 참여자가 자료 전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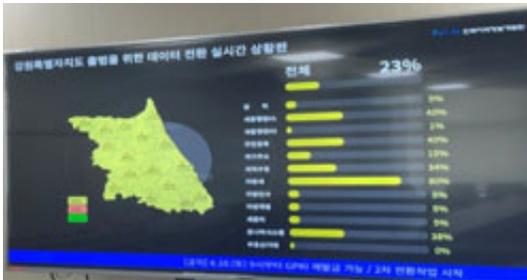
대하여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상황실(온라인 상황판 포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통합상황실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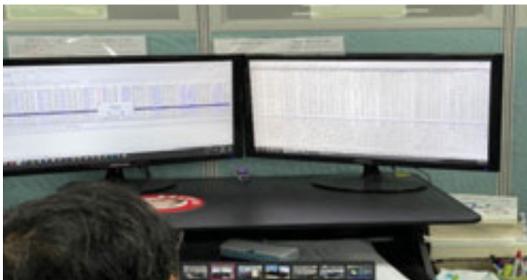
통합상황실 모습



온라인 상황판 운영



진행상황 표시



실 데이터 전환과정



실 데이터 전환과정

또한, 강원도에서도 자료 변환 작업(2023. 6. 9.금 18:00 ~ 6. 11.일 24:00)기간 동안 시군별·시스템별 작업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을 위한 온라인 상황판을 운영하였다. 도·시·군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업무 담당자 간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작업 상황 전파 및 데이터 검증, 서비스 이상 유무, 비상 상황을 대비하였다.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및 정비사업 성과는 우선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자료 전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반복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전환 시 오류 발생 건이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중단 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강원도 공무원 및 각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동반되었기에 성공적인 데이터 전환을 완수할 수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해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전환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제시될 것이다.

■ 국가, 지방 정보시스템 목록 ■

1. 국가보급 공통 표준시스템 (34종)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28, 국토교통부 6
시스템명	시도행정, 시군새울, 표준지방인사, 주민등록, 지방재정, 보조금정보, 표준지방세, 세외 수입정보, 위택스, 국가주소, 국가재난관리, 청백e, 온나라, 자치단체기능분류, 우편모아, 1365자원봉사, 고향사랑기부제, 공공자원관리, 지방행정인허가, 재해복구, 행정공간정보, 통합정보자원, 정부디렉토리, 행정전자서명, 지방교부세, 건축행정,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 거래관리, 한국토지정보, 국가공간정보, 도시계획정보 등

2. 국가보급 중앙 집중형 시스템 (246종)

관련부처	대법원,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소방청 등 62개 기관
시스템명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센터, 온비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평생학습계좌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나라장터, 신여권통합정보관리, 외국인등록정보, 공공아이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공직자재산등록,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정부24, 사이버교육운영, 상훈포털,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 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주민서비스포털,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공공소음정보, 국가대기오염관리 등

3. 도·시·군 자체 시스템 (368종)

시·군명	예시) 원주시 17종
시스템명	원주시 홈페이지, 원주시청도로조명관리, 대형폐기물 배출 예약,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세외 수입납부편의,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납, 가상계좌 납부, 개인정보암호화, ARS 간편납부, 무인수납기, 자동압류해제, 지방세·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농수산물 유통 거래정보, 도서관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원주통계정보 등

■ 국가보급 공통 표준시스템 ■

연번	부처	시스템명
합계	2	34종
1	행정 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2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3		세외수입정보시스템
4		지방재정정보시스템
5		지방보조금시스템
6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시도행정)
7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서울)
8		표준지방인사시스템
9		위택스 시스템
10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11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12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시스템
13		자치단체 상시모니터링(청백e) 시스템
14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15		온-나라 시스템
16		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L-BRM) 시스템
17		우편모아시스템
18		1365자원봉사 기부통합 관리시스템
19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20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21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
22		행정공간정보(위생, 환경, 종합관찰제)
23		원서접수시스템
24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25		정부디렉토리시스템
26		행정표준코드
27		행정전자서명
28		지방교부세시스템
29	국토 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3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3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32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33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34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공공임업은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도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 국가보급 중앙 집중형 시스템 ■

연번	소관부처	시스템명	
1	감사원	행정지원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
2		행정지원실	자체감사용 e-감사시스템
3	교육부	교육정책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4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계좌제
5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6	외교부	여권과(여권정보팀)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7	통일부	정책지원과	새터민거주지 온라인정책지원시스템
8	법무부	이민정보과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
9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1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공공아이핀
11		윤리담당관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12		윤리담당관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13		국가기반보호과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
14		생활안전과	국가승강기정보센터
15		기록정보화과	기록관리시스템
1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고장알리미
17		민원제도과	민원24
18		정보자원정책과	법정부EA포털
19		교육총괄과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
20		상훈담당관	상훈포털시스템
21		생활안전과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
22		주소정책과	새주소안내시스템
23		국가기반보호과	안전모니터봉사단
24		자원관리과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시스템
25		생활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26		운영총괄과	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27		지방세분석과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28		공공정보정책과	정보공개시스템
29		전자정부지원과	정보화사업사전협의시스템
3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문서접수센터
31		선거의뢰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32		민간협력과	자원봉사정보시스템
33	정보자원정책과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연번	소관부처	시스템명		
34	행정안전부	협업행정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35		협업행정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36		주민과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37		주민과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RIUS)	
38		민간협력과	주민서비스포털(Oklife)	
39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40		재정정책과	지방채관리시스템	
4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기능분류모델(BRM)시스템	
42		지역경제과	한국도시연감시스템	
43		정보자원기반과	행정전자서명인증(GPKI)시스템	
44		기획총괄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45		기반구축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46		정보자원정책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47		전자정부지원과	e-지키미	
4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지식정보시스템
49			정책포털과	공직자통합메일
50			문화여가정책과	문화바우처관리시스템
51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선수등록시스템	
52	체육정책과		스포츠바우처	
53	관광정책과		여행바우처관리시스템	
54	도서관진흥과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KOLASYS)	
55	미디어정책과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56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57		정보화담당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58		정보화담당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59		방역총괄과	쇠고기이력제	
6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통합농업교육시스템(AgriEDU)	
61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산업과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	
62		광업등록사업소 등록팀	광업권통합관리시스템	
63		기업협력과	기업민원G4B	
64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	
65		지역경제총괄과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REDIS)	
66		산업인력과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관리시스템	
67		투자정책관	투자프로젝트관리시스템	

특별자치도 전용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 선도
시로

출범 및 시스템
정비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
의

부
록

연번	소관부처		시스템명
68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지원팀	COMIS(지방투자지원시스템)
69	고용노동부	기획총괄과	고용안정정보망
70		산재예방지도과	공공근로 관리 시스템
71		노동시장정책과	일모아시스템
72	보건복지부	직업능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73		기획총괄과	취업알선시스템(워크넷)
74		보육정책과	e-보육시스템
75		보험평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6		정보화담당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77		공공보건정책관	공공보건정보시스템
78		기초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79		아동권리과	e-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80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129)
81		건강증진과	보건소금연사업정보시스템
8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운영부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83		보육정책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84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85		정보화담당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86		복지정보과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87		노인지원과	새누리시스템
88		노인지원과	e하늘 장사정보
89		사회서비스정책과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90		사회서비스정책과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91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92	생활환경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93	온실가스관리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94	기후대기정책관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95	기후정책지원팀		공공기관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
96	대기관리과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 SYS)
97	기후대기정책관		배출허용총량관제·관리시스템
98	수질관리과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제시스템
99	수질관리과		수질통합관리시스템
100	온실가스관리팀		탄소포인트시스템

연번	소관부처	시스템명		
10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102		화학물질과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	
103		국토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04		기획조정처	환경정보공개시스템	
105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106		건설경제과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CIS)	
107		기술정책과	건설CALS포털시스템	
108		기술정책과	골재채취업관리시스템	
109		공간정보기획과	공동구유지관리통합시스템	
110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센터	
111		운영지원과	국유재산관리시스템	
112		국가공간정보센터	국토정보시스템	
113		도시정책과	기반시설부담금시스템	
114		도로운영과	도로시설물관리	
115		도로운영과	도로안내표지판정보시스템	
116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117		지적기획과	부동산정보관리센터	
118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정보망	
119		건설안전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120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121		산업입지정책과	인허가모니터링시스템	
122		대중교통과	운수행정시스템(ITAS)	
123		자동차정책과	이륜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124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프로그램	
125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126		자동차정책과	자동차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	
127		건설안전과	재난영상전송시스템(U-Safety)	
128		지적기획과	지적정보센터	
129		공간정보기획과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130		도시정책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131		신교통개발과	환승교통종합정보 제공시스템 (TAGO)	
132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33		법제처	법제정보과	국가법령정보센터
134			법제정보과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공공임업은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보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록

연번	소관부처		시스템명
135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통계담당관	마약류유통관리시스템
136		정보화통계담당관	방사선안전관리협업시스템
137		정보화통계담당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8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홈택스
139		정보개발2담당관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140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141		정보관리과	나라장터
142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경제총조사
143		산업동향과	광업·제조업 통계시스템
144		산업동향과	사업체기초통계시스템
145		산업동향과	사업체통계통합관리시스템
146		출생혼인이혼	인구동태신고시스템
147		출생혼인이혼	인구동태입력시스템
148		통계정책과	통계정책관리시스템
149		병무청	정보관리과
150	정보관리과		복무관리포털
151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152		정보화협력계	신원조회정보시스템
153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154		정보화담당관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155		정보화담당관실	국가재난정보센터
156		방호조사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157		정보화담당관실	상황전파시스템
158		119구급과	소방긴급구조 활동정보시스템
159		정보화담당관실	재난관리정보 DB센터
160		정보화담당관 실	재난영상정보통합시스템
161		정보화담당관실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162		안전제도과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
163	지진방재과	지진재해대응시스템	
164	재해영향분석과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165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166		정보화담당관	문화재지리정보(GIS)통합시스템
167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168		농촌자원과	농산물소득분석프로그램

연번	소관부처	시스템명		
169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농업경영정보시스템	
170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관리과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도람)	
171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가로수관리시스템	
172		산림생물조사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173		정보통계담당관	산림기본통계시스템	
174		산림경영과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	
175		산림경제경영정보과	산림지리정보종합관리프로그램	
176		산불방지과	산불정보시스템	
177		산사태방지과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178		산지관리과	산지관리정보시스템	
179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원·생태숲 네트워크	
180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조사시스템	
181		산림경영과	조림, 숲가꾸기이력관리시스템	
182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리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183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중소기업종합정보서비스(Bizinfo)
184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185	대법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	
186		대법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87		대법원	제적정보시스템	
18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국민신문고	
189		국민신문고과	공직자부패관리시스템(제로미)	
19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시스템	
192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감염병웹보고	
193		감염병관리과	입국자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	
194		만성질환관리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지원시스템	
195		에이즈·결핵관리과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KTBS)	
196		생물테러대응과	생물테러대응종합정보망	
197		예방접종관리과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198		감염병감시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199		총무과(정보화TF)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00		건강영양조사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시스템	
201		심혈관·희귀질환과	희귀난치정보망통합관리시스템	

공공임업은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로 시로

출범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연번	소관부처		시스템명
202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	HASNet (HIV/AIDS Supporting Network System)
203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가축전염병대응시스템
204		질병관리과	디지털가축방역정보시스템
205		기획조정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206		위기대응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7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사회보험(EDI)시스템
208		징수상임이사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209	국민연금공단	정보시스템실	통합정보시스템(마이오피스)
210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운용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시스템
211	근로복지공단	정보화본부 노동보험운영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212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사업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시스템
213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처	석면관리종합정보망
214		석면피해구제팀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
215		자동차환경처 (자동차환경정책팀)	자동차배출가스관리종합전산시스템
216		제도운영처(ECOAS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ECOAS)
217		폐기물관리처 (올바로지원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
218	가스안전공사	정보운영부(고객홍보실)	가스안전(지토피아)
219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
220		검사서비스본부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
2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222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	국가조기암검진 정보시스템
223		암정책지원과	암환자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224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재가암환자관리시스템
225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	종자유통시스템
226		종자유통과	종자관리통합시스템
227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표준유물관리시스템
228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물환경정보시스템
229	금융결제원	e사업실	e-giro 지로자료 인터넷 서비스
230		전자금융부	카드로텍스
23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지원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EDI)시스템
23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민간정보운영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U-CARE)

연번	소관부처		시스템명
233	우정사업본부	우편정보과 우편영업팀	우편물류시스템
2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	선거관리시스템
235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	피해진상관리시스템
236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 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 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로금등 지급관리시스템
23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관리시스템
23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략사업팀	다문화가족지원정보시스템(다누리)
239		경영지원국	다문화교육원실적통합시스템
240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중지기획부	농지공간포털
241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온비드(전자자산관리시스템)
242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243	한국전기안전공사	IT 전략부(서울)/ 고객지원부(충북)	민원처리시스템(e-safety)
244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판매SI 및 ERP시스템
245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2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공부 목록

순번	구 분	공 부 명	근 거
1	가족관계 (2)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	주민등록 및 인감 (5)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4		·주민등록증 회수대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5		·인감대장	인감증명법 제4조
6		·인감관리대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
7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
8	병무(21)	·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규칙 제3조
9		·병역판정검사대상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13조
10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
11		·귀가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3
12		·현역병선발취소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13		·현역편입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24조
14		·사회복무요원소집순서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37조

순번	구 분	공 부 명	근 거
15	병무(21)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38조
16		◦사회복무요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
17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단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
18		◦(공중보건의등)편입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
19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48조
20		◦전문연구요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55조
21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67조
22		◦교육소집대상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75조
23		◦사관후보생편입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79조
24		◦기본병과장교의병적편입대상자명단	병역법 시행규칙 제83조
25		◦재학생입영등연기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2
26		◦병역처분(변경)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
27		◦보충역편입취소자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104조
28		◦국외여행허가자등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29	지방세 (8)	◦면허세과세대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
30		◦주민세(개인분)과세대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31		◦주민세(사업소분)과세대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32		◦지방소득세과세대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16
33		◦재산세(건축물)과세대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
34		◦재산세(토지)과세대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
35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
36		◦자동차세과세대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
37	지적 (9)	◦토지대장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38		◦임야대장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39		◦공유지연명부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40		◦대지권등록부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41		◦경계점좌표등록부	공간정보관리법 제73조
42		◦지적도	공간정보관리법 제72조
43		◦임야도	공간정보관리법 제72조
44		◦지번별조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3조
45		◦지적측량업등록대장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3조
46	건축물(1)	◦건축물대장	건축법 제38조
47	민방위 (3)	◦민방위편성제외심사대상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48		◦민방위대편성대상자명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49		◦민방위대원명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순번	구 분	공 부 명	근 거
50	문화재 (5)	◦문화재수리업 등록대장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7조
51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6조
52		◦국가지정문화재종류목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53		◦국가지정문화재의소재지목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
54		◦국가등록문화재대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55	농사 (3)	◦농지원부	농지법 제49조
56		◦농지전용허가대장	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
57		◦농지전용신고대장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58	등기 (2)	◦토지등기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59		◦건물등기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60	상공(1)	◦공장설립대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61	우편(1)	◦우편구역 고시	우편법 시행령 제5조
62	식품위생 (2)	◦식품접객영업허가관리대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63		◦영업허가관리대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64	전통사찰(1)	◦전통사찰등록대장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5	외국인 (2)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관리법 제34조
66		◦외국인등록표	출입국관리법 제34조
67	수형인(1)	◦수형인명표	형의실효등에관한법 제4조
68	초등(1)	◦취학아동명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69	생활보호 (2)	◦기초생활수급자관리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
70		◦의료급여증	의료급여법 제8조
71	개발제한 (2)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7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 징수대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4조

공급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상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보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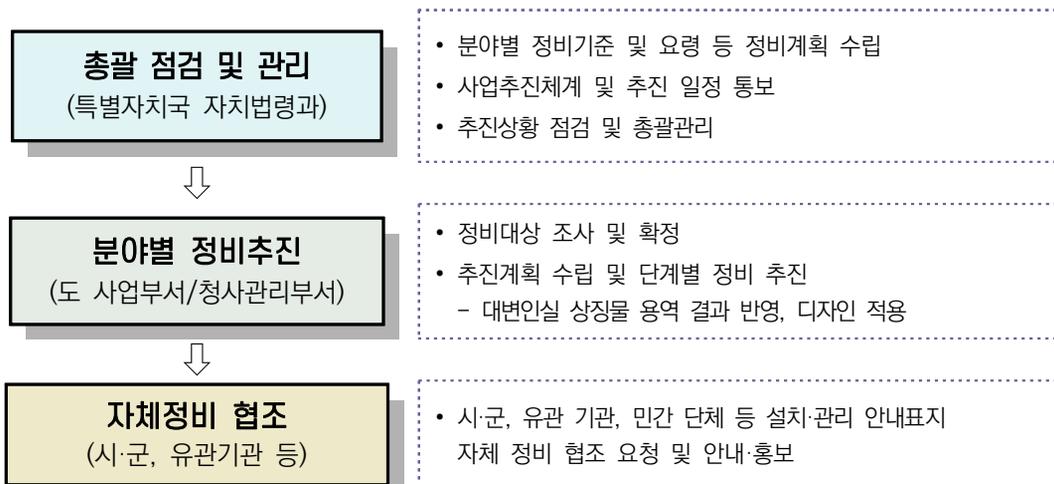
4.3

각종 안내표지판 및 공인, 인감 정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에 따라 2023년 6월 11일부터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분야별 적기 정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단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 제공, 도민의 혼란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표지판, 공인, 인감 등 변경 행정조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분야별(안내표지판, 공인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정비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표지판은 기존의 '강원도'라는 명칭에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개발 사업」에 따른 상징마크, 전용서체 등을 적용하여 통일된 디자인을 사용했고 각 분야별 해당 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다.

[추진체계]



정비대상 안내표지판은 총 2,948개(도 2,871, 시·군 77)였는데 청사시설 표지판의 경우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지방공기업, 분야별 유관기관 등이 해당되었고 안내시설 표지판의 경우는 도로표지, 경계시설물, 문화재·관광지·지방하천 안내표지, 해양수산·산림·복지분야, 으뜸 음식점, 풍력발전단지 등이 해당되었다.

이에 각 분야별 정비 대상 및 향후 일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시·군에서도 소관 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안내표지판 분야별 추진 상황 및 기타 협조 사항 안내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안내표지판 정비 추진 현황

- 도내 도로표지 등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계획 수립 및 통보 (2023. 1.)
- 분야별 안내표지판 담당자 실무협의회 개최 (2023. 1. 10. / 2. 10. / 4. 7. / 5. 9.)
- 기관 명칭 변경 관련 유관 기관 회의 개최 (2023. 3. 20.)
- 시·군 특별자치업무 총괄 담당 회의 개최 (2023. 6. 2.)

지방하천 표지판의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도로 표지판의 경우는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표지판을 변경 추진하였으며, 관광시설 표지판의 경우는 각 시·군에서 정비를 추진하였다.

도 본청 청사의 경우는 본관·신관·별관 등 내·외부 시설 등 379개소를 강원특별자치도 CI, 캐릭터를 활용한 사인물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일괄 정비하였다.

정비 관련 예산은 시·군 자체 예산을 제외하고 총 15억 8천 3백만원의 도비가 소요되었는데 각 항목별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군 교부 혹은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 대부분 별도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으로 해결하였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부족분은 예산을 추가 교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분야별 정비대상 안내표지판 현황 ■

분야명	부서명	사업량(개)	소요예산(천원)
합 계		2,871	1,583,708
도로표지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312	160,000
도로표지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162	36,199
도로표지판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252	52,550
도로표지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124	59,205
도 경계알림	균형발전과	60	294,718
문화재	문화유산과	211	19,520
관광	관광정책과	33	3,832
지방하천	치수과	484	376,262
해양수산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89	58,854
해양수산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25	15,000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과	196	50,000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과	38	18,213
사회복지시설	여성청소년가족과	52	21,780
체육시설	체육과	1	3,000
음식음식점	보건식품안전과	62	5,456
도 본청 청사	회계과	379	19,390
	자치경찰위원회	2	4,500
소방본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60	143,181
직속기관/출장소/ 사업소별 청사안내	농업기술원	10	20,000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7	5,785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4	4,000
	농업기술원 감자연구소	6	5,260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21	9,000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	3	2,849
	공무원교육원	2	8,418
	보건환경연구원	4	5,000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2	2,915
	자연환경연구공원	60	52,300
	여성가족연구원	4	7,080
	농산물원종장	3	1,034
	디엠제트박물관	5	1,730

분야명	부서명	사업량(개)	소요예산(천원)
직속기관/출장소/ 사업소별 청사안내	감자종자진흥원	8	6,400
	축산기술연구소	4	4,900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2	2,200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3	1,500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8	2,745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4	1,592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5	2,464
	산림과학연구원	103	20,500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21	5,000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12	20,080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2	8,434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6	6,310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6	7,722
	내수면자원센터	6	5,330
	한해성수산자원센터	8	21,500

공임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상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도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출범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 안내시설 표지판 정비 사진 ■



홍보조형물



홍보조형물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



CI 간판



직속기관 지주 간판



하천표지판



어항표지판



관광표지판

■ 청사시설 표지판 정비 사진 ■



(기존) 정문 문주 현판



(변경) 정문 문주 현판



(기존) 부서명 표찰



(변경) 부서명 표찰



(기존) 제2별관 간판



(변경) 제2별관 간판

각종 공인, 인감의 경우도 안내표지판과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개발 사업」에 따른 상징마크, 전용서체 등을 적용하여 기존의 '강원도'라는 명칭에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공인 조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부서별로 기존 공인은 폐기하고 신규 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 변경이 없는 공인은 재등록 절차를 거쳐 재사용했고 재사용 대상 중 마모 등으로 조각이 필요한 경우는 재 조각하였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서별 보유 공인 실태조사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계획을 조사한 결과, 도 전체 보유 공인은 1,079개로 폐기 후 신규 등록은 573개, 재등록 497개, 미사용 등으로 폐기 9개, 공인으로 등록할 대상은 1,070개였다.

- ① 신규 등록(573개) : 명칭 변경 해당, 폐기 후 신조 대상
- ② 재등록(497개) : 명칭 변경 미해당, 재등록 절차를 거쳐 재사용 대상
- ③ 폐기(9개) :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미사용으로 인한 폐기 대상

이에 부서별로 공인 정비 추진 상황을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등록·재등록·폐기 대상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 및 캐릭터, 영문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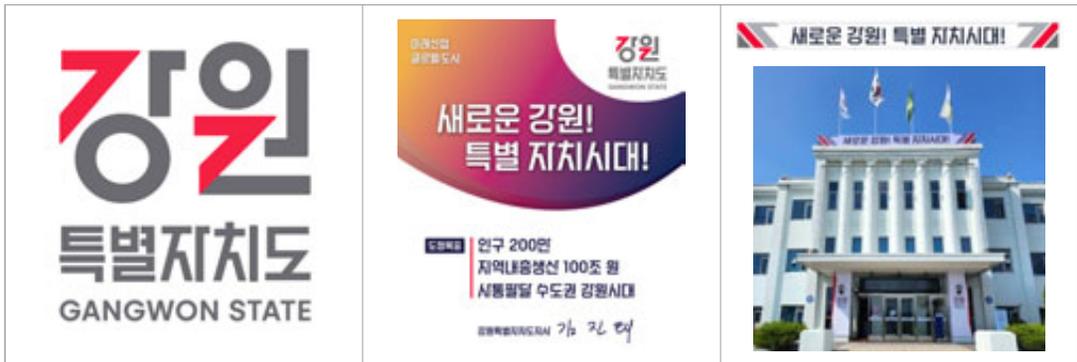
강원특별법 통과 후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강원’의 정체성을 표출할 신규 상징물(CI(상징 마크)·캐릭터)을 개발하고 기존의 청정 이미지와 첨단이라는 새 이미지를 융화시킨 브랜드 이미지를 완성하여 특별자치 시대를 맞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상징물 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원디자인진흥원’과 2022년 10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19일까지 개발 상징물인 상징마크, 캐릭터, 전용서체 3개 종류별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상징물 기본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기본 디자인을 제작한 후 수정·보완을 거쳐 상징마크(CI) 기본디자인 3개, 캐릭터 기본디자인 2개로 압축하여 분야별 전문가 평가와 자문을 거쳤으며, 대중적 호감도 반영을 위해 도민·전국민 대상 디자인 선호도 조사도 실시했다.

디자인 선호도 조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은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강원자치도와 디자인진흥원의 SNS를 통해 진행되었고, 오프라인은 5개소(춘천 2, 원주 2, 강릉 1)에서 선호 디자인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총 6,395명(온라인 5,862명, 오프라인 533명)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강원자치도 상징물 디자인은 다수의 디자인(안)을 제작하고 수차례의 보고회를 거쳐 2023년 4월 18일 확정되었고, 확정된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분야별 응용 디자인도 개발하였다. 강원자치도는 확정된 CI와 캐릭터를 2023년 6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공개했다.

개발된 상징 마크(CI)는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으로,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상징하며, 훈민정음 초성 첫 글자인 ‘ㄱ’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순수 한글을 활용한 워드마크(글자를 형상화한 마크)를 도입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호평받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 ■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영문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었다. 우선, 발음과 표기가 쉬우면서도 외국인에게 명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한 표현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Gangwon Special Autonomous Province(G.S.A.P) 및 Gangwon Government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Gangwon State로 의견이 모아졌다. Gangwon State는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강력한 분권의지와 지역 주도·주민중심의 발전전략을 제대로 표현한 것으로 미국의 “자치주(State)”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을 맞아 한림대 캠퍼스라이프센터 비전홀에서 ‘일타 강사가 풀어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알쓸신잡’ 토크 콘서트 행사에서 공식 영문표기인 “Gangwon State”를 발표했다.

전용 서체는 타 기관 서체와 차별화하여 강원자치도 상징마크(CI)에서 보여주는 상승과 성장의 사선 이미지를 정제하여 개발한 제목용 서체로 가독성과 시인성이 우수하도록 디자인을 제작하고 구조적 기능을 고려하여 상징마크(CI) 보다 자폭이 넓게 설계되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전용 서체 ■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강원이’와 ‘특별이’는 각각 대한민국의 상징 동물인 호랑이와 강원자치도의 상징 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의인화한 것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귀엽고 푸근한 형태의 라인형 캐릭터로 개발되었다.

■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강원이&특별이) ■



상징마크는(CI)와 캐릭터 디자인은 2023년 9월 5일 「2023 굿디자인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단일 지자체의 상징마크와 캐릭터가 동시에 선정된 것은 강원자치도가 최초이다.

* 굿디자인어워드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분야 시상식

■ 굿디자인어워드 선정 확인서 ■



강원자치도는 신규 개발된 상징마크(CI)를 기반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과 ‘첨단과 청정의 공존’이라는 독자적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해 대표 홍보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강원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친근하고 귀여운 ‘강원이’와 ‘특별이’ 캐릭터를 누리 소통 매체(소셜 미디어)와 각종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광객 방문이 많은 유명 장소와 관광지에 전시하여 캐릭터를 통한 대내·외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강원
특별자치도

V.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작

5.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 233

5.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의의와 성과 / 240

5.3 강원특별법 도민 설명회 / 242

5.4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 / 272

5.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은 6월 9일 오전 11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출범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진태 도지사, 권성동, 한기호, 이양수, 유상범, 이철규, 박정하, 노용호,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등 1천 600여 명이 참석했다.

■ 출범 기념식 진행 순서 ■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20 ~ 10:40	20'	• 식전공연	박현빈, BMK
11:00 ~ 11:05	05'	• 입장 및 국민의례	사회 : 김우진 아나운서
11:05 ~ 11:08	03'	• 특별자치도 출범 경과보고	도 행정부지사
11:08 ~ 11:13	05'	• 기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1:13 ~ 11:16	03'	• 기념 영상상영	무대 LED화면
11:16 ~ 11:21	05'	• 축사	대통령
11:21 ~ 11:22	01'	• 캐릭터(강원이, 특별이) 공개	무대 LED화면
11:22 ~ 11:27	05'	• 특별자치도 출범 퍼포먼스	대통령, 도지사, 의장 의인 및 미래인재
11:27 ~ 11:30	03'	• 폐회 및 환송	

■ 출범 기념식 행사 사진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내·외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거리공연(버스킹)을,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의 의미를 담은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기념식을 가졌다.

■ 수도권·15개 시·군 출범 행사 추진현황 ■

시 군	행사일자	행 사 명	시 군	행사일자	행 사 명
수도권	4. 1./5. 19.	출범 홍보 버스킹	영 월	6. 21.	출범 기념 경축공연
춘 천	6. 9./6. 10.	출범 기념식/열린음악회	평 창	6. 9.	출범 기원 콘서트
원 주	6. 7.	출범 기념식, 경축공연	정 선	5. 2.	가리왕산케이블카 개장식
강 릉	6. 3.	도민체전 개최식, 출범기념식	철 원	5. 26.	출범 음악회
동 해	6. 9. ~ 11.	강원특별도민 라벤더 축제	화 천	5. 5.	출범 기원 행사
태 백	6. 3.	출범 기념식	양 구	6. 16. ~ 17.	출범 기념 시낭송대회 및 사생대회
속 초	6. 9.	출범 기념 해상 퍼레이드	인 제	5. 19.	출범 기념 골목문화제
삼 척	5. 20. ~ 24.	장미축제 연계 자치도 출범 드론쇼	고 성	6. 24.	출범 기념 화합 걷기대회
홍 천	6. 2.	홍천강변 걷기 축제	양 양	6. 8.	특별자치도 성공 기원 양양문화제
횡 성	6. 18.	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			

■ 시·군 행사 사진 ■



원주(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강릉(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태백(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속초(출범 기념 해상 퍼레이드)

꿈이없는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도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명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고대 예맥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로서 1395년 조선 태조 4년 교주도와 강릉도가 합쳐지면서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남·북 강원도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으며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강원 남부지역은 점차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굴곡의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도 전체면적의 1.3배가 넘는 지역이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에 묶여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미래의 땅으로 강원도를 변모시키기 위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지난 2008년 강원도의회에서 최초로 특별자치도 논의가 시작된 이래,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도 출신 이양수 허영 의원께서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서 마침내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정 강원특별법은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은 23개 조문에 불과하여 금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을 중심으로 강원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담보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교육청, 강원도의회와 유관 기관, 그리고 전문가자문단 등과 머리를 맞대었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힘썼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행정안전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첨단 신산업과 청정환경의 융합을 통해 세계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2월 6일 우리 도 출신 허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공동명의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은 험난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직자들이 정부 부처와 국회를 100여 차례 이상 찾아가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해의 간격을 좁히는 일은 쉽지 않았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선 법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은 오히려 300만 강원도민의 하나 된 외침을 국회 광장에 울려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침내 지난 5월 25일 84개 조문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강원특별법을 통해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강원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킨 결과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일정부분 얻게 되었습니다. 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시키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대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온 도민이 힘을 합쳐 위대한 자치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입니다.

이 벅찬 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강원외손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강원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신 우리 대통령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우리 강원도는 그 뒀안길에 있었습니다.

소양강댐, 동해안 화력발전소, 광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강원도가 지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스무 곳의 초등학교는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떨치고 나온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안 그럴습니까? 여러분!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영동, 영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원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됐습니다.

한 마음으로 뛰어주신 국회의원, 강원도의회, 도 교육청, 18개 시·군, 도민회, 범추협,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는 더 이상 수도권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양보'했지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 할 것입니다.

함께 감사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주민 여러분.

지난 10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 이후 8개월만에 특별자치도에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기쁜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발전이 늦었던만큼 정말 멋지고 세련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강원도가 스스로 규제를 풀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 때 평화 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었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하여 1년만에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한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태백시 산림 바이오 매스 활용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 해줄 춘천 ~ 속초동서고속철도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을 촘촘하게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특별자치 도민 여러분.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뜨겁게 응원해 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 발전의 원년이 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의의와 성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된 타 사례와 달리 300만 도민의 열망과 도·시·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더 나은 도의 미래를 만들고자 추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다닌 거리가 46,000km,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 지원위원회 설치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강원특별법에 담길 바라는 18개 시·군의 요청을 받고 이걸 줄이고 다듬어서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전부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 출범할 수 있었다.

18개 시·군이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서 특례를 만들고 이것을 정리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존 특별자치시·도와 차별되게 현행 행정체제(도+시·군)를 그대로 유지한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유일무이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특히 강원특별법 제1조는 ‘중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에 걸맞은 지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 전략과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되는 제도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 자치분권이 일부 확산되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고, 이후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자치 태동과 자치분권 강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통합과 상징성을 보여주며 현재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상징으로 주민 주권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강원자치도 전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위상을 높였다고 본다.

또한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첫걸음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군사 및 환경 등의 규제가 많아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나, 4대 규제 혁신을 통해 강원도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4대 규제(산림·환경·군사·농업)를 해소하는 상당한 권한을 얻게 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인 자유, 각종 규제로부터의 자유 안에서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나아져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며, 멋진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3

강원특별법 도민 설명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군별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도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대하며,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8개 시·군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준비하였다.

도에서는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4대 규제 핵심규제 개선 등 각종 특례를 활용한 발전 전략을 시·군별로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는 2023. 6. 21. ~ 7. 17. 기간 중 18개 시·군 전역에서 개최하였으며 도지사, 부지사, 특별자치국장 등 고위공무원을 비롯하여 각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시·군 의원, 각종 사회단체,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설명회에 참석했다.

[개최 현황]

춘천시	6. 21.(수) 14:00	양양군	7. 3.(월) 14:00	강릉시	7. 7.(금) 14:00
원주시	6. 22.(목) 14:30	동해시	7. 4.(화) 10:00	영월군	7. 11.(화) 14:00
횡성군	6. 27.(화) 14:00	삼척시	7. 4.(화) 14:00	정선군	7. 12.(수) 14:00
화천군	6. 29.(목) 10:00	속초시	7. 5.(수) 10:00	평창군	7. 13.(목) 14:00
인제군	6. 30.(금) 10:00	고성군	7. 5.(수) 14:00	태백시	7. 14.(금) 10:00
양구군	6. 30.(금) 14:00	홍천군	7. 6.(목) 14:00	철원군	7. 17.(월) 14:00

2023년 6월 21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에서는 강원특별법의 주요 특례를 설명하고 시·군에서는 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발전 전략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특히 강원특별법의 핵심이었던 4대 규제 혁파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법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 규제 개선내용과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구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이어서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 및 지향하고자 하는 특례 활용 발전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향후 강원특별법의 증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 ■



춘천시는 최우선 핵심과제 추진전략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국가산업단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였다.

○ 질의사항

- 춘천시 발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 ▶ 계속 해오던 바이오헬스 분야 지금 엄청 뜨고 있음. 또 데이터 산업과 결부된 사업, 수혈에너지 클러스터 등이 있음. 그 외 춘천에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 조금만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람.

○ 언론보도(강원도민일보)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1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4대 규제 허파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주요 특례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김정효

강원특별법 특례 연계 춘천시 발전안 설명

찾아가는 도민설명회 춘천시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1일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개최, 강원특별법 특례와 발전 전략 등이 소개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오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설명회에 참석,

강원특별법의 주요 특례와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발전 전략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핵심은 4대 규제 허파이다. 이는 앞으로 강원도가 가야 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법 조항 중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총 61개가 있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 속도를 내서 다 재워 넣겠다"고 했다. 산림 특례에 대해선 "산림청 중앙에서 갖고 있던 산지 전용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가져왔다"고 언급한 뒤 "41년 된 오색케이블카처럼 뭐만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에 좌초됐는데 드디어 환경영향평가권도 갖게 됐다"고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을 두고 "한 가족당 3명만 쳐도 대략 1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김덕형

▷ 원주시(6. 22.) / 원주문화원

원주시는 반도체 대기업 유치, 상수원 보호규제완화,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특례 활용 전략으로 ‘원주디지털스케어 특구’, ‘미래모빌리티 특구’ 등의 연구개발 특구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을 발표하였다.

○ 질의사항

- 특별법 만들어지면서 권한이 도지사로 넘어가면 환경 난개발 우려
 - ▶ 법 개정 내용 중 환경 보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개발과 보존 균형 맞출 것.
- 2030 10년 청사진 중 춘천, 원주, 강릉 3곳이 반도체 관련 내용이 유사한데, 지역별로 어떤 것이 다르며, 정확히 어떤 구상인지?
 - ▶ 반도체 활용 분야는 자동차,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 다양하므로, 어느 특정 지자체에서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자체별로 분야를 달리하여 반도체 산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도 전체가 같이 나가야함. 반도체 교육 관련 해서도 춘천의 강원대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대학과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
- 4차산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임. 도 차원의 4차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 ▶ 도내 원격진료, 생체관찰 모니터링, 휴대용 X-ray, 미래 모빌리티(전기자동차)를 중점으로 4차산업 육성 추진할 것이며, 이번 전면 개정에 아쉽게도 빠졌지만, 3차 개정 때 반드시 포함시킬 것.
- 농업진흥지역 10%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정작 농지를 살 때 자격요건 너무 까다로움.
 - ▶ 농지취득자격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음.

○ 언론보도(강원도민일보)

‘반도체 기업 유치·연구개발 특구’ 원주 청사진 모색

찾아가는 특자도 도민설명회 개최
지역발전계획 설명·시민의견 청취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아연계원주시 발전 비전을 알리는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2일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렸다.

도와 원주시가 주최한 설명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역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경수 원주시장, 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진태 도지사는 산업·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개선을 통한 도 발전성과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인 ‘반도체전문 인력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소개했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2일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김진태 도지사, 원경수 원주시장, 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경수 시장은 시민을 주요 특례인 반도체 대기업 유치, 상수원 보호 규제 완화,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을 발표했다. 또 특례 활용 전략으로 원주 디지털스케어 특구, 미래모빌리티 특구 등의 연구개발 특구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강조했다.

이날 원시장은 “원주의 기업 지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 변화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원주를 떠날 것이고, 산업단지 조성 없이는 원주도 소멸의 길에 처할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 유치를 강조했다.

권해민 slon29@kado.net

횡성군에서는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및 친환경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 질의사항

-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 요청
 - ➡ 아쉽게도, 법안 초안 만들 때 담지를 못함. 우선 이것이 비상 취수원 지원제도를 강력히 한다든지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공장 설립 승인 제한 행위를 완화한다든지 등 3차 개정 때는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검토하겠음.
- 18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시·군에 공평하게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 ➡ 1천 2백만평이니까 18개 시·군이면 시·군별 70, 80만평정도 되는 것 같음. 그렇다고 시·군을 딱 나눠서 드리기는 어려움. 그래서 저희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갈 것임.
- 국립공원 행위 제한 권한, 통과가 안 돼 상당히 아쉬움. 3차개정 때 꼭 반영 요청
 - ➡ 당초에 만들었던 181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못 담았음. 3차개정때는 그 부분을 담겠다는 말씀드림. 국립공원 행위 제한과 함께 공원 자연 보존 지구 내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보겠음.
- 농막 현재 규정상 6평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기준면적 넓혀주길 요청
 - ➡ 농막.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음. 그래서 농림부가 제도개선 하고 있음. 추가로 농지 취득 완화 부분이 있음. 농막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지 취득을 완화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음. 3차개정 때 필요하면 이 부분도 담겠음.
- 절대농지를 가급적 풀어 관광차원에서 젊은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마련 요청
 - ➡ 금번, 4대 규제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었음. 다음 번에는 실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임. 그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서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올 것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특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옥계리 교통 불편, 원주와 횡성 협의를 통해 농어촌버스, 희망버스 등 교통문제 개선 요청
 - ➡ 횡성에서 한 달 전에 원주와 협의체 구성, 협의체 회의시 안건으로 논의 추진
- 농업진흥지역, 산지보존구역 등은 지정 해제를 할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나 기준을 정해야 함.
 - ➡ 절대농지같은 경우 전체 4만4천ha에서 4천ha 딱 10%, 1천 2백만평밖에 못 가져옴.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8일 (수)
지역 13면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7일 횡성문화원에서 김진태 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회장을 비롯한 군의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 미래먹거리 규제완화 특례 반영 최선”

찾아가는 특자도 도민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출범을 계기로 횡성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7일 횡성문화원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역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규제개선 내용과 첨단과학기

술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구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 등을 소개했다.

김명기 군수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군의 주요 특례를 소개하고, 특별법 개정안의 규제완화를 통해 횡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및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조성, 100만평 규모의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횡성군 진입관문인 목계리 지역의 발전, 미래 먹거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완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실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지구 지정·시범운영·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등의 특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화천군에서는 화천·하남권역에 군납 대응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DMZ 생태 벨트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계획, 사내·상서권역에서는 제2농공단지 조성, 숲 테마파크 조성, 간동권역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등을 설명하였다.

○ 질의사항

- 금번 강원특별법 4대규제 해소가 주요내용인 것 같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 많이 미흡한 것 같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 ▶▶ 4대 중복규제 우선 하다보니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인데 몇 개 못 담음. 그래서 앞으로 3차 개정 준비하고 있음. 시도, 교육청, 대학까지 6월 말까지 특례 받고 있음. 9월말까지 법안 만들고, 10월초 도민 공청회, 10월말 최종 법안 만들 것. 그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체화 할 수 있는 부분 넣겠음. 또 재정, 세제, 자치조직권, 도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규제, 산지·농지관련 협의권 등 이렇게 해서 크게 가겠다는 말씀 드림.
- 강원특별법 54조, “할 수 있다”는 안해도 된다는 뜻도 포함하여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봄. 3차 개정시 반드시 “해야한다”로 개정해야함.
 - ▶▶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됨. 다만, 이번에 한기호 국방위원장까지 나서서 지원한 것이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였는데 이게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지켜보자. 과연 예전처럼 제대로 수의계약 하는지, 제대로 안된다 그러면 “해야한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드림.
- 법은 내년 시행돼 1년의 시간 있음. 군납 계약문제는 물량이 문제임. 농민들이 시위해도 70%밖에 안되어 있고, 이는 무와 배추가 빠진 70%이기 때문에 사실상 70%가 아님. 내년까지 물량을 또 줄이면 수의계약 의미 없음. 수의계약만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에서 먹는 물량 자체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가지 않게끔 제도를 해줄 수 있는지?
 - ▶▶ 뭘 먹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병사들의 건강과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가 제일 큰 목적임. 군납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 행정, 국방 등이 서로 연계돼서 신뢰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함.
- 화천 하남, 기업유치 환영하나 고용, 인프라 등 문제임.
 - ▶▶ (화천군) 같이 노력해야할 과제, 군부대에 의존했던 경제를 스스로 자립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정주 인프라 구축 필요, 주거 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추진하겠음. 지역소멸기금을 현재 150억 확보해서 임대아파트 추진하고 있고,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들이 머리 맞대고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함.
-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면적으로 따지면 안 됨. 철원에 비하면 농지답지 않은 농지가 많음. 화천군 농업진흥지역 100% 해제 요청.
 -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율로 하지 않을 것. 풀 것은 풀고 보호할 것은 반드시 보호할 것.

화천군 신성장 동력 ‘먹거리·DMZ·파크골프’

찾아가는 강원자치도 도민 설명회 발전 방안 구상
체류형 관광·역세권 개발·교육 특례 등 의견 제시

【화천】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한 화천군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과 DMZ 생태벨트, 파크골프 등 미래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강원자치도와 군은 29일 화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는 강원특별법 개정 특별회 활용 전략 등을 설명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강원자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후 최수영 군 기획감사실

장이 강원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화천 권역별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먼저 화천·하남권역에서는 군납 대응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 DMZ 생태벨트, 파크골프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계획을 내놴다.

사내·상사권역에서는 사내 제2농공단지 조성, 명품 임산물 상품화, 귀산촌, 체험, 휴식 등 스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간동권역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세권 개발을 중시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은 29일 화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천군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DMZ 생태벨트, 파크골프 등의 미래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으로 대규모 주거·산업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군은 향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대비해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특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 특례 발굴 의지도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군납 농업인들은 “군부대 농산물 수의계

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법 개정이 군납 수의계약 임의조항을 ‘외부조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문순 군수는 “군납뿐 아니라 시력장 소음, 농업과 군사, 환경, 산림 등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원자치도 시대에 화천군이 머무르고 싶은 고향 같은 요정,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영기자 kyjang3276@

인제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하는 7만 군민, 1,000만 관광, 100년 미래 인재 등 3가지로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였다.

○ 질의사항

- 인제군 걸림돌은 산림, 하천임. 산림 해제 필요하나, 국유림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문제임. 3차 개정안에 반영 요청. 하천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도 법률에 대한 부분 적극 도움 요청.
 - ▶ 국유림 권한 점차 확대하겠음. 산림청에 담당 국장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음. 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 기념물 안에서의 생태 탐방도 실무적으로 반드시 검토하겠음.
- 비전에 교육과 인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음. 미래에 교육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더 나아갈 수 없음. 또, 도 교육청에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 고민해 주시기 바람.
 - ▶ 사실 국회에 낸 법안에는 교육청의 자치조직권이 들어있었는데, 교육특구, 자치조직권 등 누락된 게 있음. 국회 구조상 당장 통과되기 어려움, 내년 국회 구조가 정해지면 동력을 얻어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뤄야 될 것. 반드시 추진하겠음.
- 산나물 채취. 마을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지만, 봄철엔 그런게 없어 불편함. 외지사람이 와서 산나물 채취해감. 오히려 뿌리까지 캐감. 주민들만 걸리는데 주민들은 뿌리까지 캐지 않고 잘 보호함. 주민들에 한해 관리차원으로, 예방도 되고 보호도 되는, 그런 증명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 ▶ 3차개정 때는 도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도 검토하겠음. 국유림 산나물 채취권을 특례로 주민들에 한해서 하는 걸 검토해 보겠음.
- 인제는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평화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감. 평화라는 것은 실체가 없음. 실체가 있는 평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전국에 3만 5천명 북한이탈 주민 있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제군이 이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 이탈 주민 정착촌을 만들어서 북한에 있던 주민이 한군데에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임. 그 안에 종합계획 수립 시 그런 내용을 넣겠다는 말씀을 드림.

“강원자치도-인제군 지역 발전 한마음 정진”

‘찾아가는 도민설명회’ 열고 미래 비전 등 제시
김진태 지사 “중복규제 풀어 피해 해소” 약속

【인제】인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미래 100년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강원자치도와 인제군은 지난날 30일 인재문화원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유기 중앙에도 원장을 찾아 강원자치도 출범 및 전부가정인의 통과 과정 등을 설명하며 강원도민들의 전폭적인 노력과 지원에 감사 표했다. 김 지사는 현재 84개조문으로 출범했지만 250여개로 늘려 특별자치도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 규제 혁파와 관련, 인제군은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관이 있는 만큼 중복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풀어 그동안 받았던 피해를 해소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기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하는 7만 군민, 1,000만 관광, 100년 미래 인제 등 3가지로 나눠 인제군 발전 전략을 설명했다. 군은 집경직의 산림에 대한 규제와 지역발전에서 지장을 받아 왔던 만큼 이에 대한 해소를 통해 정주여건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지난날 30일 인재문화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최상기 인제군수, 임윤순 도의원, 이종만 인제군의회장이 강유지지도와 인제군 발전을 기원했다.

을 개선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겠다고는 비전을 제시했다. 강원자치도 출범에 따라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한발 더 나아가 군이 목표로 내건 1,000만 관광 인제 실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면 정자리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 등으로 환경인형평가 등의 권한이 도시에게로 이양되는 만큼 신속한 인허가 및 행정처리가 가능해졌다. 지역관광지도를 비율 소양호세계집관평단지외 나삼악백담계곡 관광경 합용 인프라 구축사업 등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어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라 원통역과 백담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묶어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인제군은 교통 발전은 지역 발전과 비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거점도시(춘천-속초고속화철도, 평화(국도 31호선 대체노선), 경제 제2도약(국도 44·46호선), 레저신산업(서울~양양고속도로) 등 4대 축을 바탕으로 100년 미래 인제의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최상기 군수는 “인제군의 향후 100년 미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과 규제 해소 노력 등을 적극 발굴, 강원특별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양구군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 전략으로 산지유통센터, 제2농공단지, 반려동물테마파크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 급식과 관련하여 우수한 농산물 납품체계 구축, 유통망 구축, 산림 분야에 적극적 검토 등을 통해 현안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 질의사항

- 양구는 춘천댐, 화천댐으로 인한 수면이 많이 있음. 쓸만한 토지는 수면에 들어가 있음. 농경지 확대·개발을 위해 수면 개발 필요. 차후에 수면 개발 문제 도지사 권한으로 추진 부탁.
 - ▶ 수면 개발 중요함. 그런 부분 분명히 어떤 특혜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그게 안 되면 시행령에 조금 완화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좀 넣겠다는 말씀을 드림. 또, 댐 관련해서는 댐 건설 관리법을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권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 댐 건설 비용보다 이익을 더 많이 받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 적음. 초과 이익에 대해 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군사 제재로 불편함 많음. 부대 협의 시 통보가 아닌 상의하는 방법으로 개선 요청, 군부대에서는 함께 협의하고 군사보호구역이 정말 필요한지 국민에 피해주는 것이 없는지 정밀 검토 필요. 법에 “건의할 수 있다” 는 구절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 앞으로 관련 개정이나 보완계획이 있는지?
 - ▶ 우선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를 담았음. 단계적으로 갈수록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임. 또 “하여야 한다” 도 반드시 넣어야 함. 또 그걸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한다고 넣어야 함. ‘미활용 군용지’의 경우도 “3개월 이내 정보를 내야된다” 이렇게 되어야 함. 이제 첫 단계임. 반드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명문화해서 해야한다는 것 공감. 그렇게 노력하겠음.

○ 언론보도(강원도민일보)

양구군, 군 수의계약·보호구역 해제 강조

찾아가는 강원특자치도 도민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은 지난 30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김영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서홍원 양구군수, 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박귀남 양구군의회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렸다. 김영선 부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특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서홍원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추진할 양구의 권역별 발전구상을 소개했다. 서 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

전전략으로 산지유통센터(21사단 보수대), 제2농공단지(21사단 정비대대)를 추진 중이며 향후 반려동물 테마파크(21사단 헌병대대)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정밀 실태조사를 통한 변경·해제 건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급식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납품체계 구축을 위해 군부대 수의계약 유도, 안정적 인 유통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분야의 경우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개정된 특별법 적극 검토와 함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은 지난 30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보전산지에 소재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농촌활력 진흥지구 등 개정된 특별법 적극 검토 활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주민들은 질의를 통해 양구지역은 소양강댐과 화천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에 갖고 있는 '수면개발허가' 권한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또 군사시

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는 한 구절을 갖고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홍원 군수는 '양구군은 토지 8건, 국방·농업각 6건 등 63건의 특례를 발굴했고 보고회, 주민·전문가의 견수령 등을 통해 지속적 특례발굴과 논리보완, 고도화, 전문화를 통해 향후 개정 때 입법의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원

삼척시는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와 산업육성 등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 산림자원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 질의사항

- 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없애도록 건의

○ 언론보도(강원도민일보)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4일 삼척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소경제벨트 중심 관련 산업육성 박차”

삼척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4일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열려 강원특별법 특례와 이를 활용한 삼척시 발전 전략 등이 소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는 이날 삼척시청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 등 비롯해 박상수 시장과 정정순 시의장, 심영곤·조성운 도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중훈 삼척부시장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삼척시 발전 전략’을 통해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수소생태계와 산업육성 등

백두대간 산림자원 활용안 소개 “시민의견 반영 특화사업 발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힘쓰고, 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을 적극 해제해 각종 개발사업 확대 및 체육시설 분산 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내 90여km에 달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리조트, 세련하우스 등 산림자원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박상수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특색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정민 koo@kado.net

양양군에서는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 관광·휴양형 복합문화특구 조성,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산업과 연계한 K-연어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발전전략을 소개하였다.

○ 질의사항

- 양양에 교육청이 없어 불편한 점 많아, 반영 노력 부탁드립니다.
 - ▶ 당초 법안을 만들 때 시·군에서 특례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협의가 안 됐음. 교육부는 어느 정도 준비돼 있으나 오히려 행안부에서 수용을 못 함. 이번엔 반영되지 못한 특례 다수, 고충 이해함. 다음번 반드시 반영 노력하겠음.
- 특별자치도가 되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강원도만의 색다른 연구 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아 정책 등을 만들어줘야 함.
 - ▶ 양양 비롯한 12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함.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지 않는 그런 자치도를 만들겠음. 이번 특례들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옥죄어온 산림, 환경, 군사, 농업 규제에 초점을 맞춤. 차후에 법안개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에 중심을 뒀서 마련하도록 하겠음. 출산·육아 부분에 있어서도 도정 시책 준비 중. 시·군과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임.
- 국방, 산림 규제 완화 활용해서 관광산업 방안이 있는지?
 - ▶ 지사님이 지위를 받았으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 결국 현안 사업도 시·군에서 요청하고, 도는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함. 양양의 여러 전략 산업 육성에 대해 추가로 발굴하고 법에 담야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음.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 역세권 개발 송암리 일대가 농업진흥지역임, 낙산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한지?
 - ▶ 금번 특례에서 농업진흥지역 1천2백만평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져옴. 이걸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음. 법령에는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농업활력촉진지구를 선정하게 됨.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 주민의 의견을 들을 것.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현남면 운포리. 골짜기도 절대농지로 편입됨.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진흥지역으로서의 정의가 맞느냐를 판단해야 함. 도민이 요청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지역적으로 필요성 점검요청.
 - ▶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논리를 만들어 해제를 시켜야 함.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3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양양군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지역발전 견인”

찾아가는 강원특자도 도민설명회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3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렸다. 김진하 군수와 오세만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강원특별법의 추진경과와 개정에 따른 향후 발전전략 및 4대 규제 혁파와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강원특별법의 중점 안인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혁파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 등

을 특례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추진할 권역별 발전구상을 밝혔다. 탁동수 기감실장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관광·휴양형 복합문화특구 조성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산업과 연계한 K-연어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발전전략으로 선정하고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최훈

동해시는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단지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도권과의 물류 연결 강화를 통한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 항만지역관리 및 개발 권한 이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원동해항만공사 설립 등 추가 특례 반영을 제안하였다.

○ 질의사항

- 동해항, 옥계항 등 여러 항만이 있음. 속초의 항에서도 지금 유람선이 동해랑 똑같이 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 ▶ 원래 법안 마련한 181건 중 「강원항만공사」가 있었음. 동해안에 총괄관리하는 곳. 그정도 돼야 세계적으로 국가지원, 지자체지원, 규제완화가 가능함. 다만, 법안이 137개로 줄면서 못 넣었음. 3차개정 때는 이미 내용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넣겠다는 말씀드림. 다만 「강원동해항만공사」 or 「강원항만공사」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검토해 보겠음.
- 동해항이 기능 발휘해야 강원도가 산다. 지금까지 도 행정은 그렇지 않음. 이제, 특별자치도로 인해 법안이 반영됐고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시에서 발굴한 12개 조항. 이것이 3차개정에 반영되어야 함. 또, 동해항, 묵호항 또 신항 이렇게 있지만 아직까지 제기능 전혀 못하고 있음. 인프라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물류 거점화지역으로 해야 함. 반드시 항만공사 설치되어야 하고 해양물류 연구단지도 필요함. 국방과학연구소 유치도 필요. 도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람.
 - ▶ 해양물류연구단지, 국방과학연구소는 전국이 똑같은 기준. 이 부분은 첨단과학기술단지처럼 어렵다면 완화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겠음. 해역이용 등 동해안쪽에 있는 모든 특례 이번에 반드시 넣겠다는 말씀 드림. 또 3차개정안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체화 할 수 있는 특례를 넣을 것. 그러려면 지역발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함. 동해안 해안관련 사업, 해안쪽 대체산업, 신산업 등. 또 도민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완화하겠음.
- 동해항, 묵호항이 현재 묶어져 국가항으로 지정. 동해항은 자유무역항으로 잘 되고 있음. 그럼 묵호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선이 들락거리는 유람선은 가능, 화물선 정박은 곤란. 이것은 자치도항으로 가야됨. 국가항에서 내려 어항과 관광항으로 가야함.
 - ▶ 묵호항은 사이즈가 작음. 이것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음. 다만 강원항만공사를 통해서 종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가지고 있음. 자치도항은 검토해 보겠음.



동해시가 4일 동해시평생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반영을”

동해 동해시가강원특별법3차 개정시 동해항일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를 반영해 줄것을 촉구하고나섰다.

동해시는 4일 오전 10시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을 비롯해 공무원·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규하 동해시 부시장은 '강원특별법 특례활용 동해시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단지 경쟁력

강원동해항만공사 설립 제한 "북방경제 주도 물류거점 조성"

이 강화되고, 자립형 항만화가 가능하며, 수도권과의 물류연결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항만지역관리 및 개발권한이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원동해항만공사 설립 등의 특례를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심규언 시장은 "특별자치시대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거점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nu@kado.net

속초시는 특례 활용 발전전략 설명을 통해 제3차 개정 시 영동북부권 광역상수도망 구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 특례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 질의사항

- 장사동, 32년 동안 군 규제로 인해 삶의 불편은 물론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받아왔음. 수십번 정부에 건의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 없음. 만일 화재가 생기면 소방차가 들어올 골목도 없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속초시 고도 제한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 ▶ 도, 권익위, 국방부 협의하고, 국방부 방문도 했음. 법안에 정보제공 하도록, 구체적 사유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를 것. 제도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겠음.
- 지리적 여건상 비만 오면 바다로 유입, 단수 시행 등 불편사항이 많음.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되면 생활 인구 20만명, 주민 불편 더욱 심화될 것. 인근 3개 시·군 풍부 수자원 보유하고 있음에도 온수 공급은 꺼리고 있는 실정. 공공재인 물 문제를 강원도가 광역화 해주면 강원도로 관광 오는 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정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강한 이미지 심을 수 있음.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 ▶ 속초시 물 자립화 노력을 했음. 앞으로 물 모자를 것으로 예상이 됨. ①고성과 경계 지역에 협의해서 하는 방법, 또는 ②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 또는 ③3차 개정안에 도지사가 직권으로 광역상수화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음.

○ 언론보도(강원일보)

“광역상수도망 구축 절실”

속초시 3가지 특례 신설 구상 고도제한 해제 등 집중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영동북부권 광역상수도망 구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5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 자리에서 속초시 특례 활용 발전전략 설명을 통해 3차 특별법 개정안에 광역상수도 직권 설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별 행위제한기준 완화 등 3가지 특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0만 원 규모의 시대 광역상수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정학적으로 실익안이 있으니까 물어 볼 것 같지만 실익안에서 정해져 가는 유속이 너무 빨라 식수 원민 생산에 머물 수 없는 구



▷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가 5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김산재 강원자치도지사, 이병선 속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라며 “도지사의 권한으로 고성이나 양양에 남는 물이 있으면 광역상수도망으로 먹는 물 정도는 속초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사규제로 인한 경사면 지역 고도제한 해제에도 역할을 집중하기로 했다. 남부권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반해 북부권은 군사규제에 발목이 잡혀 고층건물을 올릴 수 없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

사는 “3년만 있으면 속초에 철도가 가로, 새로 놓아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이 유지이자 수도권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속초시는 도망살명화에 이어 ‘시민과 함께한 속초 60년, 미래 100년으로 초대’ 행사를 열어 역사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신청사 건립, 섬어촌 재건사업, 속초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속초시 미래 100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속초=권민기자

▷ 고성군(7. 5.) / 군청

고성군은 통일 대비 자유도시, 산림·해양 복합 휴양도시 건설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동해북부선 철도 간성역 개발과 관련하여 특례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질의사항

- 자원 관리선,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부분. 강원도 유일하게 있음. 근데 규제가 엄청 강함. 60년도 초에 법이 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마을어장 한계수심이 15m임. 15m가지고 무슨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겠음? 고성 마을어장 한계수심 25m까지 법 개정 현실화 필요. 또 도지사 허가 어선 강원도에 전체 7척, 고성에 1척 있음. 15년 전에 많은 배를 강제 감축했는데, 그때 총당 못함. 강제 또는 자연 감축해서 자원 관리선들에 수익성 확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 동해안 해양산업 관련해 참 많은 것을 만들어 냈는데 발의 과정에서 뺐음. 3차 개정 때 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 드리겠음. 마을어장 수심 내용은 잘 몰랐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것이 특례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음.
- 동해안은 해양심층수 개발 최적의 장소이나, 제대로 된 발전 못 함. 고성군에서 농공단지 추가 조성 등 많은 투자 중이며 추가 취수관 조성을 위해 다방면 노력 중, 기재부에 국비 신청되어 있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해양심층수 관련 권한 해수부장관→도지사 특례 반영 요청
 - ▶ 2차개정안에 있던 내용임. 심층수의 지정 개발 면허 권한을 앞으로 반드시 가져오겠음.
- 고성 발전 한계, 부족 인프라, 창업여건 부족. 특별자치도 대책과 도움이 있는지?
 - ▶ 얼마전에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의 기획발전특구, 투자선도 지구 지정, 또 우리 법에 첨단 과학기술단지 지정 권한도 가져왔음. 이를 통해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들어오게 되고 창업 기업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70년 전 22사단 창설 이래 마을 낙후, 규제로 인해 해결 안 됨.
 - ▶ 지사님께 많은 권한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오봉산에 개발업자 드나들. 정리해주시기 바람.
- 유원지 2곳이 있음. 규제에 묶여 불편함. 특별히 살펴봐 주시길 요청
 - ▶ 어떤 규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음.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지난 5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고성군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성지역 규제개혁 산림·해양 휴양도시 건설”

찾아가는 특자도 도민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은 지난 5일 군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고성군의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지사는 ‘4대 규제를 풀고 발전하는 자유의 땅’이라는 주제로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농업규제 개혁을 통해 약 40만평의 고성군 토지가 해제될 수 있어 개발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화진포 도지정문화재 해제

등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명준 군수는 강원특자도출범을 계기로 추진할 고성의 발전계획을 소개했다. 함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각종 규제해제로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통일대비자유도시, 산림·해양 복합휴양도시’ 건설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권한 이양에 따른 신속한 추진, 동해북부선 철도 간성역 개발과 관련해 전체 137만㎡ 중 95%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산

▷ 홍천군(7. 6.) / 홍천문화예술회관

홍천군은 수도권 바이오시티 홍천을 위한 5가지 핵심전략 슬로건과 미래비전 등을 설명했다. 내륙순환철도 완성, 미래 건강 K-바이오 첨단도시, 산림치유 청정 휴양 도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질의사항

- 홍천에는 유일하게 철도가 없음. 100년 숙원 사업, 홍천군민의 제일 오래된 염원. 용문-홍천 철도 도정순위 1순위로 채택 부탁. 적극 추진 부탁.
- 홍천군 남면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진행상황? 남면 영상테마파크 공청회 제안. 더 좋은 홍천 수익모델 많이 바람.
 - ▶▶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가시화된 부분이 없음. 홍천 문화관광과에서 장기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
- 홍천, 산림 82%, 국유림 60% 넘음. 국유림에 대한 권한 3차개정 반영 요청, 다만 특례 반영 시 국비지원 감소 우려
 - ▶▶ 이번에 아쉽게도 국유림 권한은 가져오지 못했음. 다만 국유림에 대한 권한은 산림청과 협의해야 함. 앞으로는 국유림도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 드림. 또 저희 법에는 국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넣었음. 과연 실제로 적용될지는 추진해 봐야 알. 선언적인 국비지원이라고 한다면 다음단계에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

○ 언론보도(강원일보)

홍천군 '수도권 바이오시티'로 도약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내륙순환철도 완성 약속
향후 30년 미래비전 선포

【홍천】홍천군은 강원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수도권 바이오 시티, 홍천'을 미래비전으로 향후 30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및 홍천군 미래비전 선포식'이 6일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박경희 홍천군의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등을 비롯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군수는 '수도권 바이오 시티, 홍천'을 위한 5가지 핵심전략 슬로건과 미래비전을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및 홍천군 미래비전 선포식'이 6일 홍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신영재 홍천군수, 박경희 홍천군의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했다. 우선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춘천-영주까지 통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순환철도 완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을 실현하고 수도권 관광족을 비롯한 생활인구가 홍천으로 찾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홍천국가물류센터의 성공적 정착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과 중추적 역

할을 홍천이 담당하는 '미래건강 K-바이오 첨단도시', 규제 특례로 산림지원을 확대한 활용하는 '산림치유 청정휴양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용스마트 제조 플랫폼이 구축되는 '시·어 친화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이 마련돼 도시장년 이 찾아와 정착하고 살기 좋은 '넓은 기회와 땅, 살기 좋은 청

년도시' 등도 미래비전으로 내세웠다.

신영재 군수는 "홍천의 역량을 결집해 '군민이 주연 되는 새로운 홍천', '땀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김진태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4대 규제 묶어 오면 기간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면서 "강원자치도 출범을 맞아 홍천이 지역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홍천은 그동안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핵심 4대 규제에 묶여 오면 기간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면서 "강원자치도 출범을 맞아 홍천이 지역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용기자 hwy@knews.co.kr

강릉시는 환동해권복합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옥계항만 개발 및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종합 발전 전략을 설명하였다.

○ 언론보도(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10일 (월)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릉시가 주관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지난 7일 강릉시청에서 개최됐다.

강특법 활용 환동해권 복합물류도시 도약 구상

강릉시 강원특자도 도민설명회
글로벌본부 민원업무 확대 약속
김 시장, 옥계항만 개발 등 제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릉시가 주관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최근 강릉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과 지역사회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한 PPT발표를 통해 강원특별법의 핵심인 4대규제(산림·환경·군사·농업)혁파와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사는 "강릉의 경우 고도제한 비행장이 있어 군사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관할 부대장을 만나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직접 만나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규제의 경우 강원도 전체 농업진흥구역이 3억 9600만㎡인데 그 중 10% 관할을 가져왔다"며 "강릉에도 264만㎡ 정도 가능하며, 일반농지는 비을 상관없이 다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24일 주문전에 글로벌본부가 드디어 개칭하는데 향후 강릉 시민들이 도청의 일을 보기 위해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모든 민원은 글로벌본부에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강릉시는 환동해권 복합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권역별 강릉시 종합 발전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날 김홍규 강릉시장은 해양신크로드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옥계항만 개발 및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을 언급하며 환동해권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시장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약 70% 이상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데 만약 우리가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항만을 만들면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찾아올 것"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재

영월군은 강원 남부권 거점도시, 살기 좋은 미래 영월 100년 준비 비전 실현을 위한 드론 산업 등 미래산업 특례 발굴, 관광산업 촉진, 맞춤형 교육 특례 발굴 등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 언론보도(강원도민일보)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통과 적극 노력”

찾아가는 강원북자도 도민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11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최경서 영월군수, 신재실 영월군의장 등과 각급 사회단체장, 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 경과와 특례 및 향후 발전 전략이 논의됐다.

김 부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제 발표에서 "영월은 문화예술과 낭만의 지역"이라며 "영월은 36%가 농업진흥지역인 만큼 앞으로 농촌융합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농지전을 위한 이앙 등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군수는 "민선7기부터 이어온 '영월남부권 거점도시, 살기 좋은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11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와 최경서 군수, 신재실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미래 영월 100년 준비' 비전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저음 추진 방향으로 드론산업 등 미래산업 특례 발굴과 산림규제 완화와 인-허가 특례를 활용 관광관광산업 촉진, 농촌융합기반 조성, 맞춤형 교육특례 발굴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영월은 36%가 농업진흥지역인 만큼 앞으로 농지전을 위한 이앙 등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군수는 "민선7기부터 이어온 '영월남부권 거점도시, 살기 좋은

※ 강릉시 및 영월군 : 질의 및 의견 없음

정선군은 2018동계올림픽 이후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 정원 유치, 광역교통망 개선,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 질의사항

-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하고자 하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건의 드림
 - ▶ 정선의 핵심 과제, 실무부서에 전달을 하고 지사님께 보고 드리겠음. 다만, 특례상 검토해 보면 가리왕산의 근본 문제는 유전자원보호구역임. 못 가져온 권한임. 다음번에는 한번 권한을 도지사님이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지차체 공공사업에서 설치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던지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음.
- 영월 정선 삼척 고속도로 예타대상 선정. 예타 통과, 조기착공 등 도 노력 건의 및 예타대상 선정만이라도 권한 가져올 수 있도록 특례 반영 요청
 - ▶ 말씀하신 대로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어려움. 선정되면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정도는 도지사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강원랜드 유일한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사행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각종 규제 또는 범무지도를 함에 따라 경쟁력 약화는 물론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불법 카지노 시설 및 국외 원정 도박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와 규모확대를 위해 매출총량제 폐지 및 출입일수 제한 완화, 게임테이블 머신 수 증대 등 규제 완화 필요. 3차 개정에 꼭 강원랜드 규제완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릴림.
 - ▶ 강원랜드 규제가 2차 개정에 담기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움. 매출총량제, 게임테이블 수라던지, 영업시간, 출입일수, 전부 다 담았으나 막혔음. 사실 이번에 2차개정의 핵심은 4대 규제, 미래산업 기반조성이 우선이었고 3차 개정때는 놓치면 안되겠음.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특례가 들어가야함.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만들어 넣을 계획임. 또 강원랜드 매출액 전체의 40%가 세금으로 들어감. 40% 중에 60%는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고 40%는 우리 해당지역에 나옴. 그럼 60% 가져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은 0.9% 만 주고 있음.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관광개발기금을 만들어서 국가로 가는 것을 조금 가져가고 저희가 더 많이 남겨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할 생각. 이렇게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선 국민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람. 최선 다하겠음.
- 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필요. 지역 자체 고립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 ▶ 해당부서에 전달 하겠음.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군수가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해 어떤 지출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지출한 돈만큼 보전해 주는 것 그것도 검토했었음. 근데 기재부가 워낙 반대해서 못 했음. 3차 개정때 반영을 위해 기재부와 싸워야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겠음.

“가리왕산 국가정원 특례 반영해야”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최승준 정선군수 전의
부지사 “글로벌 도시 실현”

【정선】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정선군이 지역 최대 현안인 3대 정책 과제를 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해 3차 개정안에는 반드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정선군은 12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승준 정선군수와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배왕섭 정선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정선군민을 비롯한 군의원,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전영록 가리왕산올림픽국가정원법과국가정원법국민추진위원장, 정선군 기관·사회단체, 정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가 12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승준 정선군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배왕섭 정선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정선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선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용식 정선부군수는 3대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2018동계올림픽 이후 훼손된 자연환경을 합리적으로 복원하고 1조5,71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5,433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선군의 신성장동력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에 대한 합리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광역교통망 개선

을 위해 동서6축 고속도로, 남북9축 고속도로, 태백선 준고속열차 EMU-150 조기 도입, 경강선과 정선선의 연결의 필요성과 강원랜드의 매출총량제, 출입일수, 이용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완화를 통해 파랑지역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광열 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인 전국 최초

로 재정준치 도입, 동서고속철도 착공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등 사정팔달 인프라 구축, 환경과 개발의 조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승준 군수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정선군의 3대 현안 사업이 특례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인구 소멸과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지금 정선군의 향후 100년을 위해 4만명 정선군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열 부지사는 “328년만에 특별자치도가 됐고 이는 강원도의 발전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좋은 장비를 받은 것 정도이며 아직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다”며 “앞으로 법 개정은 계속되며 자치조직과 재정권, 교육특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평창군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활성화,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특례활용을 통해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설명하였다.

○ 질의사항

- 420번 국도를 따라서 계촌1~6리가 있으나, 계촌 1리만 계획관리지역이 없음. 계획관리지역 지정 청원을 평창군에 했고, 도와 시·군에서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림부에서 농지가 줄어들고 주택 수가 적다고 해서 계속 반려되고 있음. 법률의 규제에 의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으나 주민 피부에 달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함.
 - ▶ 말씀하신 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부분임. 이번에 권한은 가져오지 않았음. 현재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사님께 권한이 넘어와 있음. 다만, 개별적으로는 못 해주고 개발계획에 있어야 함. 좀 더 쉽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음.
- 제주도는 국제학교가 있음. 우리는 2차개정에 포함되지 않음. 다음번 개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 ▶ 이번 2차개정안에 교육특구, 국제학교 못 들어간 것은 정말 아쉬운 정도가 아님. 결국 법사위에서 못 넘었음. 이번에 2차개정을 하면서 국회, 교육부 등을 상대하며 많은 것을 얻었음. 보완 논리를 충분히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릴 것. 3차 개정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림.
- 특별자치법은 규제만 완화할 뿐이지 실제 운영,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손발 벗고 뛰어야 함. 주기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연수, 교육을 통해 발전 상황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건의함.
 - ▶ 말씀하신 대로 평창군 또 도 공무원들의 역량은 무지 중요할 것임. 빠른 시간 내에 주기적으로 직원 역량을 높이는 교육, 연수 추진하겠음.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13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평창군 지속가능 글로벌 올림픽도시 거듭”

산악관광 활성화 등 전략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은 13일 오후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 경과와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특례를 활용한 평창군의 발전전략을 발표한 후 향후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김지사는 강원특별법 전방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4대 규제 혁파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개정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림휴양숙박시설과 궤도 설치 등 대관령지역의 산악관광 활성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군수는 평창군 특화전략으로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활성화’와 ‘농업중심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조성’, ‘농지와 환경특례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 향후 과제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동계올림픽 도시’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특례를 제안했다. 심현태

태백시는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장성 광업소 부지 활용 핵심 광물 국가산업단지 조성, 원료산업 육성 지원 등 특례 활용 발전전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 질의사항

- 3차개정을 앞두고 지역개발 방향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하는데, 태백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고 반드시 이뤄야 할 특례가 무엇인지?
 - ▶ 태백은 88%가 산림, 핵심은 산림 자원 관광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봄. 매봉산 산악 열차, 태백역~매봉산 트랙, 매봉산에서 가덕산까지 쪽 이어가면, 풍력단지 등 전망을 보면 최고의 관광지가 된다고 보고 있음.
- 태백은 강원 남부지역, 폐광지역의 과거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에너지를 담당했던 중요지역이었으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해 지역은 날로 피폐화, 공동화 가속화 되고 있음. 폐특법 연계되어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을 것. 어떤 것이 있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 폐광산업 대체산업, 반드시 특례에 담도록 해야 함. 과학기술단지, 핵심광물사업단지가 들어와야 함. 법에다 특례를 담아서 할 수 있어야 장기적 발전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음. 또 카지노에 대한 매출총량제, 영업시간 제한, 또 수입에서 덜 가고 많이 남기게 하는 부분, 또 면세점 등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한게 많음. 2차개정 안에 담았었는데 최종안에 못 담음. 꼼꼼히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겠음.
- 현재 태백시에 쉬고 있는 정수장이 3개소가 있음(백산, 원동, 화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을 환경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 필요
 - ▶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음. 해제하려면 수도법상 대체 수도시설이설치돼야 할 수 있음.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음. 근본적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2차개정 노력했으나 실패.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하면 입지상 상수원 보호구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큰 틀에서는 다 가져와야 함. 다만,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면 공장설립 제한지역이 되고 제한지역 안에서 공장설립 승인지역이 또 있음. 그것을 확대하려고 함. 두 번째는 공장 가능 업종이 있음. 그걸 확대 하는 방법이 있음. 우선 1단계는 공장을 좀 들어올 수 있게, 또 공장설립 승인지역을 권한을 가지고 완화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도지사님께 권한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음.
- 내년 6월 마지막 남은 대한석탄공사 조기 폐광이 됨. 태백시 미래전략 산업 부서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함. 이에 대해 도에서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인지? 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자료를 보면 5가지 항목 중 4가지 '적합'판정이 돼 있음. 4가지 중에 1가지 '부적합'판정이라고 해서 통과가 될 수 없는 건지?
 - ▶ 검토하지 못한 부분임. 4가지 중 1가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특례 담을 때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음.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지난 14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장, 이경숙 태백시의회 부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백을 바이오매스 청정수소산업 특구로”

김 지사 특자도도민설명회서 강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4일 태백을 방문해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략산업 특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도민설명회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휴양과 함께 전략산업도 중요하다”며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전략산업 특구를 만들어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소방서 신축, 준고속철도(EMU-150) 부담 비용 경감, 교통망 확충 등 현안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상호 시장은 “도농복합지역이 아니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인구 4만명이 깨졌음에도 2023년 시예산 5125억원으로 시작하는 등 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며 “향후 4년간 2조 원대 예산을 도입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되면 태백에서 인접 시·군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며 “장성광업소부지 활용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 조성, 원료산업 육성 지원 등 폐광 대비 대체산업을 다각도로 발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떠나지 않는 태백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열

철원군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전략과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에 따른 철원군 전략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질의사항

- 법 제6조,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는 군사시설 보호법도 우선한다는 뜻인지?
 - ▶ 전체 우선한다는 뜻은 아님. 이 법에서 “~에도 불구하고 ~에 따른다”만 우선함.
- 법 제50조, 농업진흥지역 해제 4천만㎡로 한정, 18개 시·군 면적 도에서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계획?
 - ▶ 시·군별 비율로 나누지는 않을 것.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해제할 것. 개인과 특정인에 푸는 일은 없을 것. 추가로 계곡과 계곡 사이 100m 이내 절대농지는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이 부분은 별도로 해제해 달라고 해볼 것.
- 법이 내년 6월 시행,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하려면 절차들이 있을텐데, 3년 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절차 모든 것 다 따지려면 시간 너무 소요됨. 절차 간소화 필요. 조례안에 예를 들어 “1차 심의는 사업계획서로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음.
 - ▶ 가능하다고 봄.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
- 국방부 땅 취득 시 현금취득, 분할납부 가능 근거 명시 요청
 - ▶ 조례에 담긴 어렵고 3차개정 준비하고 있는데 기재부 권한도 가져올 수 있도록 담겠음.
- 국방부 부지 내 건축물 취득 시 대부분 대지가 아님. 그 건축물 합법적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근거 명시 필요.
 - ▶ 국유재산 취득·처분은 기재부가 하는 것, 말씀하신 내용 싸워서라도 가져와야. 실무진 검토하고 있음.
- 국방부 땅 자체 법령에서 보면 10년 동안 사용계획 없을 시 매각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파악 불가능. 이 부분에 대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 ▶ 군사규제 관련 기본적으로 근거 담음, 내년 6.8일부터 해볼 것. 다음번에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따져서 효과를 내야 됨.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

“특별법 활용 철원 농업·군사 중첩규제 완화”

찾아가는 강원특자치도 도민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와철원군은 17일 철원관광정보센터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현중 철원군수, 함기호 국회의원, 박기준 철원군 의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 경과와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특례를 활용한 철원군의 발전전략을 발표

표한 후 향후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군사·농지·산림·환경 등 4대 규제 허파와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특례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우 철원부군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 전략과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에 따른 철원군 전략사업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17일 철원관광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이현중 철원군수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군의 농업·군사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미활용 군용지 등을 활용한 각종 전략 사업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경제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철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과 특례를 적극 발굴해 계속해서 강원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명회’ 개최 시 도민들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은 설명회 종료 후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워킹그룹에 분과별로 전달되었다. 이후 워킹그룹별 회의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담당자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발굴에 반영하였다.

아직 강원특별법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자체 제작한 해설서 및 핸드북, 웹툰을 통해 강원특별법에 담긴 내용 및 각 시·군별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특례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 및 시행령 제정(예정)에 따라 권역별로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과제

특별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도 모델로 강원 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정 기조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입증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모범이 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법 조문이 363개였던 것과 다르게 강원 특별법은 23개에 불과했고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을 통해 8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도·시·군이 함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에 맞게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출범 이후 수많은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가 이관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권한 이양 시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이 특별자치도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타 특별자치시·도처럼 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도입(관광, 해양, 산림, 수자원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와 시·군 간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제도는 차등적 지방분권(asymmetrical devolution)과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내용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적으로 부여된 자치권의 수준과 달리 추가적으로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반영된 권한과 특례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지역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고 꼭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시·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활용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미래산업 선도 지역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자치분권의 발전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1 강원특별법 개정 현황

6.1.1 강원특별법 1차 일부개정 추진경과

-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2022. 6. 23.
*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노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위) 각 대표발의
- 의원 발의(2개 법안) 국회의원실 방문 협의·건의 : 2022. 7. 12.
- 국무총리비서실 차순오 정무실장 방문 건의 : 2022. 7. 19.
* 총리실 김민 정무기획비서관, 조홍남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배석
- 국회의원실 방문 건의 : 2022. 7. 19.
* 허영·노용호 국회의원실, 권성동 국회의원실, 박정하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건의 : 2022. 7. 19.
- 국무총리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방문 : 2022. 7. 20.
*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지원단 시스템 및 운영실태 논의 등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와 방문 건의 : 2022. 7. 20.
* 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국장), 자치분권제도과장(김상진) 특별자치도 지원 건의
-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제출(도 → 행안부) : 2022. 7. 22.
*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대안입법 수정), 지원위원회 필요성 의견 제출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완료 : 2022. 7. 22.

▶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국 - 울산남구갑 / 간사 이만희^국 - 경북영천청도 / 간사 김교홍^민-인천서구갑)

○ 국회 행안위 위원장, 양당 간사 (내정자) 방문 건의 : 2022. 7. 26.

※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법안소위) 구성 완료 : 2022. 8. 8.

○ 강원도지사, 행안부 장관 협조 건의(통화) : 2022. 8. 9.

○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실, 수석전문위원실 방문 설명 : 2022. 8. 9.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외 4개과 방문 설명 : 2022. 8. 23.

* 재정정책과장(이동욱), 교부세과장(서장훈), 지방세정책과장(이현정), 부동산세제과장(김남헌), 지방세특례제도과장(권순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건의

※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 구성 완료(2022. 9. 1. ~ 12. 9.)

▶ 9. 27.(화), 10. 27.(목), 11. 10.(목), 11. 24.(목), 12. 1.(목), 12. 2.(금) 12. 8.(목)

○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외 위원실, 사무총장, 입법조사관 방문 건의 : 2022. 8. 24.

* 허영·노용호 국회의원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김홍준 입법조사관

○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실, 도내위원실 방문 건의 : 2022. 8. 25.

○ 강원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현안 간담회 건의 : 2022. 8. 29.

○ 특별자치도 추진 행안부-강원도 제2차 정례협의 : 2022. 8. 30.

※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

- 법안소위에서 심사될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행안부 검토의견 조속히 제출 및 전문위원실 협의)
- 강원도에선 지역구 위원 통해 행안위 위원 설득 및 입법조사관 등 대응 요청

○ 지원위원회 설치 행정부지사 국회 방문 건의 : 2022. 9. 2.

* 이채익 위원장, 김교흥 행안위간사(민), 이광재 사무총장, 법사위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국회 행안위 법안상정 및 법안소위 심사 건의

○ 행정안전부 「개정법률안」 정부 최종의견 제출 : 2022. 9. 6.

※ 정부 최종의견

- 일부수용 : 관계부처 소관의 각종 행·재정 특례 등이 원활히 발굴·부여 되기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나 추후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세종 지원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추후 유사 위원회와 통합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검토

- 강원도지사, 개정법률안 통과 국회 방문 건의 : 2022. 9. 13.
* 이만희 간사(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허영 의원, 조응천 의원, 조은희 의원 등
-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 2022. 9. 14.
-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상정/심사 업무협의 방문 : 2022. 9. 15.
* 추진단(제도팀장 등), 서울본부(본부장 등)
** 이체익 위원장실, 행안위 전문위원실(김홍준 입법조사관), 김교홍 간사실, 이만희 간사실
*** 허영 국회의원실 방문(대정부질문 건의 협조 요청)
-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의결 : 2022. 9. 20.
-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 2022. 9. 20.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사 업무협의 : 2022. 9. 22. ~ 23.
*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전문위원(한석현), 입법조사관(백상준)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의결 : 2022. 9. 26.
* 법사위 행정안전위원장 대안 의결(일부 경미한 자구수정)
- 국회 본회의 의결 : 2022. 9. 27.
* 행안위 이만희 의원(여당 간사) 제안설명, 총230명 재석 중 228명 찬성, 기권 2명(이태규·이용호 의원)
- 제45회 국무회의 의결 : 2022. 10. 11.
-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2022. 10. 18.(시행 : 2023. 1. 19.)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6.1.2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 추진경과

- 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현안업무(행안부) 협의 : 2022. 11. 3.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후속입법 업무협의 : 2022. 11. 4.
 - * 국회 행안위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 행안위·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
- 행·재정 특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2022. 11. 14.
-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협의 국회 방문 : 2022. 11. 28.
 - * 전북법 행안위 법안1소위 통과 동향
- 강원도-행안부 정례협의(4차) : 2022. 12. 2.
 - * 행안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김상진 지방자치분권과장, 서정훈 교부세과장, 장유진 사무관, 국조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협의 국회 방문 : 2022. 12. 7.
 - * 전북법 법사위 동향
-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협의 : 2022. 12. 13.
 - * 국조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과장, 김양욱 서기관, 강성현 사무관), 행안부 조직기획과(과장, 김형언 사무관, 윤열 주무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의 : 2022. 12. 23.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지역균형발전실장(지역개발분과 특례 자문)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입법조사관 면담 국회 방문 : 2023. 1. 3.
 - * 국회 행안위 김홍준 입법조사관
-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설명회 개최 국회 방문 : 2023. 1. 10.
- 강원특별법 관련 업무협의 국회 방문 : 2023. 1. 16.
 - * 허영·이양수·유상범·이철규·송기현·노용호·권성동·박정하·한기호 의원실 보좌관
- 강원특별법 관련 업무협의 국회 방문 : 2023. 1. 18.
- 강원도-행안부 정례협의(5차) : 2023. 1. 19.
 - *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과장 김상진, 박주언·박세홍 사무관)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 방문 : 2023. 2. 6.

* 국조실 정훈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각 과 과장(4), 강원지원과 직원(6), 행안부 김민재 지방행정정책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김선조 균형발전지원관, 이동욱 지방재정정책관, 진명기 지방세정정책관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대표 등 86인) : 2. 6.

○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산림청 설명회(서울 산림조합중앙회) : 2023. 2. 9.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정책과장, 국유림경영과장, 산림휴양등산과장, 산지정책과장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대통령 건의(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2023. 2. 10.

* 전북도청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약 : 2023. 2. 13.

* 국조실 박구연 국무1차장, 행안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 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약 국회 방문(자치법령과장) : 2023. 2. 14.

○ 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약 국회 방문(도지사 방문) : 2023. 2. 15.

* 유상범·이만희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국정운영실장) 강원특별자치도 현장방문(춘천, 원주) : 2023. 2. 22.

* 남형기 국정운영실장, 박광섭 강원지원과장, 최희준 사무관

※ 도지사 면담, 특별자치국 간담회, 강원대 강소특구 지원센터 방문, 더존비즈온 강촌 캠퍼스 방문(강원도 정밀의료산업규제 자유특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방문(디지털헬스케어, 반도체 클러스터)

○ 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약 국회 방문(특별자치국장 방문) : 2023. 2. 24.

* 국회 행안위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 허영 의원실

○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환경부(세종정부청사) 설명회 : 2023. 2. 28.

*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물통합정책관, 물환경정책관, 수자원정책관, 자연보전국, 환경보건국 담당사무관

○ 강원특별자치도 업무협약 국회 방문(도지사 방문) : 2023. 3. 2.

* 유상조 행안위 수석 전문위원, 김웅 의원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대응 TF 구성·운영 : 2023. 3. 9.

* 특별자치국+서울본부+국회 도 지역구(비례대표 포함) 의원 보좌관 카톡방 개설

○ 강원특별법 관련 특례 워크숍(국조실, 강원도) : 2023. 3. 9. ~ 10.

* 국조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박광섭 과장, 이승욱 사무관, 윤성진 사무관, 서민경 사무관, 유희방 사무관, 최희준 사무관, 백순란 사무관, 오순덕 주무관)

※ 4대 핵심규제(환경, 산림, 국방, 농지), 전략산업·지역개발(첨단, 관광, 균형발전 등), 행·재정, 교육(인사, 조직, 지방재정, 교육자치 등) 42개 특례 중심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논의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도지사 방문) : 2023. 3. 13.

* 국회 행안위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 국조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 국회 방문 : 2023. 3. 15.

* 여야 간사실, 행안위 전문위원실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 국회 방문(특별자치국장 방문) : 2023. 3. 17.

* 국회 행안위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 이양수 의원실, 행안위 전문위원실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대응 도의회 지원 특위 카톡방 운영 : 2023. 3. 20.

* 특별자치국, 강원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카톡방 개설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 국회 방문 : 2023. 3. 21.

*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 국회 방문(특별자치국장 방문) : 2023. 3. 22.

* 김교흥 간사(법안심사1소위원장)-허영 국회의원 면담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 국회 방문(특별자치국장 방문) : 2023. 3. 24.

*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실(국방분야 대책회의), 박정하 의원실(원주 관련 등)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및 현장방문 : 2023. 3. 30.

- 민간위원 위촉(9명), 회의안건*(2건), 현장방문(더존비즈온, 강원도 정밀의료규제자유특구)

* 강원지원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강원특별자치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김영선 도 행정부지사(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배석) 국무총리 지원위원회 안건 사전보고 : 2023. 3. 27.(월)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심사 대응 국회 방문(특별자치국장 방문) : 2023. 4. 3.
* 국회 노용호·이양수·유상범·박정하·송기현·허영 의원실 보좌관
** 법안심사 대응 전략 및 협상안 논의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대정부질문(노용호 의원-국무총리) : 2023. 4. 3.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폐기 성명서 발표(한국환경회의) : 2023. 4. 4.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국회 방문(행정부지사 방문) : 2023. 4. 6.
*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행안위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실, 행안위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시도협·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도지사 방문) : 2023. 4. 6.
* 시도협 회의 시 건의(회장 경북도지사 이철우),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대통령)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중앙부처 방문 : 2023. 4. 7.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중앙부처 방문 : 2023. 4. 10.
*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상황 주례회동(국무총리-대통령) : 2023. 4. 10.
* 각 부처별 특례 반영 추진 상황 점검·보고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중앙부처 방문 : 2023. 4. 13.
* 과기부, 해수부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반대 집회(한국환경회의, 광화문광장) : 2023. 4. 13.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국회 방문(행정부지사 방문) : 2023. 4. 14.
* 국회 김교흥 의원실(인천 지역구 의원실 방문)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국회 방문 : 2023. 4. 17.
* 국회 행안위 위원장실, 여야 간사실, 허영 의원실, 행안위 전문위원실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국무조정실 방문 : 2023. 4. 18.
* 국정운영실장 주재 환경부, 농림부 특례 협의(환경부, 농식품부 국장 참석)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방문(도지사 방문) : 2023. 4. 19.
* 국회 행안위 김교흥 간사(법안심사1소위원장)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국회 방문(특별자치국장 방문) : 2023. 4. 24.
* 국회 권성동·이양수·허영 의원실 방문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국회 방문 : 2023. 4. 26.
* 국회 김교흥·이만희·권성동·허영·노용호 의원실 방문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반대 기자회견(한국환경회의) : 2023. 4. 26.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교육부 방문(도지사 방문) : 2023. 4. 27.
* 이주호 교육부장관 면담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국회 방문(특별자치국장 방문) : 2023. 4. 28.
* 국회 권성동 의원실, 행안위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실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국회 방문(자치법령과장 방문) : 2023. 5. 1.
* 국회 김교흥·이만희·권성동·허영 의원실, 행안위·법사위 전문위원실 방문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대안법안 작업 : 2023. 5. 3.
*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유상조 수석전문위원, 신홍철 입법조사관)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국무총리 건의(도지사 방문) : 2023. 5. 3.
* 중앙지방안전상황점검회의 시 건의(재난안전실 주관 회의)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국회 방문 : 2023. 5. 4.
* 국회 행안위 김교흥·이만희 간사 의원실, 허영·권성동 의원실, 행안위 행정실
- 강원특별법 개정 업무협약(입법공청회 사전설명) : 2023. 5. 9.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김교흥·정우택·이해식·천준호·송재호·조응천·김용판·조은희·박성민 의원실)
-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공청회 대비 사전 전문가 회의 : 2023. 5. 9.
* 서울역 인근 회의실(특별자치국장, 자치법령과장, 자치분권과장, 김범수 박사 등)
- 강원특별법 개정 국제학교 관련 건의(특별자치국장) : 2023. 5. 10.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특별자치 시도지원단장) 건의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 2023. 5. 10.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 5. 10. 10:30,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국회 본관 445호)

* 진술인 :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범수(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국회 방문 : 2023. 5. 16.
* 국회 이만희·김교흥·조응천·조은희 의원실, 행안위·법사위 전문위원실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점검회의(행안부) : 2023. 5. 17.
* 행안부(안승대 국장, 김상진 과장), 각 부처 특례 담당사무관 등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국회 방문 : 2023. 5. 18.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 의원실((8)천준호, 송재호, 조응천, 정우택, 이해식, 김용판, 조은희, 박성민)
- 강원특별법 개정 관련 업무협약의 국회 방문 : 2023. 5. 19.
* 국회 행안위 장재원 위원장, 행안위 위원 의원실(박성민, 김철민, 오영환, 김용, 조은희, 임호선, 이성만, 용혜인, 전봉민, 김기현, 문진석, 최기상, 이형석)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1소위 법안심사자료 입수·검토 : 2023. 5. 22.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도민 결의대회(상경) : 2023. 5. 22.
* 국회 본청 앞, 1,000여 명 집결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 농성(국회 본청 앞) : 2023. 5. 22. ~ 24.
* 도지사, 도 국회의원, 특별자치국, 서울본부
- 행안위 법안심사자료 문제점/대안 자료작성 및 대응 : 2023. 5. 22. ~ 24.
*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별 방문설명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강원도의회 1인 릴레이 시위 : 2023. 5. 23.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입법 긴급대응(행안위 위원) : 2023. 5. 23.
*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실 사전설명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의결(소위, 전체회의) : 2023. 5. 24. 오후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입법 긴급대응(법사위 위원) : 2023. 5. 24.
* 법사위 위원 사전설명(국민의힘, 시대전환 : 개별대응 / 민주당 : 허영의원실 일괄 대응)
** 행안위 의결자료 기준 설명자료 수정, 24일 오후 긴급 사전설명 대응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법사위 전문위원실 대응 : 2023. 5. 24. 18:00 ~ 22:00
*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확인·대응(검토보고서, 주서본)
**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이정미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등 국회 긴급대응 : 2023. 5. 24. ~ 25.
* 총7명(특별자치국장, 자치분권과장 외 5명) 서울 영등포 호텔 1박2일 숙박 대응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법사위 의결 : 2023. 5. 25. 오전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의결(숙려기간 5일 미도래 의결)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 2023. 5. 25. 오후
 *** 본회의 표결 중 정의당 이은주 의원 긴급 반대토론, 표결 다시 진행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안 정부 이송 : 2023. 5. 26.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통과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정의당) : 2023. 5. 26.
 * 정의당 이은주 대표, 한국환경회의 등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23. 5. 30.
- 강원특별법 문제점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정의당) : 2023. 6. 2.
 * 정의당 이은주 대표, 한국환경회의 등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안 공포(전자관보) : 2023. 6. 7.

6.2 강원특별법 제·개정 경과

6.2.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정부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1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4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8875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강원도의 폐지)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강원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강원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임명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사무와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강원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6.2.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9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법」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 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제10조의3(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제11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4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8994호, 2022.10.18.>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6. 8.] [법률 제19427호, 2023. 6. 7., 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 ②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도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시행일: 2023. 6. 11.] 제10조제8항, 제10조제9항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4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자치재정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위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위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자연생태·생명·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수자원·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5.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6.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쳐야 한다.
- ③ 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 자치도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49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도지사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나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춘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⑧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도지사는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⑩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자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진흥지역은 같은 법 제10조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기준(같은 조 제1항의 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지정·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등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정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 ③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⑤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0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 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시·군 관할구역의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적이 4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강원자치도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제57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또는 국제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2.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또는 2만톤급 이상의 잡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제2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제59조(탄소중립 녹색자치도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 방향) ① 강원자치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하여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자연·생태자원 중 희소성 및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생물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강원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2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강원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형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인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사업(「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지역에 강원자치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5편 보 칙

제74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5조(해외협력) 강원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76조(국가공기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78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78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예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 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 칙

제82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강원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2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84조(과태료)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9427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 부칙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강원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11일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 조례 및 강원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 [시행일: 2023. 6. 11.]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27조제1항 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강원특별자치도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3 강원특별자치도 핸드북

1



2



3



목 차

01 강원특별자치도가 뭐예요? | 2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 4

03 어떤 미래가 올까요? | 18

04 로고와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 22

- 1 -

4

01 강원특별자치도가 뭐예요?

“01 강원특별자치도가 뭐예요?”

강원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강원도가 특별한 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강원도만의 문제나 필요한 일을 스스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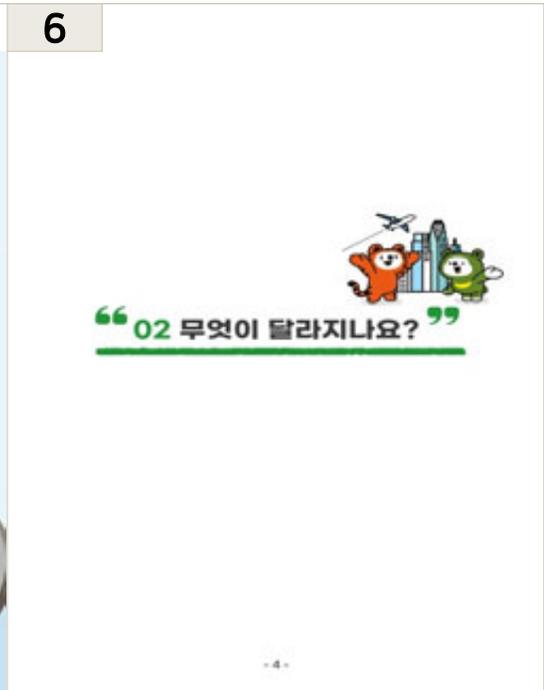
왜 특별자치를 하는거죠?



✓ 우리도 좀 잘 살아보려고요. 수도권 물 공급에, 산림보호에, 접경지역에, 강원도는 늘 규제가 많아왔어요. 희생의 대가는 지역소멸이라는 위기로 돌아왔죠.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땅에서 규제의 족쇄를 풀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겁니다.



- 2 -



9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1 멋진 산악관광 할 수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면적의 82%가 산림입니다.
이 중에 규제를 받아서 못 쓰는 땅이 90%에 이르죠.

**이 소중한 자원을 그냥 내버려둬니까?
이제 우리도 스위스처럼
멋진 산악관광 할 수 있어요!** ★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높이는 산허리까지, 경사도도 25%가 넘으면 못했어요.



또, 백두대간에는 얼마나 케이블카 같은 것도 못 했죠.
이제는 더 높은 곳에, 더 경사진 곳에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악관광열차 타고 대관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멋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죠.
거기서 보는 동해바다가 얼마나 멋진지 상상해보셨어요?

- 7 -

10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이제는 더 경사진 산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준 설치하려는 곳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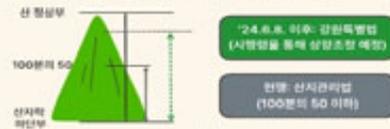
이제부터 지금보다 더 경사진 곳에서도 가능



2. 이제는 더 높은 곳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준 산지의 정상에서 하단까지의 50% 이하에서만 가능

이제부터 50% 기준을 넘어 더 높은 곳에서도 가능



- 8 -

11



- 9 -

12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2 환경과 개발, 우리가 결정합니다.

개발을 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고 미리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요. 이걸 중앙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내거나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장관한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야 하는 거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아시죠?
착공에만 41년 걸렸던 거.
그게 환경영향평가만 8년을 허비했어요.



**이제 강원자치도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 10 -

13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왜냐구요?

이제는 도지사가 하거든요
맨 처음에 큰 틀에서 계획할 때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라는게 있어요. 그것만 빼고 모두 다 합니다.

산양 목에 위치추적장치를 달라는
최소한 환경영향평가, 이제는 안 해요.
우리지역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환경도 지키면서 지역발전 함께할 수 있죠!



14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3 농사도 못 짓는 농지, 멋지게 개발할 겁니다.

철원에 가면 실제로 있는 농지면적보다
규제를 받는 면적이 더 많은 거 아세요?
궁여가 다시 태어나도 나라는 못 세워요.
농지규제 때문에 궁궐을 못 짓거든요.

이제 강원자치도에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었던
옛날 절대농지를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도지사가 풀 수 있습니다.

농지로 묶어있는데
실제로는 농사도 못 짓는 땅들,
이제는 잘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12 -

15



- 13 -

16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4 군부대가 떠난 빈 땅, 잘 활용합니다.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빈자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요?
놓았죠? 왜 놓았나요?

군부대가 사용하던 땅은 토양오염이 심해요.
그걸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국방부가 돈을 못 구해서 잘 안해 왔어요.

✓ 그럼, 이제 강원자치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지사가 먼저 우리 돈으로
오염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우리 돈은
어떻게 해요?
그 땅 살 때 땅값에서
제한 수 있어요.

- 14 -

17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5 우리가 생산한 먹거리, 이제 군인들이 바로 먹습니다.

이제 우리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들은 군부대하고 직접 계약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는 소득이 늘고, 군인들은 신선한 먹거리 먹고, 물류비용 안 들고, 일석 삼조네요.

- 15 -

18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6 반도체, 첨단산업, 우리도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원래 중앙부처 장관들만 할 수 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도 못 해요.

하지만, 강원자치도지사는 요청할 수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지정받아서 뭐 할까요?



첨단과학기술단지 만들어야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특구도 그 전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했거든요.

이제 강원자치도에는 연구개발특구도 만들 수 있어요.

- 16 -

19

02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우리도 자유무역항구를 가집니다.

자유무역항구 하나 가지려면 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요. 지금까지는 그걸 못 맞춰서 지정 못 받았어요



하지만, 강원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우리도 어엿한 자유무역항구를 가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어요!

- 17 -

20

03 어떤 미래가 올까요?

“03 어떤 미래가 올까요?”



시흥발달 어디든 달는 곳!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넘치는 곳이 될 겁니다!



- 18 -

21

03 어떤 미래가 펼쳐요?

1 **사통팔달 인프라 구축**

대한민국, 세계 어디든 달지 않는 곳이 없겠죠.



22

03 어떤 미래가 펼쳐요?

2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집경지역·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산업·반도체 모두 발전할 겁니다.



23

03 어떤 미래가 펼쳐요?

3 **5대 관광벨트**

매력적인 관광지가 넘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24

04 로고와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2023 '굿디자인 어워드' 상 받은 건 안 비밀! ★

“ 01 심볼마크와 로고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취적이고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했어요.

1 심볼마크



2 로고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인 훈민정음의 첫 번째 초성 한글 'ㄱ'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취임을 강조하고 그 자부심을 표현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글씨만으로 이루어진 로고가 탄생하였습니다.

“ 02 강원어와 특별어 ”

대한민국하면 역시 호랑이!
강원도 하면 역시 반달가슴곰이죠!



강원어

사람스러운 외모와 다르게 험난한 산속에서 자란 호랑이는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출만하고 강인한 정신력과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에서 도민들을 지키는 용감할까지 가지고 있지요.

특별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조목색이 된 반달가슴곰은 청정 자연의 기쁨 받고 자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태백산 골짜기에서 낚장자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친구지요.



“ 03 Gangwon State ”

강한 자치권을 갖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의지를 표현했어요!

1. 강원특별자치도 = Gangwon State

“State”는 국가 또는 강한 자치권을 가진 주(州)를 뜻해요. 특별자치의 핵심인 강한 분권의지를 표현했어요.

2.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
Global City for Industries of the Future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산업 도시를 지향합니다!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6.4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명단

연번	이름	연번	이름	연번	이름	연번	이름
1	김순은	31	이지혜	61	제대식	91	차미숙
2	김주원	32	박준식	62	김수정	92	박기관
3	신승춘	33	정종철	63	한정길	93	마강래
4	김영미	34	신윤창	64	박전규	94	장희순
5	김경아	35	김용구	65	홍형득	95	김현수
6	하동현	36	신현기	66	최재홍	96	변병설
7	홍준현	37	이상훈	67	김태형	97	임호균
8	하혜수	38	여형구	68	신병주	98	문일재
9	이기우	39	서영총	69	전명산	99	사득환
10	최병수	40	고병욱	70	최종욱	100	유기준
11	윤창렬	41	박준규	71	김주연	101	김남형
12	민기	42	주원석	72	기정수	102	강광규
13	김수연	43	황영훈	73	이주연	103	장원석
14	변주영	44	황만석	74	지영림	104	김흥식
15	최연혁	45	류시영	75	고광만	105	최재용
16	이기원	46	한범수	76	박준규	106	최정기
17	김홍진	47	허희영	77	성보경	107	이경일
18	엄규리	48	김현	78	이주석	108	변우혁
19	홍근석	49	김소민	79	조진행	109	이기의
20	김홍환	50	이강오	80	김학소	110	박계호
21	이재원	51	손학기	81	김수봉	111	박일재
22	이원희	52	우종춘	82	윤형로	112	김상우
23	유태현	53	최인화	83	한현욱	113	송병일
24	손희준	54	김준순	84	안무엽	114	최창규
25	조성호	55	최무열	85	김진백	115	김용우
26	최광익	56	김병기	86	주혜란	116	김일환
27	정상은	57	이동철	87	홍성한	117	하영재
28	박종구	58	김광섭	88	최유석	118	탁부영
29	최돈민	59	김인호	89	이한준		
30	김광래	60	이기대	90	이제원		

6.5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명단

연번	이름
1	허영
2	한기호
3	박정하
4	송기현
5	권성동
6	이철규
7	이양수
8	유상범
9	노용호
10	주호영
11	김성원
12	이용
13	맹성규
14	윤호중
15	이용우
16	이재오
17	김우영
18	전성
19	원창묵
20	한호연
21	박상진
22	김주환
23	김정우
24	정문현
25	이수희
26	이응우
27	박근철
28	김재구
29	문일재
30	최수영

연번	이름
31	박형배
32	양희구
33	이건실
34	최윤
35	윤장훈
36	이정운
37	전영록
38	김효종
39	이돈섭
40	이덕하
41	홍기중
42	유계식
43	전금순
44	전상수
45	김천수
46	전상우
47	김덕배
48	장세국
49	김왕제
50	이광재
51	박광구
52	황학수
53	김승남
54	김종해
55	신달순
56	임학운
57	정인억
58	백명현
59	박윤종
60	황종석

연번	이름
61	이황일
62	송성규
63	백홍열
64	김천수
65	홍장표
66	김영철
67	신춘구
68	이동석
69	이해규
70	최오길
71	이해선
72	원근식
73	류영균
74	김용태
75	정명교
76	박영현
77	강광원
78	김석준
79	한재영
80	안병현
81	조재철
82	진범식
83	남성국
84	이창범
85	강길선
86	최예희
87	곽희준
88	심창섭
89	서만봉
90	권순규

연번	이름
91	김종배
92	이성규
93	지창무
94	최현일
95	천필국
96	김귀자
97	전제홍
98	김미림
99	이태용
100	윤경란
101	차명훈
102	권혁건
103	김민기
104	김영도
105	김창수
106	박승갑
107	박연화
108	서동면
109	이우섭
110	이지학
111	장옥선
112	전찬민
113	전창표
114	조병우
115	최형태
116	김종현
117	진현기
118	양민구
119	김형득
120	허근영

연번	이름
121	강석호
122	권오광
123	지형근
124	하광운
125	지승연
126	오창희
127	이극상
128	장덕수
129	이금선
130	최무열
131	박승균
132	한두삼
133	박동언
134	조창진
135	고광만
136	김규태
137	정희수
138	엄정용
139	박성울
140	오인철
141	박용석
142	전영석
143	강진원
144	손호돈
145	안종관
146	최인숙
147	석기동
148	심재룡
149	김형숙
150	고병남
151	정준화
152	이승호

연번	이름
153	박동수
154	최종봉
155	우용철
156	김재국
157	주영래
158	이봉희
159	이규설
160	권용준
161	방언섭
162	최창선
163	임채혁
164	유종근
165	임영준
166	홍성철
167	최현
168	한명철
169	조정섭
170	조호순
171	최호영
172	전억찬
173	김용욱
174	엄광열
175	염돈설
176	이강훈
177	박진한
178	남창진
179	강석도
180	유종국
181	김익중
182	김진권
183	이봉찬
184	한세범

연번	이름
185	정호영
186	김준우
187	최종주
188	전명준
189	이성용
190	정운교
191	전건택
192	최윤길
193	신완철
194	최구영
195	조광운
196	정영호
197	안범진
198	조경묵
199	김윤영
200	왕수비
201	홍윤식
202	홍남기
203	이한준
204	여형구
205	서영총
206	송병일
207	노수현
208	박재울
209	이두영
210	전만경
211	전만복
212	장태수
213	전진표
214	오세인
215	이호
216	홍석진

연번	이름
217	권혁중
218	김두환
219	김동수
220	손득중
221	최창규
222	안동규
223	이재한
224	최찬호
225	배진환
226	고연섭
227	원용기
228	김기동
229	이용규
230	김상호
231	이상진
232	임병삼
233	정연배
234	박수홍
235	김홍길
236	조명수
237	정경균
238	이요원
239	최광익
240	한창오
241	권오규
242	방재흥
243	이우식
244	이공우
245	윤용호
246	윤재선
247	이상배
248	임채홍

공공임업은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 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로 시로

홍도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

연번	이름
249	현진권
250	배인식
251	이금옥
252	박유남
253	홍두표
254	이귀인
255	김영준
256	신천균
257	윤세영
258	박진오
259	경민현
260	허인구
261	박종원
262	김종규
263	송형근
264	김영호
265	지환
266	임보연
267	이경범
268	정현
269	주두환
270	최삼규
271	전창협
272	윤명식
273	고주룡
274	권동형
275	배재성
276	김동호
277	박성원
278	박기호
279	심윤희
280	김무중

연번	이름
281	김종필
282	강국진
283	오주영
284	양솔휘
285	지홍구
286	성열홍
287	박종진
288	최원규
289	강명일
290	주영진
291	강의영
292	김순은
293	김현영
294	최양희
295	김덕현
296	반선섭
297	김응권
298	권명중
299	이상철
300	우형식
301	왕덕양
302	정창덕
303	심윤숙
304	이원희
305	허희영
306	김영미
307	이재원
308	이경일
309	김홍환
310	하동현
311	민기
312	유태현

연번	이름
313	손희준
314	이기원
315	차미숙
316	한범수
317	이주연
318	하혜수
319	홍준현
320	이기우
321	안무엽
322	최진혁
323	채원호
324	정순관
325	소순창
326	김춘호
327	이동훈
328	고경훈
329	이재섭
330	박양호
331	한표환
332	문규
333	송정부
334	김광래
335	김기석
336	조주복
337	김현호
338	박준동
339	김승호
340	김주원
341	이승호
342	최돈민
343	유원근
344	김대영

연번	이름
345	유근배
346	구봉진
347	양준모
348	조동근
349	신중섭
350	김인영
351	지연옥
352	최한결
353	권혁준
354	유동구
355	백원중
356	황정연
357	김석준
358	김한권
359	송준환
360	김태형
361	김상태
362	윤준
363	염윤호
364	김태현
365	김동기
366	정래용
367	조시영
368	이태용
369	김민수
370	이명중
371	김한민
372	이우임
373	정명숙
374	김희선
375	엄연옥
376	최계숙

연번	이름
377	임동숙
378	원은향
379	김연숙
380	이순옥
381	최선녀
382	안정희
383	박정숙
384	김복준
385	김성옥
386	최복순
387	한경숙
388	정명자
389	김금분
390	남궁현
391	최인순
392	강미숙
393	정선자

공공임업은 도전
특별자치도를 향한

출범준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향하는 첫걸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홍도 및 시스템 정비
특별자치도 출범 대국민

새로운 시작
강원특별자치도의

부
록